

제16장 내지거주 조선인 노동자

1. 도항(渡航)상황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 내지에 도항하기 시작한 것은 1911년으로, 그 뒤 매년 소수의 노동자들이 건너왔는데, 1915년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일본 내지의 경제계가 급작스런 호황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자연히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도항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우연히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일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4만 명에 달했고, 또 조선쪽에서도 일본으로의 도항을 제한했기 때문에 한때 거주 조선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제국 수도의 질서회복과 1924년 도항제한 철폐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의 도항이 급증하자 마침내 1925년 일본 경제계의 사정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연한 도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방침을 지속시켜 확실한 직장이 없이 만연한 도항하려는 자는 가능한 한 해당 지역에서 억제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엄격한 도항제한과 해외 이민 장려 등으로 인해 1936년 전후로는 한때 도항 노동자가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변과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다시 도항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1940년 말 현재 약 50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굳이 도항하려는 원인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돌아간 자들의 이야기나 일본 거주자의 통신 등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이나 구직의 편리함을 과신하고 궁핍한 생활의 활로를 일본 내지에서 찾기 위해 막연히 도항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당국의 부단한 지도의 결과 최근에는 미리 확실한 직장을 정하고 도항하려는 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2. 출가(出稼)노동자모집 단속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 내지 사업계가 발흥함에 따라 조선인들 중에 일본으로 도항하는 자가 늘어났고, 이 기회를 틈타 합부로 조선인을 일본으로 유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밀항 모집자가 생겼기 때문에 1918년 조선 밖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모집에 관해 노동자 모집 단속규칙(본 규칙은 폐지되어 현재는 조선직업소개령의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다)을 제정하여 모집자로 하여금 고용계약서 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임금, 고용기간, 취직시간, 수용설비, 왕복 여비의 부담 방법, 질병 부상 치료 방법 등에 대하여 적부와 모집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조사한 뒤 폐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승인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출가 노동자의 보호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막연한 도항 출가자를 억제하여 일본 내지 노동계의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썼다. 그 뒤 일본 내지 사업계의 추락과 동시에 굳이 규칙상의 수속을 이행하면서까지 이를 모집하려는 자가 점차 감소하였고, 근래 이를 출원하는 자는 매년 1, 2건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나사변 발생 이래 최근에는 일본 내지의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을 비롯해 생산력 확충 계획에 따른 각종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일본 내지의 노동력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1939년 9월 이후 본 총독부와 일본 내지 관계자,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상당수를 일본에 이주시켜 일본 내지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로 하였으나, 아주 이후의 성적은 일반적으로 매우 양호하고 일본

내지의 산업 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취직상황

조선인 노동자는 대개 무학문맹으로 교양이 낮기 때문에 기술노동자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은 근육노동자이다. 그리고 근육노동자 중에서도 숙련노동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자유노동자들이다. 그들의 성질은 비교적 온순할 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에 잘 견디고 불결한 환경에도 익숙하며, 자진해서 노동쟁의 등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수요가 있다. 각 도시의 섬유공업, 화학공업, 금속, 기계공업, 도목, 건축업, 각종 광산 등에 다수 채용되어 있는데, 특히 사변 발생 아래 일본 내지의 각종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도항 노동자는 증가하였고, 또 종래부터 일본 내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중에 실업자도 직장을 얻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생활상황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지방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자유노동자는 보통 하루 평균 1원(圓)내외로, 숙련노동자는 자유노동자에 비해 약 10%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는 3원 내외를 받는 자도 있다. 이를 일본인 노동자와 비교하면 자유노동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숙련노동자는 대개 일본인보다 30% 낮다고 한다. 또 그들 중에는 독신자가 많아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공장 내의 기숙사에 합숙하든가 혹은 하숙하고 있으며, 최하급 노동자는 대부분 취사장에 잡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루 생활비는 수십 전으로 충분하고 생활 정도에서 보면 얼마간 여유도 생겨 고향으로 송금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종래 대개 저축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고 다소의 여유가 생기면 곧바로 일을 쉬고 주색에 빠지고 도박을 하는 등, 보통 1개월의 근로일수는 약 20일 내외로 고향으로의 송금은커녕 조선으로 돌아갈 여비도 없는 상황이다. 궁핍한 생활의 결과는 거지나 부랑자가 되어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빈집털이, 날치기 등의 부정한 짓을 저지르거나 땅 주인이나 집 주인과 분쟁을 일삼는 등 내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원인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사변 발생 아래 전반적인 영향이 조선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내지의 협화사업(協和事業) 보급 등과 맞물려 점차 순화되면서 경찰 관련 사고도 서서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7장 신문, 잡지, 출판물 및 영화,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1. 신문, 잡지, 출판물의 개황

종래 조선에서는 신문, 통신, 잡지와 그 밖의 보통 출판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엄중한 단속방침을 취했다. 특히 신문, 잡지의 발행은 허가 또는 인가 제도를 시행해 발행에 제한을 두어 조선인이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출판계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

두 매우 부진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선의 문화 향상, 민의의 창달에 있어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1919년 제도개정 이래 서서히 언론기관에 대한 태도를 완화한 결과 매년 새로 발행하는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변의 장기화에 따라 언론의 통일과 물자의 절약은 국책으로서 긴요한 사항이 됨으로써 일간신문은 1도(道) 1지(紙)로 통합하는 방침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1940년도에는 언문³⁾신문 3지, 일본어 신문 3지, 통신 1, 잡지 1, 계 8지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1940년 말에는 신문지규칙에 따라 내지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지, 통신 56종, 신문지법에 따라 조선인이 발행하는 25종으로 합계 81종이 되었다.

또 보통출판물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였고, 같은 해 지나문 출판물 9,326건, 언문 출판물 1,65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지나사변과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은 구매력 상승과 한편으로 조선 문화의 향상은 일반 조선인들의 관심을 국내외 정세로 돌리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당국의 지도에 따른 시국 인식의 철저 등으로 신문, 출판물에 대해 점차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 왔으나 구매자 숫자의 실정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신문, 잡지의 내용

(1) 내지인 발행의 신문, 잡지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주의(主義)와 주장이 매우 온건하고, 대부분 조선 통치 방침에 순응하면서 반도의 산업 개발, 문화의 향상에 힘쓰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지나사변이 발발하자 당국의 지도 방침에 순응하여 시종일관 여론의 통일과 환기에 노력하면서 시국에 대한 인식과 총후(銃後)의 후원, 생업보국, 국민총력운동 등에 지속적으로 중요지면을 할애하여 국위선양에 매진할 것을 논술하였다. 이후 사변의 장기화와 더불어 더욱 성전(聖戰)의 완수와 국민의 자숙자계(自肅自戒)를 촉구하며 내선일체 부동의 정신으로 전력을 경주할 것을 논하였다. 특히 미증유의 가뭄으로 인한 작년 가을부터 올해 단경기(端境期)에 이르는 동안 당국의 식량대책에 관해서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고 재해 극복을 강조하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 달성을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국이 긴박해지면서 언론의 통제 강화와 물가 급등, 배급 통제 등은 내지의 유력지의 조선 진출, 군소 신문의 경쟁 등에 기인하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경영은 물론 지면 활용에 있어서도 신기죽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신문사에서도 이런 정세에 부응하는 계획에 몰두하거나 단평란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신랄한 필치로 독자들에게 영합한다는 사실, 혹은 경제기사에 특이성을 발휘하는 등의 경향이 있어서 단속에 있어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시국의 추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각종 단속 사항의 증가 등 편집상, 경제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회사 자체의 약체화를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서 올 초부터 합리적 보도진용 강화를 위해 통합을 착수하고 실행 중이다.

그러나 업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이 품고 있는 자유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삼 단속을 했으나, 장래의 지도에 있어서 각별히 유

3) 언문(諺文)은 조선문을 지칭함.

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시국의 추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유해무익한 것이나 불요불급한 것은 일반통제와 병행해서 정리 통합하는 중이다.

(2)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중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종래부터 민족의식이 농후하고 자칫 총독정치를 비방·왜곡하는 등 반도의 민중으로 하여금 그 귀추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논조는 곧바로 여론에 반영되어 통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엄중한 단속을 가하는 동시에 잘못된 편견의 시정에 노력한 결과 업자들도 크게 개선하는 바가 있어서 적극적인 불온 태도는 서서히 고치게 되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으로는 불온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식자(識者)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 이른바 일장기 말소사건에 따른 탄압으로 그 태도도 현저히 개선되어 황실 기사 같은 경우에도 크든 작든 전부 계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민족적 편견을 일소할 필요는 더욱 통감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지나사변이 발발했는데, 당초에는 일본과 지나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완전히 시국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당국의 지도와 민심이 자연스레 고양됨에 따라 신문의 방관적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에 각 사 사설에서 협력 일치할 것을 논하고, 또 그 중대성을 인식하여 정당한 각오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설파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시국의 중압과 당국의 지도 하에 현저히 그 태도를 개선하고 매일신보와 더불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전사자들의 영령을 달래거나 총후 국민의 일치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언문신문은 사변 발발 당초에 비해 거의 180도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매일신보를 제외한 다른 양대 신문, 특히 동아일보의 논조를 자세히 검토하면 여전히 민족적 편견에 기초하거나 일본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혹은 통치의 근본방침에 전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조선통치에 있어서는 물론 조선반도 민중의 귀추를 그르칠 우려가 있었기에 8월 10일 마침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켰다. 두 신문의 폐간 이후 매일신보의 사명은 더욱 가중되었음을 고려해 당국의 방침에 따라 조선반도 민중의 항국 신민화, 사변의 완수, 대동아공영권 확립에 기여하는 정신과 태도로 편집에 임하고 있지만, 한층 더 단속과 지도를 요하는 것은 물론이다.

3. 출판물의 상황

출판규칙에 의거한 내지인과 외국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은 단행본 1,200종, 연속간행물 약 500종이 있고, 시국인식의 철저화에 따를 경우 자연도태와 용지 입수곤란, 출판인쇄비의 급등 등으로 인해 약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나문 출판물의 납본 총 건수는 9,326건으로 그 내용은 대개 온건·착실하고 또한 사변 발발 아래 조선반도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치방침에 순응하면서 과거 자유주의 좌익사상이 유행했던 무렵의 풍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출판법에 의거하여 조선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은 문화가 향상됨에 따라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여 1940년 말 현재 단행본 839건, 연속간행물 814건, 계 1,65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시국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출판물은 문예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사상, 종교 및 조선의 독특한 출판물인 문집과 족보 등이 있으며, 정치와 법률

에 관한 것은 비교적 적다.

이상의 출판물도 사변의 진전에 따라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점차 종래의 애매한 태도를 개선하고 당국의 뜻을 잘 체득해서 적절하고 타당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제국의 공정한 입장 을 인식시키려는 경향에 있다. 또한 당국의 국어⁴⁾ 장려 정책에 대응하여 그 일부로 국문⁵⁾ 기사를 삽입하거나 국문 단행본의 간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러한 것은 실로 시세를 각성한 당사자들의 마음가짐과 일반 대중들의 요구에 기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당국의 끊임없는 지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4. 이입·수입 신문, 잡지 및 보통출판물의 상황

1940년 말 현재 조선으로 이입되는 신문과 잡지는 신문 249,543부, 잡지 397,898부로 계 647,441부이다. 수입 신문 4,951부, 잡지 2,987부로 계 7,938부이다. 이는 작년 말에 비해 103,389부, 약 20% 가까이 급증한 셈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보통출판물의 전수 조사는 매우 어려워서 실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조선 내 주요 이입업자 다섯 곳만 보더라도 단행본 1,487,927부, 교과서 종류 1,778,069 부로 계 3,265,996부에 이르는 실정인데, 매년 상승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이입·수입 출판물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은 조선 내 출판물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지의 출판물에 의존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한편으로 조선 문화의 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서 참으로 반가운 현상인 동시에 조선 내 민중의 사상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심심한 주의와 주도면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5. 지도 및 단속상황

(1) 지도

신문과 출판물이 문화의 향상과 여론의 활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에 관한 지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기에, 조선에서도 병합 이래 부단히 적절한 지도를 하여 오늘날 조선반도의 문화 향상을 비롯해 산업과 교육, 그 밖의 전반에 걸쳐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 이에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바는 위정 당국의 시정(施政)의 결과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 조선반도의 언론기관이 당국의 지도로 적절히 협력 공현한 실적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언론기관의 협력을 종용하기 위해서는 늘 당국의 방침을 명시하고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단속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당국으로서는 언제나 이런 취지에 따라 총독 이하 정례회견의 경우에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사 간부 등을 불러 간절한 지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변 발생 아래 조선반도의 치안확보와 내선일체 아래에서 적절한 단결 여부는 성전 수행

4)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킨다.

5) 국문은 일본문을 가리킨다.

에 있어서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내외 모두 우려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변에 대한 제국의 방침과 시국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조선반도 언론기관의 협력을 구한 결과, 모두 당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혼연일체가 되어 당국의 방침에 협력하면서 전시하 미동도 하지 않는 태세를 정비해 각자에 미담이 쏟아지게 된 것도 그 효과라 할 수 있다.

(2) 단속

신문과 출판물의 단속은 신문, 출판 관련 법규, 총동원 관계, 군기보호법, 군용자원비밀보호법 등 군사관련 법규 또는 금지 사항 등에 준거하여 이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안의 내용 경중에 따라 차압, 삭제 혹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른바 지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도가 철저해짐에 따라 위반사건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국의 추이에 따라 국내외의 정세에 대응한 편집방침 등은 빠짐없이 각 업자들에게 지도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부주의한 것을 제외하면 고의로 당국의 방침에 역행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발행 당시의 정세에 부응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1940년도의 처분 건수는 다음과 같다.

① 신문, 통신, 잡지(조선 내에서 발행된 것)

종별	처분별		차압		삭제		주의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신문지 규칙에 따른 것	76	1	427	1	337	—		
신문지에 따른 것	13	—	57	—	24	—		

② 보통출판물

종별	처분별		차압		삭제		주의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출판규칙에 따른 것	29	3	54	—	144	—		
출판법에 따른 것	42	1	—	—	—	—		

한편, 출판법에 따른 것은 원고 검열을 실시하기 때문에 삭제와 주의는 없다.

③ 이입·수입 신문, 잡지, 출판물

종별	처분별		신문 / 잡지		보통출판물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이입	151	3	179	19		
수입	496	26	14	21		

6. 영화의 단속

영화의 검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당시에는 단지 흥행 단속의 한 수단으로 각 도별로 실시

했을 뿐이었다. 이를 통일하기 위해 1924년 9월부터 경기도, 경상남도, 평안북도에서 검열을 실시하고 모든 도에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으나, 실제적인 문제로서는 단속이나 그 밖에 있어서 여전히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1926년 7월 총독부령 제59호로 활동사진 ‘필름’검열규칙을 발포하여 ‘필름’검열은 모두 총독부에서 일원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8월부터 검열업무를 시작했다. 그 뒤 발성영화가 제작되면서 종래의 검열설비로는 검열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1933년 검열실을 신축해 발성장치를 완비하여 검열의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그 이후 검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는데, 특히 외국영화는 조선반도 대중들의 미묘한 민족적 편견으로 인해 압도적 인기를 누리면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게다가 이 영화들이 조선 대중의 사상 및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1934년 8월 총독부령으로 활동사진영화단속규칙을 발포하여 흥행장에서 외국영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산영화를 일정 비율로 상영하도록 상영제한을 두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실정과 어긋나는 외국영화는 점차 감소한 대신 국산영화가 다수 사용되었다. 근래 영화는 장족의 발전을 거두어 단지 오락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화, 선전, 보도 등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1940년 1월 내지의 영화법에 준거한 제령(制令)으로 조선영화령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활동사진 ‘필름’검열규칙 및 활동사진영화단속규칙은 폐지하는 동시에 종래의 경찰적 단속주의에서 방향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조성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영화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영화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문화의 진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1940년도의 검열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7·7금령(禁令)의 취지에 따라 마치 부화경조(浮華輕兆)의 풍조를 자극하는 영화의 단속에 관해서는 한층 더 엄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설명한 것이다. 원래 영화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시대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정 아래 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현재와 같은 사회 상황 하에서는 설령 이전에 검열에 합격한 영화라 하더라도 영화령의 소기하는 바의 영화의 질적 향상에 장애가 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10월 이후의 외국영화 재검열에서는 국민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화 외에는, 위의 취지에 의거해 엄선할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 또 일본영화의 재검열에서는 당분간 적극적인 의의가 없는 것일지라도 현 상황에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기의 유효기간을 두어 허가하기로 하였다.

1940년도의 검열 단속건수는 3,989건으로 권수는 12,336권, 컷 수는 2,798,889컷, 검열수수료는 21,484 원이다. 이를 1939년도의 단속 총수와 비교하면 건수는 349건, 권수는 110권, 컷 수는 64,404컷, 검열수수료는 484원 94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1940년도의 검열 거부(조선 내의 상영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6건으로 모두 시국을 고려해 상영 불가로 판정한 것이다. 그 이외의 공안과 풍속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도 검열건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위의 검열 영화에서 공안상 지장이 있는 것 52군데 582컷, 풍속상 지장이 있는 것 86군데 1,367컷을 삭제 처분을 내렸고, 또 설명 대본 중 292군데에 걸쳐 개정이나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이 불량 영화를 배제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화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전시하의 건전한 국민오락으로서의 영화의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축음기 ‘레코드’는 종래 경찰 시찰의 권외에 있어서 단속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으나, ‘레코드’의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불온한 주의와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치안 풍속을 해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종래에는 단속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편의적인 처분으로 연주 배포를 저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1933년 5월 총독부령 제47호로 축음기 ‘레코드’ 단속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고 적절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40년도에 위의 규칙을 적용해 제조, 판매, 수여 또는 연주 금지 처분을 받은 ‘레코드’는 17종에 달했다. 이러한 불온하고 불량한 ‘레코드’는 장래에도 한층 더 단속을 강화하여 추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업자들을 적절히 지도함으로써 ‘렉드’를 통해 문화의 계몽과 사상의 선도에 노력할 방침이다.

제18장 제(諸) 영업과 그 밖의 단속

종래 경찰행정에 대한 법령 중에는 미비한 점과 통일되지 않은 점이 많아서 단속에 있어 불편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 아래 시운(時運)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보완을 하여 확실한 공안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중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주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포화약 단속

총포 화약류의 단속은 1912년 제령 제3호 총포 화약류 단속령의 발포와 동시에 같은 해 부령(府令) 제25호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엄중한 단속을 시행해왔다. 그 뒤 1919년 제도개정에 따라 자연이 개정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또 시세의 추이와 단속 또는 단속상의 편의를 고려해 종래의 복잡한 법규를 통일하고 정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 연구한 결과 1924년 8월 부령 제46호로 총포화약류단속령시행규칙을 발포하고 10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아울러 1932년 8월, 1934년 9월, 1938년 8월 3회에 걸쳐 일부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총포 화약류의 단속은 보안상 가장 엄밀함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의 수수, 운반, 사용 및 저장 등에 대해서는 철도운수규정 및 화약류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개항단속규칙 개정과 맞물려 더욱 주도면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화약류의 제조는 일반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근래 조선 내 지하자원의 개발에 철도, 항만, 발전, 도로공사 등 중요한 국책 사업의 발흥은 필연적으로 화약류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폭약은 제조를 허가하기로 하고 1932년 7월 부령 제65호 폭약제조단속규칙을 제정하였다. 1934년 9월에는 부령 제91호로 일부 개정을 하였고, 최근에는 토목과 광업계의 크게 발전하여 폭약 이하 화약류의 제조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1935년 10월에는 부령 제108호로 보통화약류 제조 단속규칙을 제정하여 군용 이외의 일반 보통화약류의 금지를 해제하였다.

화약류 관련 범죄 대부분은 조선 남쪽지방의 불법어업에 사용하는 폭약류의 밀매 등인데, 때로 시국

사범이나 과격하고 기괴한 사상을 품은 이른바 불령한 무리들이 교묘히 권총, 폭탄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강도와 그 밖의 불정한 행위에 사용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총기탄약을 절취하려는 자, 조선과 내지 방면에서 조선 경유로 만주와 북지(北支)방면으로 병기탄약의 밀수입을 기도하려는 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수단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엄중히 하여 한편으로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을 이용하고 그 밖의 관세관서 및 내지의 관계 각부현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제제와 박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근래 검거율이 행상되었고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근래 발동기선의 발달에 따라 성어기(盛漁期)의 불법 업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끊이질 않기 때문에 엄밀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8표, □제41표 참조)

2. 연화(煙火), 인화물질과 그 밖의 위험물 단속

불꽃(煙火)의 제조, 판매, 저장, 발사에 대해서는 1921년 12월 부령 제49호 연화단속규칙으로 단속하였으나, 실시 이후의 정세와 장래의 진전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 1927년 1월 부령 제4호로 전문에 걸쳐 개정을 하고, 아울러 1934년 9월 부령 제89호로 일부 개정을 하여 단속의 완벽을 기하였다.

인화물질 저장소 단속규칙은 1911년 6월 부령 제66호를 발포하여 석유, 주청(酒清), 휘발유, 성냥의 저장을 단속하였다. 그 뒤 1919년 부령 제12호로 개정하였고 1931년 5월 부령 제59호에 의거해 인화물질단속규칙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전문을 개정하였다. 본 규칙에서는 석유와 휘발유는 인화점에 따라 구별하고, 아울러 ‘알코올’ 외의 ‘벤졸’도 인화물질에 포함시켜 본 규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저장소에 대해서는 종래 지상창고에 관한 것뿐이었으나 지상과 지하유조(油槽)의 신규정을 둔 것 외에 교체하는 장소의 구조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또 널리 인화성 및 발화성 물품도 필요에 따라 본 규칙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운(世運)에 부응하고 위험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수렵 단속

과거 조선에서는 수렵에 관한 법규가 없어서 보호 필요 여부에 상관없이 포획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1911년 4월 수렵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후 1915년과 1920년에 일부를 개정하였다. 본 규정의 요지는 야생동물의 포획, 야생 조류의 등지, 알이나 새끼 포획, 수렵의 장소, 방법 및 시기, 학술 연구 또는 유해동물 퇴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보호 새 및 수렵기간 외의 특별 포획, 수렵 면허장, 면허수수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5년 9월에 개정을 하여 남획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고, 1927년 8월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동시에 경무총감부령 제10호를 폐지하고 예규통첩을 정리 통일하여 훈령 제13호 수렵규칙 개정 수속 중에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4. 전기사업 단속

1899년 경성에 한미전기회사가 창립된 것이 조선의 전기사업의 효시로, 당시에는 아직 이에 대한 단속법규가 없었다. 그러나 일러전쟁 이후 조선으로 건너오는 내지인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각지에 본

사업이 발흥하여 마침내 1911년 3월 단속법규의 발표 시행하게 되었고, 그 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32년 2월 조선전기사업령을 제정하여 전기사업의 통제와 단속의 완벽을 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성적은 대체로 양호하다.

1938년 3월 말의 전기사업자 총수는 312이다. 전기 공급 사업, 전기 공급 및 전기 철도 겸영 사업 22, 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자 269, 관청용 21이다. 총 발전력은 1,639,518킬로와트 중에서 완성 발전력 768,980킬로와트(만주전업으로부터 받은 전력 5,040킬로와트는 포함되지 않음), 미완성 발전력 870,538 킬로와트이고, 자가용 및 관청용은 위의 완성 발전력 100,774킬로와트, 미완성 발전력 21,086킬로와트인데, 전기 공급 사업, 전기 공급 및 철도 겸영 사업의 발전력은 완성된 것 668,206킬로와트, 미완성 849,452킬로와트로 그 발전력을 원동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별	수력(水力)	기력(汽力)	내연력(內燃力)	수전(受電)	합계
완성 발전력	522,350W	141,100W	4,756W	2,040W	673,246W
미완성 발전력	799,300W	50,000W	152W	-	849,451W

수요 상태는 전등 수요 가구 504,405가구, 등은 1,877,976등, 전력 수요 가구 32,424가구 510,129킬로와트에 이르고 점차 발달하고 있다.

5. 원동기 단속

원동기는 종래 각 도에서 구 이사청령(理事廳令)으로 단속하고 있었는데, 이사청령은 조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1915년 8월 총독부령으로 기관기기발동기(汽罐汽機發動機) 단속규칙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진전은 각종 공사의 발흥을 일으켰고 또 새로운 고급기계의 사용이 증가하여 종래의 규정으로는 충분한 단속을 시행할 수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1925년 9월 이를 개정하여 원동기 단속규정으로서 발표 시행하였다. 그 뒤 원동기의 지식이 보급함에 따라 비교적 위해가 적은 소형 기계는 절차를 간소히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위험 예방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단속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928년 7월 일부 개정을 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실시하였는데, 그 성적은 양호하다. 참고로 1940년 말 현재 원동기 총수는 보일러(汽罐) 2,093기, 증기보일러(蒸罐) 249기, 증기기관 280 기, 가스 및 석유 기관 2,704기 그 총 마력수는 92,575 마력으로 소형 보일러 664기, 소기(小基)가스 및 석유기관 37,275기로 총 마력은 186,170마력에 이르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6. 교통 단속

조선의 교통 상태는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통기관도 점차 발달하고 있다. 산간벽지 또는 험한 산악 지역이 아닌 이상 도로가 개통되었고 경찰서 소재지로 자동차로 다닐 수 없는 곳은 불과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는 국유와 국유 북선(北鮮)위탁철도 및 사유가 있고, 국유는 1900년 7월 경성-인천에 경인선이 부설된 것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경남선, 도문선, 동해

선, 만포선 및 혜산선과 그 지선들이 개통되었다. 1940년 말에는 국유 4,398.6킬로미터, 사설 철도 1,606.4킬로미터를 가산하면 총 연장 6,005킬로미터로, 비록 발달은 늦지만 모두 과거 30년간에 부설된 것이다.

철도의 보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오늘날에는 고속의 교통기관으로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지에서는 자동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1939년 말 여객 자동차 운전사업의 면허노선 길이는 26,198.2킬로미터로 기존의 1, 2, 3등 도로 총 연장의 90% 이상에 달하고, 각지에서 우편물 우송 청부나 철도 선박과의 연락 수송에 활용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지방교통기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영업면허 노선의 길이도 23,907.4킬로미터로 상당히 발달하고 있다. 특히 경성, 대구, 부산, 평양을 비롯한 그 밖의 시가지에서는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차는 경성, 부산, 평양 세 도시 외에 3군데의 단거리 시설이 있을 뿐, 길이 74.2킬로미터에 지나지 않고 발달은 매우 더딘 상태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교통은 철도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매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단속에 있어서는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의 보전에 있어서는 각 관계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한편 일반 민중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단속에서는 종래 관계법규로서는 1921년 7월에 발포된 부령 자동차단속규칙이 있었으나, 자동차 교통사업의 원만한 발달 통제를 위해 1932년 8월 교통운수사업의 감독은 철도국에 분리 이관하였다. 1933년 9월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이 공표되었는데, 자동차단속규칙도 시대의 추세에 부응해 1934년 12월 근본적으로 개정 발포하고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 관련법과 함께 1935년 4월부터 실시하여 예의 단속의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경성과 그 밖의 교통이 번잡한 시가지에서는 교통 단속 전임 순사를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교통정리에 임하게 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조선은 종래 우측통행이었기 때문에 전차와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에 대해서 큰 위험이 있어서 단속에 있어 각종 불편을 느끼고 있었지만, 1921년 10월 도로단속규칙을 개정하여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좌측통행을 채용하여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항공기는 근래 크게 발달하여 도쿄, 다롄(大連), 신징(新京) 간의 정기 여객기를 운행함으로써 서서히 실용화되고 있지만, 이미 단속법규도 제정되어, 이에 관해서는 체신당국과 연락을 취하며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2표, 제45표 참조)

7. 숙박시설 단속

종래 조선에서는 객주, 여객(□□□□□□□□□□□□), 주막(□□□□□□□□□□□□□□□□)이라는 곳이 있어서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단속법규가 없고 완전히 자유영업으로 방임되고 있었다. 따라서 객실과 주방 등은 일반적으로 불결하고 별다른 영업설비를 찾아볼 수 없었고, 위생과 공안 풍속에 있어서 여러 폐해가 있었다. 또 내지인은 내지와 마찬가지로 여인숙, 하숙 등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영사관령(領事館令)이나 이사청령(理事廳令)으로 단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비 등은 불완전했고 시세의 추이에 따라 영업용 가옥이나 영업설비에 적당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병합 이후 지방 경무부령(警務部令)을 발포하여 상당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 또 규정 사항도 각 지역에 따라 달라서 단속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조선 전체의 동일 법령 하에 내선인을 통일하여 단속할 필요를 인정하였기에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으로 숙박업(宿屋營業) 단속규칙을 발표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한 결과 일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시가지의 조선인 숙박업 상태는 종래의 면목을 일신하였다. 그러나 시가지 밖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영업설비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토지와 그 밖의 상태에 적응하도록 점차 개선시킬 방침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제44표 참조)

8. 요리점, 음식점, 예기 오키야(藝妓置屋), 기방(貸座敷), 예기(藝妓) · 창기(娼妓) · 작부(酌婦)의 단속

종래 조선에서는 요리점, 음식점에 대한 업명(業名)이 없었고, 모두 숙박집과 마찬가지로 주막이라 불렸다. 또 작부와 예기(藝妓)를 둔 요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혁이 없고, 기방, 창가, 창부이라 부르고 있었는데, 병합 전 경성에서만 시행된 창기단속령(□□□)을 발표하여 창부의 명칭을 창기(娼妓)라 하였다. 또 거주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기방을 읊종(乙種)요리점, 또는 제2종 요리점, 창기를 읊종 예기 또는 제2종 예기라 불렀다. 예기를 둔 예기 오키야에 대해서는 형식상의 명칭은 없고, 영사관령 또는 이사청령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었다. 병합 후에는 지방의 발전에 따라 단속상 큰 불편을 느끼게 되면서 전도(全道)의 내선인을 통일하여 단속할 필요를 인정하고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으로 요리점 · 음식점 영업단속규칙(料理屋飲食店營業取締規則), 예기 · 작부 · 예기 오키야 단속규칙(藝妓酌婦藝妓置屋取締規則) 및 기방 창기 단속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발표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본 규칙의 주된 규정 사항은 풍속상 특별히 단속을 필요로 하는 기방 및 창기 영업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고, 요리점은 예기의 초빙과 작부의 기거를 인정하고 음식점은 음식을 하는 것 외에 유흥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기 오키야는 예기를 기거하도록 하는 것 외에 손님을 받는 일을 금지하였다. 기타 예기 · 작부 · 창기의 가업(稼業)에 관한 사항, 영업용 건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행 후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근래 '카페', '바', '레스토랑' 등 서양식 요리점과 음식점은 시가지 곳곳에 발전하고 있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들 주고 설비와 기타에 관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서 1934년 9월 카페영업단속내규 표준을 만들어 각 도에서 빠짐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조선인 요리점 및 음식점의 구조 설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영업의 상태, 토지의 상황에 따라 규칙의 규정 사항을 참작하여 업태 및 지방의 실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사변 발생 이래 이들 풍속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제를 할 필요를 인정하고 영업시간의 제한, 신규영업 및 신규 취업의 억제 및 기타 향락 부분의 자제에 노력하고 있다.

9. 사창 단속

매춘부에 대해서는 종래 아무런 단속규정이 없어서 그들은 곳곳에 출몰하여 풍속 및 위생상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12년 경찰법 처벌규칙 중에 사창(私娼)처벌 규정을 두고, 1916년 요리점, 음식점, 예

기, 작부, 기방, 창기 등의 단속규칙을 발포하여 이들 사창의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인습과 생활고와 그 밖의 각종 사회적인 결함으로 인해 곧바로 이를 사라지게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묘하게 단속 관헌의 시선을 피해 여전히 매춘 행위를 밀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근래 ‘카페’, ‘비’ 등의 발전 및 폐창(廢娼)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사창의 단속은 더욱 어려워져서 재래의 영업 감사, 호구 조사, 순찰 등을 통한 임시검문 단속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창의 폐단에 빠지기 쉬운 접객업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고용 여성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고용 당시의 실정을 조사하여 고용 후 매음 행위에 의해 사전에 지불하도록 하고, 또 거액의 사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으로 단속하고 있다.

10. 전당포 단속

종래 전당포의 단속은 조선인에게는 1898년 11월 법률 제1호 전당포규칙 및 농상공부령 제31호 전당포세칙, 내지인은 영사관령 또는 이사청령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었으나, 그 규정 사항이 나뉘어져 있어서 단속에 있어 염증함을 기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방에 따라 단속법규가 없는 곳도 있어서 큰 지장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병합 이후 매년 내지인 이주자가 증가하는 개항지는 물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선(全鮮)공통법 제정의 필요성을 생겼다. 또 내선인 단속의 형평상 1912년 3월 제령으로 전당포 단속법을 발포하여 내선인을 동일한 법규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경제상태나 업무 습관은 내지와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내지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의 제한, 유질(流質) 기한, 질물(質物)의 처분, 질물의 감실(減失) 또는 훼손의 경우 손해 부담 등에 대해 이 법의 시행세칙을 발포하여 단속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각 사항은 도지사에 출원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옛 관습으로 폐해가 없는 것은 되도록 이를 인가할 방침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 이후 성적은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경성을 비롯해 몇몇 주요 도시에는 부(府)에서 운영하는 공익 전당포를 설치했는데, 이를 단속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서 내지와 같이 단행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고 현재는 단속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제44표 참조)

11. 고물상 단속

고물상의 단속에 관해서는 구한국 시대에는 아무런 법규도 없어서 고물의 매매와 양여(讓與)는 자유롭게 방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인 고물상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할 길이 없었다. 또 내지인에 대해서는 영사관령 또는 이사청령으로 단속하고 있었지만, 그 규정이 나뉘어져 있고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내지인의 증가에 따라 종래와 같은 미비한 법규로는 도저히 단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1912년 3월 단속령을 발포하여 같은 해 4월부터 시행하고 단속하고 있다. (제44표 참조)

12. 기부금 모집 단속

기부금의 모집 단속은 1911년 부령 제138호 기부금 모집 단속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그 뒤

문화의 진전과 시대의 추이에 따라 각종 명목으로 기부금 모집을 하려는 자들이 증가하였다. 그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도 있고, 단속에 있어서 미비와 결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1933년 8월 부령 제76호로 단속법규의 전문 개정을 단행하고, 나아가 1935년 10월 통첩을 내려 도지사의 허가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본부(本府)에 알리도록 하는 등, 단속에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나사변 발발에 따른 총후 경제의 안정과 군사 후원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국과 무관한 기부금품의 모집 단속을 엄중하게 실시하여 폐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13. 대서업자⁶⁾ 단속

대서(代書) 업무는 그 성질상 자칫 민사소송 등의 논란에 휩싸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권유 감정, 소개 혹은 중재 등을 하거나 토지 가옥의 매매와 양도, 채권추심, 인사 주선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는 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있고 각종 폐해를 낳기 쉽다. 특히 조선인 중에는 법규에 어두운 동시에 문필에 능한 자가 적은 관계상 종종 악덕 대서업자에게 속아 손해를 보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919년과 1920년 각 도에 이를 단속할 방안을 내훈 또는 통첩하였고, 1925년 대서업자 단속규칙을 발포하여 단속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진전과 건축, 광업 토지 측량 등 특이한 업무로 인해 그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에 1938년 8월 26일 부령 제178호로 규칙의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조선대서사(代書士) 단속규칙으로 개칭하고 업무명칭을 대서사로 변경하였다. 그 밖에도 허가 관청의 변경과 업무 범위의 확정, 업무 구역의 폐지, 조합 설치 및 특별규정 제정에 관한 위탁 사항 등을 새로이 보완하고, 아울러 1931년 3월 부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 규칙을 제정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44표 참조)

제19장 시가지 계획

근래 조선에서는 각종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 신공업도시의 건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이런 대세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신도시 건설과 기성 도시의 개조를 목적으로 1934년 6월 제령 제18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이 발포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그 시행규칙은 내지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제2장은 시가지건축물법에 해당하고 시가지계획의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및 건축물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 상업, 공업이라는 세 가지 용도 지역 외에 1940년 말 제령 및 부령의 개정에 따라 녹지 및 혼합이라는 두 용도 지역이 추가되었다. 이들 각종 용도 지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통제, 풍치, 미관 지구의 지정에 따른 자연 자연의 경관과 도시미의 유지 증진, 방화지구제에 따른 도시방화 블록 구성, 건축물의 높이와 공지의 제한, 건축선 제도에 따른 거리 통제 등에 관한 것으로, 조선의 종

6) 목차에는 ‘대금업자’로 되어 있음.

래의 건축 단속에는 볼 수 없었던 건축물의 집단통제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현재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성과 함북의 나진(모두 주거, 상업, 공업), 청진(공업) 세 도시에 불과하지만, 이는 모두 이번 법령 개정 전에 지정된 것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되는 용도 지역제에 관한 부령의 개정에 따라 지정이 변경될 예정이다.(1940년 말 제령 개정에 따라 부령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용도 지역에 관한 부령은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또한 조만간 부산과 평양도 지정될 예정이고,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모든 도시 시설의 기본이 되는 지역 지정의 준비로서 제반 도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의 창설과 개조 같은 대사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축통제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길이라 할 만한 길이 없는 조선의 구시가지와 계획령 시행 후의 정돈된 거리의 신시가지를 비교하더라도 이미 건축통제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의 조선식 주택의 구조나 보건적인 측면의 개량지도, 내지와 비교해서 현저히 열등하다는 시행기술의 향상, 건축 선 제도의 활용에 따른 밀집시가지의 정리 등 계획령에 부여된 사명은 크다.

1. 적용 도시

북부조선 지역의 공업지대는 조선의 공업발달에 있어서 선구적인 것으로, 따라서 도시계획도 먼저 여기서 시작되었다. 현재 적용지는 경성, 인천, 개성, 청주, 대전, 부여, 전주, 군산, 목포, 광주, 대구, 부산, 해주, 평양, 진남포, 신의주, 춘천, 함흥, 원산, 흥남, 나진, 성진, 나남 등지 외에 장래의 대도시 창설을 목표로 적용된 경인(부평), 양시(楊市), 다사도(多獅島) 등 소위 지방계획구역을 합쳐 18부 6읍 1면, 세 지방 합계 28구역이다. 그 밖에 시가지계획령 제2장의 규정 일부를 적용받고 있는 길주읍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적용구역의 총계는 29구역이다. 아울러 조만간 적용 고시되는 제천, 안동, 여수, 순천, 진주, 마산, 홍원, 단천, 보산, 삼척, 목호, 북평 등이 있고 또 준용 예정인 곳으로 고원 등이 있다. 적용지와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1 시가지계획령 적용지

도명	적용 도시명	적용 연 월 일
경기도	경성	1936.4.1
	인천	1937.5.1
	개성	1939.4.1
	경인(부평)	1940.1.19
충청북도	청주	1939.10.31
충청남도	대전	1938.5.12
	부여	1939.10.31
전라북도	전주	1938.6.1
	군산	1938.6.1
전라남도	목포	1937.5.1
	광주	1939.10.31

경상북도	대구	1937.5.1
경상남도	부산	1937.5.1
황해도	해주	1939.10.31
평안남도	평양 진남포	1937.5.1 1939.6.17
평안북도	신의주 양시 다사도	1937.5.1 1939.11.6 1939.11.7
강원도	춘천 강릉	1938.6.1 1940.12.10(시행 1941.3.1)
함경남도	함흥 원산 홍남	1937.5.1 1938.5.7 1939.10.31
함경북도	나진 청진 성진 나남 길주	1935.9.1 1936.4.1 1936.4.20 1938.2.26 1940.10.21(준용지)

2. 1940년 중 준공 건축물 개황

이러한 계통적인 건축통계는 1937년 하반기 이래 조선에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집계 결과에 대해 종래의 통계와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할 수는 없으나, 매년 이런 조사를 축적함으로써 조선의 건축 공사 실정을 밝히고 일반에게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부터 경성을 비롯한 26개 도시(……미판독……)의 1940년도 준공 건축물을 개관하도록 하자.

1940년도 전선(全鮮) 시가지계획 구역의 준공 건축물은 동수 21,168동, 면적 1,731,007평방미터, 공사비 81,023,292원이다. 이를 1939년도의 동수 13,206동, 면적 1,243,627평방미터, 공사비 47,147,051원과 비교하면 동수 60%, 면적 39%, 공사비 7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1940년 말의 시가지계획 구역은 27곳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7곳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가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건축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1939년 이전부터의 계획 구역인 경성 외의 20개 도시만을 비교한다면 동수 51%, 면적 28%, 공사비 61% 증가를 보이고 전반적인 증가와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수의 증가 비율에 비해 면적의 증가가 매우 낮은 이유는 주택 부족에 따른 대중을 위한 중소주택의 건축 증가 및 자재 등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 도시별로 본 1940년도 준공 건축물

경성은 여전히 대도시로서 동수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평양이 그 뒤를 잇고, 다음으로 청진, 대구, 부산, 진남포, 나남, 인천 순인데, 면적, 공사비에서 본다면 진남포가 4번째를 차지하고 인천이 그

뒤를 잊고 이어서 부산과 나남으로 최근 진남포의 약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2 시가지계획령 관련 준공 건축물표

도시명	동수(동)	면적(평방미터)	공사비(엔)
1 경성	6,878	402,111	23,162,954
2 평양	2,676	218,475	10,281,330
3 청진	1,586	190,361	8,152,162
4 대구	1,068	60,306	1,412,717
5 부산	1,052	81,871	2,841,225
6 진남포	876	123,595	7,498,325
7 나남	783	66,038	3,276,596
8 인천	747	94,134	3,941,640
9 함흥	692	60,590	2,335,407
10 흥남	597	74,820	2,780,734
11 신의주	503	44,976	2,701,190
12 목포	460	29,457	490,256
13 성진	441	40,079	1,554,678
14 전주	407	19,110	577,110
15 개성	377	13,872	686,266
16 대전	318	36,451	1,217,001
17 나진	287	47,380	3,526,302
18 원산	227	23,298	1,170,565
19 춘천	227	13,230	680,090
20 해주	200	27,279	955,095
21 다사도	193	11,676	482,640
22 □산	186	17,706	497,478
23 원주	174	17,174	209,571
24 경인	82	6,154	208,274
25 양시	64	4,048	135,501
26 부여	38	3,086	112,063
27 청주	29	3,730	136,122
계	21,168	1,731,007	81,023,292

2) 용도별로 본 1940년의 준공 건축물

건축물의 총수에 대해 주거 건축물은 14,085동으로 67%, 상업 건축물 4,259동으로 20%, 공업 건축물 1,915동으로 9%, 그 밖의 건축물 909동으로 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거 건축물은 1938년 약 60%, 1939년 약 62%에 비해 증가하였고,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3 용도별로 본 1940년도 준공 건축물표

용도별	동수		면적		공사비	
	실수	%	실수	%	실수	%
주거 건축물	14,083	66.3	756,351	□5.7	36,341,316	44.9
상업 건축물	4,259	20.1	382,971	22.1	17,425,521	21.5
공업 건축물	1,915	9.1	419,707	24.2	18,575,962	22.9
기타	909	4.5	171,978	10.0	8,680,493	10.7
계	21,168	100.0	1,751,007	100.0	81,025,292	100.0

3) 구조별로 본 1940년도 준공 건축물

벽돌 건축물은 1939년 362동, 면적 102,753평방미터에 비해 1940년에는 634동 167,633평방미터로 동수에 있어서 약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에는 지진이 거의 없다는 것과 방화와 방한 효과 외에 재료를 구하기 쉽고 시공이 쉬우며, 따라서 공사비도 목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철근 재료 사용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이다. 벽돌 건축물은 도시 방공의 필요성 및 자재 관련 등에서 보더라도 장래 조선에서는 더욱 장려되어야 할 구조이다. 신축 1동당 면적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최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은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4 구조별로 본 건축물의 규모

구조종별	신축		신축 1동당 바닥 면적
	동수	면적	
철골철근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33	38,785	1,179
철골	27	17,567	651
□□□□□□□□□□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이룬 것	20	13,715	686
벽돌 · 석조 콘크리트	634	167,633	264
목조	14,616	979,403	67
목골조	33	4,280	130
계	15,363	1,221,383	79

4) 지나사변 하의 건축물의 추세

지나사변 1년 후인 1938년 하반기의 시가지 건축물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상업 건축물만 2% 정도 감소하였을 뿐, 공업 건축물은 68%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변 발발 아래 자금과 자재의 절약 강화에 따라 신건축물이 상당수 감소하리라는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지만, 1938년까지는 자재와 그 밖의 관련에 있어서도 다소 여유는 있었다. 하지만 1939년 이후에는 매년 사태가 긴박해짐에 따라 객관적으로

건축은 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로 시가지 건축물은 193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계에 있어서 동수 50%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주거 건축물의 동수 약 55%, 공업 건축물 동수 약 54% 증가하였다. 아울러 1940년에는 1939년에 비해 총계에 있어서 동수 약 51% 급증하였고, 특히 주거 건축물은 동수 약 62%로 급증하였다.

이런 사실은 사변 아래 대륙진출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중요성이 매년 커지고 있고, 생산력 확충계획의 수행에 기초한 각종 광공업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가를 응변해주는 것으로, 시국하 건축지도 단속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표5 지나사변 하의 1939년과 1940년도 준공 건축물 비교표

용도별 도시별	연차	주거 건축물		공업 건축물		상업 건축물		기타		계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동수	면적
경성	39년	3,149	171,207	2□7	68,911	804	66,874	172	41,879	4,382	348,871
	40년	3,283	245,388	287	50,595	1,046	68,381	156	37,747	6,878	401,111
인천	39년	364	19,445	131	20,621	104	13,152	21	1,307	620	54,52□
	40년	411	26,550	169	52,506	144	11,736	23	3,562	747	94,134
개성	39년	121	4,686	5	82	28	1,094	6	160	188	6,012
	40년	287	11,409	18	905	64	1,279	8	279	377	13,872
대전	39년	72	3,039	19	3,194	49	5,065	46	6,232	186	19,570
	40년	123	6,816	54	9,143	67	4,232	74	16,260	318	36,451
전주	39년	212	10,399	22	11,810	42	3,840	40	4,859	316	30,908
	40년	317	11,776	13	1,682	54	3,476	23	2,176	407	19,110
군산	39년	25	1,816	38	5,232	68	3,989	10	419	151	13,466
	40년	2□	1,542	77	9,723	61	4,865	25	1,766	186	17,706
목포	39년	90	4,791	31	2,836	178	9,□□6	17	1,678	316	18,862
	40년	2□□	8,959	45	6,469	159	11,066	21	296□	460	29,457
원주	39년	—	—	—	—	□	858	—	—	3	8□8
	40년	□7	2,888	24	2,487	75	9,180	18	2,619	1□4	17,174
대구	39년	□88	13,242	98	9,807	2□□	20,002	99	9,264	8□8	52,□16
	40년	□□□	15,715	159	14,646	273	19,743	102	10,202	1,068	60,306
울산	39년	428	20,□□0	201	30,090	125	12,910	117	10,98□	871	74,5□□
	40년	63□	31,380	234	34,429	93	9,187	70	6,875	1,052	81,871
평양	39년	1,673	97,504	81	23,158	199	3,744	54	19,□63	2,007	177,971
	40년	2,02□	96,193	146	35,783	383	46,854	124	39,353	2,676	218,475
진남포	39년	113	10,228	9	2,291	8	3,295	5	39,553	135	17,071
	40년	656	38,978	141	73,906	59	8,615	20	2,096	876	123,595
신의주	39년	106	5,799	72	15,531	81	8,379	16	2,305	275	32,014
	40년	249	11,549	87	21,907	140	8,037	27	4,483	503	44,976
춘천	39년	112	6,611	12	1,281	10	1,330	—	—	135	9,222
	40년	210	10,965	6	948	10	994	1	323	227	13,230
원산	39년	60	3,004	13	815	20	1,918	24	4,108	117	11,84□
	40년	149	9,600	9	2,654	57	7,842	12	3,202	227	23,298
합흥	39년	351	21,805	39	2,960	151	15,975	48	8,680	589	49,420
	40년	443	27,256	33	3,698	163	22,071	53	7,565	692	60,590
청진	39년	410	45,024	272	141,941	569	56,565	55	12,159	1,306	2□5,689
	40년	509	37,237	193	59,977	864	93,579	20	8,568	1,586	190,361
나진	39년	29	3,572	25	3,205	35	10,176	4	1,598	93	18,549
	40년	183	24,020	11	2,323	72	13,378	21	7,659	287	47,380

성진	39년 40년	195 323	12,169 20,390	19 21	6,586 5,883	74 76	6,631 9,347	5 21	829 4,459	293 441	28,215 40,079
홍남	39년 40년	290 510	14,300 □□,018	19 78	2,796 15,799	70 160	4,791 13,749	6 35	835 □,472	385 783	22,722 66,038
계	39년 40년	8,228 13,285	473,211 671,211	1,362 1,805	136,155 396,563	2,871 4,020	286,124 366,611	745 855	128,137 165,829	13,206 19,965	1,243,627 1,600,214
증감 비율		61.5%	41.8%	32.3%	11.4%	40.0%	28.1%	14.9%	29.0%	51.2%	28.7%

3. 방공건축규칙의 공표

1940년 1월 26일 부령 제11호로 방공건축규칙이 공표되었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가지계획 구역 중에서 일단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신의주, 함흥, 홍남, 원산, 청진, 나진 10개 시가지에 적용하였다. 이 규칙은 국민방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 대부분이 목조 가옥인 조선 각지의 시가지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도의 방공대책으로서 목조건축의 주위를 어느 정도 방화 구조로 만들어 시가지 건축물을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고, 또 폭탄과 독가스에 대한 인명방호, 즉 공습대피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 외에 적기의 폭격 목표 또는 유도 목표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위장시키거나, 또는 중요시설에는 방호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가지의 건축물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통제되는 관계상 이 규칙도 시가지계획령 제30조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도시방공에 있어서는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건축통제와 방공건축규칙에 의한 방공 대책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맞물려야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시행지역에 있어서도 서서히 다른 계획령 적용지에도 시행될 예정인데, 본 규칙의 시행으로 점차 시가지 건축물이 중대한 방공적 요구를 충족시켜 각 가구에서 방위의 결실을 거두게 되면서 공습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20장 경방(警防)

1. 방공의 개요

1) 방공제도의 연혁

조선은 대륙으로의 가교이자 국경과 맞닿아 있고, 특히 병참기지로서 군사상 중요한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쉽게 공습을 받는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따라서 1933년 본 총독부와 조선군 사이에 방공협정을 맺고 이에 기초하여 주요지역의 방공을 실시하였고, 이번 사변에서도 당초에는 본 협정에 기초하여 방공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방공협정에 의한 방공은 국부적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의무,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실시에 있어 여러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고 통제적인 방공을 실시할 필요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발발한 지나사변은 더욱 확대되고 국제정세 또한 긴박해지면서 드디어 제도를

확립하게 되어 1937년 11월 18일에 칙령을 내려 방공법을 조선에 시행하였다.

2) 방공기관의 개요

조선의 방공기관은 다음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방공 제반의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1) 조선총독부

방공 업무는 당초 총독관방(總督官房) 문서과에서 주관하였으나 1937년 9월에 새로이 관방에 자원과가 설치된 동시에 시국에 관한 다른 업무와 함께 이를 자원과의 주관으로 옮기고 방공계를 설치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뒤 국제정세가 더욱 복잡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 방공의 중대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1939년 2월 3일 경무국에 방호과를 신설하고 관방 자원과의 주관이었던 방공 업무와 경무국 경무과의 주관이었던 소방과 수방 업무를 일괄적으로 방호과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방공 업무에 일대 신기원을 긋게 되었는데, 현재의 기구로도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선반도 방공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강화할 필요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선방독자재 단속규칙의 시행에 따른 방독검정기관의 설치를 비롯해 이를 한층 강화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2) 도(道)

각 도는 방공법의 조선 시행과 더불어 경찰부 경무과를 주관 부서로 하고 경무과에 방공계를 설치해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의 하나의 계(係)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업무 처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1940년도에 기구를 더욱 확충,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의 방공에 관해 방공계획을 설정하여 도내의 방공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지정 행정청

방공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 또는 읍에서는 도지사의 지정에 따라 해당 부윤(府尹) 또는 읍장이 방공 계획을 설정하여 그 구역 내의 방공을 실시한다.

(4) 경찰관청

경찰서장(소방에 관해서는 소방서장)은 도지사 밑에서 방공 실시의 보조기관인 방공감시대 및 경방단을 지도 감독하고 방공 실시에 임한다.

(5) 특별 방공계획 설정자

규모가 큰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혹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별도로 방공 실시를 하도록 한다.

(6) 관청 방공계획 설정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관한 방공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방공계획을 수립하고 방공 실시에 임하는 한편, 조선총독부가 지정하는 소속 관서로 하여금 이를 맡도록 한다.

(7) 방공위원회

방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조선중앙방공위원회를, 각 도와 지정

행정청에는 지방방공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였다.

(8) 기타

① 경방단(警防團)

방공, 소방, 수방 등 경방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는 종래 방호단, 수방단 등의 단체가 있었으나 이들 단체는 그 조직이나 목적, 지도계통이 다르고 아울러 업무상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사시에 통제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시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들 단체를 개조 통합하고 그 계통을 일원화함으로써 강고한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고, 1939년 10월 1일에 조선 전체에서 일제히 경방단이 탄생하면서 방공 실행 기관으로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② 감시대

방공 감시 임무를 맡기 위해 방공감시대를 설치해 도지사 및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 하에서 항공기의 공습을 감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③ 가정 방호

도읍의 방호 초동 임무를 맡도록 하기 위해 자위방공의 취지에 기초하여 각 애국반으로 하여금 이웃끼리 서로 돋고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유사시 방호의 초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그 밖의 방공원조단체

(1) 재단법인 조선경방협회의 설립

1928년 10월 23일 서립된 재단법인 조선소방협회는 설립 이래 각 소방대의 제휴, 부상 대원의 구제, 소방시설의 개선 등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1939년 10월 1일 경방단의 탄생과 더불어 조선경방협회로 개편된 이후 더욱 경방 사업의 확충에 활동 중이다.

(2) 재단법인 조선방공협회의 설립

방공 사상의 보급 철저, 방공 사업의 조장과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방공의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국고에서 받는 보조금 5만 원과 기부금 100만 원을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1939년 7월 21일 조선방공협회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협회는 현재 방공에 관한 조사 연구, 방공 지식의 보급 철저, 방공 근무원의 양성, 방공에 관한 설비 자재 정비의 조장과 장려, 방공기관의 지원, 방공훈련의 지원, 방공 공로자의 표창 및 방공 순직자, 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위로와 원호 등의 사업에 활동하며 조선반도 방공의 측면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3) 조선국방화학협회의 설립

1936년 4월 12일 설립된 경성국방화학협회는 이번 사변 발발 이래 방공 방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늘 제일선에 서서 각 방공기관들과 협력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에 대한 방독 지식의 보급, 방독 작업의 훈련 및 방독기구와 자재의 정비 등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국의 중대화에 따라 기구를 강화하고 확충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1938년 10월 3일 조선국방화학협회로 개편하고 현재 한층 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 조선공장·광산방공연구회의 설립

사변 발발 이후 우리 조선반도의 공장과 광산 등이 부여받은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광산 등의 방공의 완벽을 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적 연구기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1940년 6월 25일 군관 및 전 조선의 주요 공장과 광산 관련 회사를 중심으로 조선공장·광산방공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회는 방공에 관한 제반 조서와 연구를 하는 동시에 방공 시설의 정비와 보급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소기의 목적 달성에 매진 중이다.

(5) 조선해상방공연맹의 결성

우리 조선반도는 대륙작전의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관계상, 유사시에는 각지의 항만과 항해 선박은 적기의 절호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금 가장 긴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해상업무와 관련 있는 각종 단체들과 회사, 개인들을 규합하여 자주적 정신에 입각해 해상방공의 진용을 갖추기 위해 1940년 7월 9일 조선해상방공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조선총독부 지도 하에 현재 해상방공에 관한 조사와 연구, 해상방공 지식의 보급 철저, 해상방공에 관한 설비 자재 정비의 조장·장려, 방공징용선 조달 지원, 해상방공 실시에 노력한 자에 대한 표창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 장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봉사하는 해상방공감시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2. 소방기관

구 한국시대에는 거류지 및 개항지에 일본인들이 조직한 소방대와 경성에 지나인들이 조직한 소방대가 있었으나, 이들은 각자 자국민의 화재예방에 종사하는 한편 여력이 있으면 일반 화재에 지원을 하고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었다. 그런데 1907년 한국 궁중에 소방대가 설치되어 궁중뿐만 아니라 일반 부민들의 소방에도 종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조선의 공설 소방기관의 효시이다.

이어서 1910년 8월 일한병합과 더불어 내지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조선 각지에 소방대가 설치되었는데, 1915년 6월 1일 조선총독부령으로 소방대규칙이 발포되어 부읍면을 단위로 지방 장관이 설치하게 되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여 1939년 9월에는 그 수가 1,395개로 대원들 숫자는 69,413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그 본래의 사명인 수화소방은 물론 지방 중견단체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체제 정비의 필요상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는 경방단규칙을 발포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경방기관인 소방대, 방호단 및 수방단 세 단체를 개편·통합하여 새로이 경방단을 설치하였는데, 그 수는 2,424개로 단원 수는 177,354명이다(제46표 참조). 그 외에 경성부, 부산부, 평양부에는 관설 소방서를 설치하여 화재 경방에 노력하고 있다.

3. 기계기구

조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에 관한 역사가 짧고 특히 경방단은 조선의 각 부읍면에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계 기구의 설비는 시가지 경방단을 제외하고는 아직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매년 증가하는 화재와 특히 긴박해지고 있는 시국을 고려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기에 관계당국과 연락을 취해 설비 자재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제47표 참조)

4. 화재발생 및 손해

1940년도 화재 발생건수는 3,260건으로 소실 동수 4,106동, 손해액 18,756,519원이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355건 감소하였으나 손해액은 오히려 11,634,446원 급증하였다. (표48~표49 참고)

제21장 경제경찰

1. 연혁

지나사변 발발 아래 국가총력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시경제체제의 정비는 차실히 진행되어 총후 경제력의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물자동원계획을 수립한 동시에,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에 기초한 중요 물자의 생산, 배급, 소비, 수출입, 가격 등에 걸쳐 통제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 통제 법령들의 공포 시행은 급속하고 그 숫자는 매우 많았다. 그런데 자유경제주의의 잔재 속에서 여전히 이윤추구를 하려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통제의 목적 달성을 도저히 불가능한 정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1938년 11월 새로이 경제경찰 제도를 창설하여 통제 법령들의 실효를 확보하고 경제통제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그 기구는 경시 이하 565명의 경찰 직원을 중원에 따라 경무국 경무과 내에 경제경찰계를 두고 조선 경제경찰의 지휘 통제를 맡도록 하는 동시에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조선의 산업경제의 중추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에 경시를 과장으로 한 경제경찰과를 신설하고, 그 밖의 도에는 보안과에 경제경찰계를 두었다. 또한 경찰서에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경제경찰계를 두거나 보안계에 경제 경찰관을 배치하여 그 나름의 진용을 갖추어 업무를 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시국의 추이와 더불어 경제통제는 더욱 강화·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면서 1940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본 총독부에 사무관 이하 21명, 지방청에는 경시 이하 1,072명을 중원하는 동시에, 기구를 확충하여 총독부 경무국 및 이미 설치된 경기도를 제외한 12도에 새로이 경제경찰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제일선 경찰서의 진용을 증강하여 조선의 각 경찰서에 경제경찰계를 두는 동시에 주요 도시 경찰서 대부분에 경부 혹은 경부보의 전임 주임을 배치하여 경제경찰의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2. 지도상황

경제사범을 막기 위해서는 검거를 강화하는 한편 업자에게 통제 법령의 내용 등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동시에 시국을 잘 인식시켜 적극적으로 경제경찰에 협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경제경찰 윤용의 근본 방침은 지도 방법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 철저를 기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경찰에 관한 상공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경찰 창시 이래 총 49,700회, 출석업자 850,6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 밖에 경제경찰 방범 주간의 실시, 경제경찰 상담소의 설치 혹은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에 노력하면서 통제 법령을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3. 단속상황

이상과 같은 기구와 방침에 따라 경제경찰은 예의 지도 단속을 함께 수행하면서 경제통제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었지만, 기간에 통제법령은 잇따라 공표 시행되어 경제통제는 점차 고도화하고 광범 해지면서 악질·중대한 사범으로서 검거되는 사건이 매달 증가하게 되었다. 1939년도에는 월 평균 약 48건이던 것이 1940년에는 통제의 강화에 따라 범죄 발생 측면의 확대, 경제경찰의 단속 검거의 철저 등의 원인이 있긴 했지만, 현저한 증가를 보이면서 월 평균 약 1,650건에 달하였다.

경제경찰 창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반 사건을 형태별로 본다면 폭리 행위 등 단속규칙 위반이 가장 많은 11,713건, 다음으로 가격 등 통제령 위반이 6,498건, 이어서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 제1조에 의한 명령 위반 526건이다. 그 밖의 물자의 제조, 사용, 배급 등 제한법령의 위반은 앞의 세 가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검거까지 가지 않은 경고(戒告), 유시(諭示) 등의 처분도 매달 증가하여 1939년 12월말 현재 누계 20,663건이던 것이 1940년 말 현재 누계는 71,758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묘해지고 악질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연히 발발한 세계대전의 여파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 전시경제의 유지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국가총동원법을 발동하여 가격, 운송료, 보관료, 손해보험료, 임대료, 가공비 등을 일절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가격 등 통제령 및 지대·임대료 통제령, 소작료 통제령, 그 밖의 중요한 관계 칙령을 공표 시행하였고, 이어서 폭리단속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폭리행위 등 단속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통제의 강화·확대에 따른 경제경찰의 단속 대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확대되어 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은 마침내 어려움과 번잡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4. 특수물자의 소비규정

1) 휘발유 및 중유

휘발유 및 중유는 전시하의 필수품 물자로서 가장 빨리 소비 규정이 단행된 물자인데, 조선에서는 1938년 6월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에 기초하여 부령을 공표 시행하였다. 그 구입은 도지사가 발급하는 구입증이 있어야 했고, 관할 경찰서를 거쳐 신청하고 경찰서는 도지사 발급의 구입증 교부와 소비규정의 감시를 새로운 경찰 업무로서 관장하게 되었다.

경찰에 부과된 이러한 새로운 소비규정 업무는 당초 도에서는 보완과, 경찰서에서는 보안계가 처리했으나, 경제경찰의 창시 이후에는 경제경찰에서 관장하고 소비규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감시 단속한

결과 1939년 29건 129명, 1940년 29건 80명의 위반자를 검거함으로써 전시 필수품 자원의 방만한 소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였다.

2) 자동차 타이어 및 체인

자동차 타이어, 튜브의 배급은 원료 생고무의 배급 제한에 따라 제조량도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매점매석 등의 암거래를 유발하고, 심지어 전시하 운수 교통에 있어서도 큰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일본 내지와 호응하여 1939년 2월 20일부터 자치적 배급통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경찰서를 통해 구입증 교부 신청 및 발급을 한 이후부터는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제21장 위생시설

1. 개황

과거의 상태 : 과거의 조선은 위생사상이 매우 열악하고 우연히 질병에 걸린 자가 있어도 의사의 치료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먼저 무녀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그런 미신을 이용해서 입고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데 반해 현대적인 학식과 기능이 있는 의사는 매우 적었고, 공중위생상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음료수도 일반적으로 매우 불량하고 각종 전염병이 자주 유행하였다. 특히 ‘디스토마’ 및 십이지장충 같은 질병은 각지에 만연하는 상태였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단지 경성과 그 밖의 일부 지방에 내지인 의사와 외국 선교사 의사가 의료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 보호정치 당초 통감부는 의료기관을 완비하여 위생 상태를 개선할 것을 급선무로 보고 그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에 대한의원(大韓醫院, 현재의 □□□□□□□□□□□□□□)을 개설하였고, 이어서 도자혜의원(道慈惠醫院, 현재의 □□□□)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또한 기업공채의 일부를 할애해 주요 도시의 상수도 부설에 착수하였다.

병합 이후의 의료시설 : 1910년 병합에 따른 신정(新政) 때는 특히 의료시설에 유의하면서 가장 먼저 의료기관의 확장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한의원의 명칭을 총독부의원으로 바꾸고 규모와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각 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여 널리 일반 진료와 빈민들에 대한 의료를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병합 당시 하사된 임시 은사금으로 벽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 널리 의료를 실시하고, 이미 설치된 13곳 외에 전라남도 제주도 이하 15곳에 자혜의원을 중설하였다. 또한 순회진료를 시작하였고, 경찰의를 각지에 배치하여 빈민 의료시설의 보편화와 확충을 도모하였다. 그 외에 조선에서는 나병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 소록도에 진료소를 신설하여 수용진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14년 4월 공의(公醫)제도를 두고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공의를 배치하여 경찰의와 함께 일반 의약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국경 접안 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평안북도 초산 및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자혜의원이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였다. 간도와 훈춘 지방은 조선인 이주자들이 매우 많은데도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간도에 자혜

의원을 증설하였고, 또 훈춘,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천보산에는 촉탁의(囑託醫)를 배치하여 지역 밖에 있는 궁민에 대해서도 성은(聖恩)을 고루 입도록 하였다. 한편 당시의 자혜의원 수는 20개로 충분히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1919년 제도개정 당시 13개의 의원을 증설하였다. 1914년에는 군산, 남원, 순천, 마산, 강계, 혜산진, 성진, 개성에 8개 의원을 개설하였으나, 같은 해 행정과 재정 정리를 한 결과 종래의 도자혜의원은 총독부의원과 전라남도 소록도 자혜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1915년부터 도립의원으로 바꾸고, 전부 각 도의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종래 사용하던 토지, 건물, 물품 등은 전부 지방비에 위탁하는 동시에 조선의원 및 제생원 특별회계에 속해 있던 유지자금 약 400만 원을 각 도에 분양하고 이자와 병원 수입 및 국고보조로 경영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1926년도 이후 대전, 신의주, 철원, 사리원의 각 의원과 평양의원 진남포 분원을, 1931년 6월에는 간도 국자가에 회령의원 연길 출장소를, 1932년 5월에는 인천의원을, 1933년에는 원산의원 및 수원의원 및 이천 출장소를 증설·개원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진남포 분원을 독립시켰고, 1935년에는 수원의원 안성 출장소를 설립, 1936년에는 홍성과 북청의원, 1937년에는 청주의원 충주 분원을 증설·개원하였다. 그리고 1937년 12월 1일 만주국 치안법권 철폐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부속지 행정권 위양(委讓)에 따라 간도성 내에 있던 용정 연길 출장소는 만주국으로 위양하였다. 1938년에는 안주 및 장전의원을 개설하였고, 같은 해 이천 출장소 및 안성 출장소를 독립시켰다. 1939년 10월에는 삼척의원을 개설하였으니, 도립의원의 숫자도 현재 42개에 달하고, 의료기관도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에 종래의 총독부의원은 1928년 6월부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이 되었다.

보건위생시설

상수도 : 상수도는 시가지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수질은 공중위생상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설과 확충에 따른 상수보호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특히 보호구역의 설정, 전담 기술원의 배치, 수도 수원지 거주자에 대한 보균자 검색, 정화, 멸균시설의 완비를 도모하는 등, 수도 사고의 방지와 수질의 적극적인 개선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비보조를 받아 상수도의 부설을 장려한 결과 경성, 인천, 개성, 청주, 제천, 대전, 공주, 강경, 논산, 조치원, 천안, 장항, 전주, 군산, 이리, 김제,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고흥, 대구, 김천, 경주, 포항, 영천, 안동, 부산, 마산, 진주, 통영, 진해, 밀양, 삼천포, 동래, 김해, 울산, 해주, 재령, 황주, 연안, 평양, 진남포, 안주, 중화, 정주, 신의주, 의주, 선천, 강계, 박천, 벽동, 강릉, 춘천, 철원, 평강, 통천, 장전, 함흥, 원산, 홍남, 영흥, 단천, 혜산, 신포, 청진, 나남, 성진, 회령, 나진, 웅기, 무산의 시가지에 부설하였다. 그 밖에 간이수도로서 완도, 나로도, 장승포, 해운대, 감포, 고성 등에 설치되었다. 또 회사나 공장 등 개인이 경영하는 수도 58곳도 부설되었다. 한편 각 도는 도비(道費)를 보조하여 공동 우물을 파거나 수리를 장려하여 음료수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 오물 청소 사업과 그 밖의 일반 보건위생에 대해서도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반 시설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위생 상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음료 우물 : 조선의 재래식 우물 대부분은 돌로 쌓아 설비가 불완전한 탓에 빗물과 오수의 침투로 인해 수질이 좋지 않고 보로위생과 전염병 예방상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질이 불량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천수나 빗물을 저장하여 용수로 사용하는 지방도 있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를 인정하고 종래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모범 공동 우물을 신설하거나 공동 우물의 개선을 조성해왔다. 최근에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지도 방침을 조성주의에서 자력갱생주의로 바꾸어 우물과 우물이 흐르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동시에 가능한 한 지붕과 두레박을 설치하는 등 간절한 지도와 독려를 한 결과 조선의 우물 총 325,742곳 중에서 공동 우물 162,562곳 중에 개선을 한 곳이 66,832곳, 구조 등으로 인한 개선의 필요가 있는 곳 54,910곳, 그리고 개선 중이거나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이 40,839곳으로 4분의 3은 완전한 우물이 되었다.

또한 전용 우물은 총 163,180곳 중에서 개선이 끝난 곳 43,598곳, 구조 등으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곳 74,849곳, 그 밖의 개선을 해야 하는 곳 43,055곳으로 이 역시 약 4분의 3은 우량 우물을 완성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음료수의 개선에 한 시대를 그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상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위생조합 : 보건위생은 본래 그 성질상 단지 공공기관의 시설과 행정의 운용만으로는 쉽게 소기의 효과를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자각과 생활환경의 개선이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근래 문화의 향상과 위생사상의 보급에 따라 민중의 자주적 활동으로 위생 상태를 절실히 개선할 필요가 생긴 것을 고려해 1936년 위생조합의 설치를 종용하고, 그 조합의 지역은 활동의 편의와 설치의 필요성에 의해 시가지에 각 정(町) · 리(里)를 단위로 조직하기로 하였다. 1939년 말까지 조합연합회 54개, 조합 수 1,598개가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부(府) · 읍(邑) 및 이에 준하는 지방의 미설치 지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치하여 이른바 자주위생의 취지에 따라 변소, 쓰레기 용기, 하수구의 신설과 개선, 시가지의 청결, 청소, 파리 박멸, 미화주간의 실시, 전염병 예방 등 매우 중요한 사명 아래 활동하면서 보건 방역에 있어서 착실히 소기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최근의 시설 :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각 도의 위생과 의료기관의 확장은 1911년 2월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도에 기사(□□)와 기수(□□ 및 □□)를 배속시키고, 해항지에 항무의관(港務醫官) 또는 항무의관보를 증원하였다. 또 이미 설치된 의원의 증개축, 진료 분과의 증설, 의원 직원의 증원 우대, 간호부의 양성 보급 등을 계획 실시하는 동시에 앞서 언급한 자혜의원을 신설하는 등 착실히 그 면목을 일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의 위생 상태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더욱 조사 연구를 할 사항이 많고, 또 시설 당초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라도 오늘날의 정세에서는 점차 그 결함을 느끼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를 크게 개선할 뜻을 갖고 문명적 시설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방 위생기관의 확충에 따라 종래 여러 기관이 분담하고 있던 전염병 및 지방병의 조사 연구 및 혈청, 약물류의 제조, 배급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를 통일하기 위해 총독부에 그 기관을 설치하고 각 도에 위생기술원을 두어 보건 및 방역 업무를 맡도록 하여 위생 업무의 근본적인 쇄신을 기하고 있다.

2. 의료기관

공의(公醫) : 조선의 벽지 촌락에서는 의사의 분포가 매우 희박하고 의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수를 다하는 이들이 적다. 따라서 1913년 공의제도를 두고 주로 일반인 진료에 종사하는 동시에 관서(官署)의 위생 업무에도 종사하도록 하였고, 1914년 4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전도에 137명의 의사를 배치하여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 이후 정원과 수당을 늘려 충실을 도모하고, 1923년에는 정원 228명으로 1인당 연간 수당 평균 1,500원의 예산이던 것을 1931년도의 정리 절약으로 인해 정원을 183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공의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1940년 말에는 조선 전체를 통해 463명의 공의를 두게 되었고, 또 각 도의 지방비로 운용하는 공의가 76명으로 대체로 촌락 벽지에서도 신진 의학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醫師) : 1914년 7월 의사시험규칙을 발표하고 1916년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였고, 1923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지정(1934년 4월 10일 □□□□□□□)하였으며, 두 학교의 졸업자에게는 의사 자격을 주었다. 또한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에 의학부를 설치하였고, 1929년에는 대구와 평양에 도립의학강습소 설립을 인가(1930년 3월 19일 □□□□□□□□□□□□□□□□□□□□□□□□□)하였으며, 1933년 3월 두 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 인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1940년 말 현재 의사 수는 불과 3,197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조선 전체의 인구와 비교하면 의사 1인당 7,079명으로 일본 내지의 의사 1인당 인구의 약 6배에 해당하고, 그 분포는 매우 희박하고 조선인의 대부분은 재래식 의술을 행하는 의생(醫生)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특히 의사의 대부분은 거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농촌이나 산촌에 대한 보급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의생(醫生) : 1913년 11월 의사규칙 발표와 동시에 현재 조선인으로 조선에서 의업에 종사하고 있지 만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한 의생제도를 만들어 의생규칙을 발표하기 이전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20세 이상의 조선인을 의생으로서 영구히 의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의사 수가 매우 적은 탓에 벽지 촌락에서는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1919년 8월 본령(本令)을 개정하여 당분간 3년 이상 의생으로서 의술을 습득한 조선인들 중에서 적당한 자에게는 5년 이내의 기한을 두고 의생 면허를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촌락은 여전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1923년 이를 다시 개정하여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1940년 말 현재 의생은 3,604명으로 그 숫자는 결코 적지 않지만 대부분 한의학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식수준이 낮고 의사의 보급과 더불어 그 숫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한지의사(限地醫師) : 벽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라도 당분간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 의업을 허가함으로써 부족한 것을 완화하고 있다. 1940년 말 현재 한지 의사은 436명이다.

치과의사 : 치과의사의 숫자는 매우 적고 도저히 수요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틀니 영업자를 허가하여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기공에 종사하고 의술의 소양이 없기 때문에 1911년 2월 치과의사시험규칙을 발표하고 1923년 2월에는 경성치과의학교를 지정한 뒤, 1930년 1월 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킴으로써(□□대학□□대학규정) 매우 우수한 치과의사의 양성과 보급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여 1940년 말 현재 915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도회지에 모여 있는 탓에 촌락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산파(產婆) : 예부터 조선인은 분만에 있어 타인의 간호를 받는 것을 기피하는 풍습이 있어서 병합 전에는 조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전혀 없었지만, 내지인의 감화를 받아 점차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직 그 숫자는 매우 적다. 내지인 산파는 내지인의 증가에 따라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도회지에 개업하였고 벽지에서는 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대학부속의원 및 대구, 평양과 함흥의 각 도립의원과 그 밖의 철도병원 등에서 이를 양성하는 것 외에 각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였고 1933년 이후 합격자에게는 일본 내지와 공통 자격을 인정하면서 증가와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1940년 말 현재 2,057명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다.

간호부(看護婦) : 1940년 말 현재 간호부 숫자는 2,098명으로 이 역시 소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파와 함께 대학부속의원 및 각 도립의원에서 이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1922년 7월 부령 제102호를 발포하여 일본 내지와 공통 자격을 인정하고 더욱 더 증가와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약제사(藥劑師) : 약제사 숫자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한데다가 대부분 경성, 평양, 부산, 대구 등 도시에 집중되었고 지방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어서 약종상(藥種商)을 허가하여 점차 약품의 수급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약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취급상 위험을 동반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916년 약제사시험규칙을 발포한 이래 1925년 조선약학교, 1930년 9월에는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지정하고, 나아가 1933년 2월 문부성의 지정에 따라 그 졸업자들에게는 약제사 자격을 인정하는 등 우수한 약제사 보급에 힘쓴 결과 1940년 말에는 598명에 이르게 되었다. (제50표, 제51표 참조)

제23장 방역

1. 전염병

조선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크게 유행하여 민심을 동요케 한 것은 전해오는 미신이나 전설 등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구한국 정부는 광무3년(1899년) 전염병 예방규칙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지만, 규정이 미비했고 시설 또한 보잘 것 없는 매우 유치한 것이었다. 그 뒤 위임통치를 하고 일한합병을 한 이래 여러 예방령이 발포되고 해항검역소도 설치되면서 서서히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조선에서 민중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한 전염병은 ‘콜레라’, 천연두(痘瘡), 이질(赤痢), 장티푸스, 성홍열(猩紅熱), ‘디프테리아’ 등이다. 특히 천연두는 끊임없이 창궐한 병으로 현재 중년 이상의 조선인들 중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페스트’에 관해서는 매번 이를 적절히 방역한 덕분에 아직 해독을 입은 적이 없다. 특히 만주, 러시아령 지방에 인접하여 위생시설이 아직 불충분했던 당시의 조선으로서는 참으로 내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중들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각종 미신에 사로잡혀 위생사상이 낮은 자들이 많고, 종래에는 종종 예방조치를 기피하고 이에 반항하는 자들이 있어서 방역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초래했지만, 1924

년 전염병예방령을 개정하여 지정된 병의 숫자를 10가지로 하는 동시에 시설의 개선과 엄중한 단속을 한 결과 점차 그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콜레라 : ‘콜레라’는 유행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이미 수차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1895년에는 평안북도에서만 이 병으로 인한 사망자 6만 명 이상, 1902년에는 경성에서만 사망자 1만 명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이 병은 언제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고 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병합 이후 위생시설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크게 유행하는 일은 없어졌다. 1913~1915년, 1917~1918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1919년에는 동아시아 방면에 크게 유행하는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국경선과 해항 등에 침입방지책을 강구하였고, 특히 거액을 들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체에 만연하여 환자 16,915명이 발생하였고, 1920년에는 24,229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를 예전과 비교하면 그 피해가 현저히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1년에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퇴치가 늦었던 지방의 주민들 중 약 12,000명에게 연초에 채변검사를 실시했는데, 단 1명의 보균자도 발견되지 않았고 확실히 조선은 병독지(病毒地)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다. 또한 전력을 다해 그 밖의 방역상의 시설들을 강구하고 본 총독부 세균검사실에서는 ‘백신’ 혈청의 제조 능력을 높여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항검역 및 예방주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과 방어진향에 입항한 선박 중에 보균자 각 1명을 검출했을 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1922년에는 지나 양자강 연안과 직예성(直隸省), 성경성(盛京省) 등의 각지에 창궐하였고, 이어서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지의 각 현에서도 환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지나과 일본 내지에 엄중한 경계를 하는 한편, 조선 내의 해상 노동자 약 60만 명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에 힘쓴 결과 평안북도에 지나계에 속하는 환자 40명이 발생했을 뿐이다. 1925년에는 7월 상하이에 이 질병이 발생하여 점차 창궐하였기에 8월 15일 그 지방을 목적지로 하여 최초 도착 항구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예방주사를 놓아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던 중, 10월 20일 경상남도 □연안에서 어업 중이던 어부에게 환자가 발생하였고, 또 경상북도 어부 중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마침 □□□□□□□□□□□ 어업자가 쇄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때 큰 위협이 있었지만, 엄중한 방역을 강구한 덕분에 불과 6명의 환자가 나왔을 뿐이었다. 1926년에는 6월에 별씨 상하이에서 발생하였고, 계다가 발생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주사와 해항검역의 실시 등 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8월 중에 남북만주 각지에 만연한 ‘콜레라’는 마침내 평안북도와 접경지인 안동현에 침입하였고, 그곳에서는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4, 5명의 사체를 압록강에 버리고 강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상생활자에게 전염되었다. 9월 8일 신의주에 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강 유역에 있는 여러 군 및 인접한 평안남도에 전파되어 발생 지역 1부 11군 40개 면에 이르렀고, 1921년 이후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 252명, 사망자 159명, 보균자 11명이 나왔다.

1929년에는 상하이를 비롯해 오사카, 와카야마,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의 각 부·현에서 발생하여 점차 만연하고 유행할 기미를 보였다. 또 그해는 시정(施政) 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를 경성에서 개최하는 관계상, 예방 시설에 관해서는 해항 검역과 ‘콜레라’ 예방주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폐회 직후인 9월 14일 갑자기 인천부 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 병균의 침입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를 한 결과 원□(原□)의 산지인 산동반도 지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은 조선박람회에 따른 교통의 급증과 발생지가 경성과 가까운 관계상, 특별히 대담한 시설과 신속한 조처를 취한 결과 유행하는 것을 한정된 장소에 국한시킬 수 있었다. 그 기간의 최종 발생 환자가 나온 9월 29일까지 16일간, 또 최종 보균자가 발생한 10월 5일을 가산하더라도 불과 22일 동안이었다. 또 지역 범위는 인천부의 7개 정(町)·리(里), 첫 발생지와 인접한 부천군 다주면 1곳에 그쳤고, 발생 환자 수는 18명, 보균자는 17명으로 종식되었다. 1930년과 1931년도에는 다행히 병균의 침입이 없었지만, 1932년에 안동현, 간도 방면에서 신의주, 함경북도에 병균이 침입하여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환자 70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는 환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1937년 9월 25일 경상 남도 부산부에서 갑자기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병균의 침입 경로에 관해서 연구 조사를 한 결과 지나사변과 관련해 당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던 상하이 방면과 히로시마 방면은 교통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지역과 암마구치 지방에는 상당히 콜레라가 유행했기 때문에 일본 내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발견이 빨랐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확한 조치를 취한 덕분에 환자를 간호한 가족 중에서 1명의 보균자를 발견한 데서 그쳤고, 다른 곳으로 전염되지 않고 종식되었다. 그런데 1938년에는 지나사변 여파로 인해 지나 연안 각지에 콜레라가 유행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 예의 경계를 하던 중, □□ 5월 20일 상하이에서 처음 발생한 이 병은 잇따라 각지에 전염되어 맹위를 떨쳤고, 남지와 북지 방면은 물론 만주 및 내지의 오카야마와 후쿠오카에 전염되었으며 조선에서는 7월 15일, 상하이 8월 17일, 텐진을 각각 콜레라가 유행하는 곳을 지정하여 해항 검역을 철저히 하는 한편, 연안의 주요 항의 해상 생활자와 관계자들 70만 명에게 콜레라 예방주사를 하여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8월 17일 텐진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신의주丸 선원들 중에 보균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규 조치를 취하였으나, 9월 5일 황해도 은율군 금산포 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 뒤 □진(□津), 해주, 황주의 각 군 외에 평안남도 진남포, 평양, 대동, 용강, 중화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발생 지방의 강과 해수 사용금지는 물론 교통의 제한, 특정물건의 반출금지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생지를 중심으로 한 관계 구역 내의 주민 200만 명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황해도에서는 환자 21명, 보균자 4명, 평안남도에서는 환자 29명, 보균자 12명이 발생하였다. 전자는 10월 12일, 후자는 10월 22일 종식되었다. 1939년도와 1940년도에는 다행히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연두 : 이 병은 과거 사계절을 내내 유행하여 거의 지방병과 같은 것이었다. 이후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천연두를 자연적인 수명이라는 미신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예방 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한국 정부는 1895년 종두(種痘) 규칙을 발포한 아래 수차례 종두의 보급을 도모하였으나 결국 실적을 올리지 못했고, 병합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총독부에서 경찰 관과 그 밖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미신을 타파하고 백만 종두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두묘(痘苗)의 무료 배포를 실시, 부인들에게는 특별히 부인의 종두 시술자를 두는 등 종두의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병세가 점차 감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1919년에는 봄부터 다시 유행하여 환자 2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같은 해 동아 방면에서 일반적으로 유행하면서 극성 병독이 침입하여

종두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11,500여 명, 사망자 3,600명이 발생하였다. 1921년에는 병세가 다소 감퇴하였으나 여전히 환자 8,300여 명, 사망자 2,500여 명이 나왔다. 1922년 봄에도 유행할 기미가 보여서 종두 보급 및 선전용 활동사진 '필름'을 제작하여 조선 전체의 벽지에 이르기까지 순회 영사하여 예방에 대한 민중의 각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1923년 4월 새로이 조선종두령을 발표하고 백방으로 방역에 노력한 결과 점차 호전되었고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환자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1930년 봄부터 다시 지방적으로 유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임시 종두 시행과 그 밖의 철저한 방역으로 예방에 힘쓴 결과 점차 호전되면서 1936년 1,400명, 1937년 205명, 1938년 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1939년 11월 함경남도 함흥부에 발생한 □□은 각 방면으로 전파되어 크게 유행하여 거의 조선 전체에 확대되면서 연말 현재 환자 625명, 사망자 179명이 나왔고, 이어서 1940년에 들어서도 조선 전체적으로 유행 창궐하여 환자 3,265명, 사망자 629명이 나왔다.

장티푸스 : 이 병은 매년 각지에 유행하여 조선의 전염병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는 추세이다. 장티푸스는 확정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견 전 병독이 퍼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조선의 마시는 물은 일반적으로 불량한 탓에 방역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920년 9월 이 병의 유행에 대해 당국은 방역 주임자의 회합을 갖고 예방 방법을 강구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였다. 한편 예방접종을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개업의와 사립병원 등에서도 가능한 한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매년 증가하여 시가지에서는 간혹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12년 9월에 평양, 1925년 7월과 1928년 2월에 경성, 1929년 7월에 부산에서 유행한 것은 가장 현저한 사례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병원체 보유자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1928년 6월 1일부로 단속에 관한 전염병예방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표하는 동시에, 소요경비를 증액 시켜 그 시행에 착수하였다. 특히 병원의 검색, 마시는 물의 개선, 무료예방주사 실시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예방주사는 종종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932년 이래 총독부에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예방 내복약을 제조하여 거의 실비 정도의 가격으로 널리 일반 희망자들에게 구매하도록 하여 예방을 돋고 있다. 또한 전선용 활동사진 '필름'의 영사 및 위생 강화(講話) 전선 '포스터'의 배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중 위생사상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1936년에는 6,748명, 1937년에는 5,417명, 1938년에는 5,855명, 1939년에는 7,000명, 1940년에는 12,101명의 환자가 발생해 아직 소기의 성적을 올리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

이질(赤痢) : 이질은 매년 각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발견에는 다른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주밀한 검병적(檢病的) 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쉽게 이를 종식시킬 수 없었다. 때문에 예방의 근본책으로서 장티푸스와 함께 보균자의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또 청결 방법을 장려하고 수상과 하수의 개량을 도모하였다. 1932년 이래로 이질, 역리(瘦痢) 예방 내복약을 총독부에서 제조하고 장티푸스 예방 내복약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등 오로지 그 예방과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936년에는 4,584명, 1937년에는 4,329명, 1938년에는 4,956명, 1939년에는 6,714명, 1940년에는 4,16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발진티푸스 : 이 병은 1919년에 환자 8백여 명이 발생한 이후 매년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데 그쳤고 유행할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924년 1월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행의 기미를 보였고, 1926년에는 1,239명이 발생한 아래 좀처럼 감소하지 않았고, 1936년에는 1,304명, 1937년에는 890명, 1938년에는 526명, 1939년에는 1,276명, 1940년에는 1,347명이 발생하였다.

성홍열(猩紅熱) : 이 병은 주로 도시 거주 내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경성부에서는 끊임없이 다소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1936년에는 1,147명, 1937년에는 937명, 1938년에는 765명, 1939년에는 720명, 1940년에는 55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디프테리아 : 이 병은 근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1936년 4월부터 디프테리아 예방액 제조를 시작하였고, 각 도에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등의 전염병도 매년 각지에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전염병에 비해 소수이긴 하지만 매년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제52표 참고).

2. 만성전염병

조선의 주된 만성적 전염병은 결핵과 이질이다. 그 외에 트라코마 및 화류병 등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확실한 조사 자료가 부족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핵 : 조선의 결핵병 만연 정도는 아직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신고 등을 바탕으로 한 통계표에 나타난 사망자만 보더라도 1937년에는 10,652명, 1938년에는 9,896명, 1939년에는 11,706명, 1940년에는 11,100명에 달하고, 인구 1만 명에 대한 사망률은 4.87명이다. 조선에서는 의생(醫生) 진단을 받는 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나 일반 위생 상태나 일본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추산하면, 조선에서의 이 병의 현재 환자 수는 약 40만 명, 1년 동안의 사망자는 약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 대부분은 사회의 중견인 청장년층이다. 국민보건에 큰 참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 문화,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예방에 대해서는 1918년 조선총독부령 제4호로 폐결핵예방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어 주로 민중이 다수 집합하는 학교, 병원, 정류장, 극장, 연예장, 여관, 요리점, 음식점, 이발소와 그 밖의 도지사가 지사하는 장소에 침을 뱉을 수 있는 항아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병원 및 온천, 해수욕장, 요양소 숙박 시설 등에 대해 특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방독을 시행하도록 하여 병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설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근래 도시의 팽창, 교통기관의 발달, 산업의 발달, 교육의 보급과 그 밖의 생활양식의 복잡화 등은 한편으로 병독전파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러한 사회적 사정에 부합한 예방시설을 실현할 필요를 통감하고 있다. 또 일반 사회에 대한 예방지식의 보급은 급무 중에 급무이기 때문에 본 총독부는 각 도과 연계하여 강화회, 전람회, 활동사진회를 개최하거나 팸플릿, 포스터,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예방 사상의 보급과 계몽에 노력하고 있다. 1936년 4월 경성에 조선결핵예방협회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각 도에서도 도결핵예방협회가 조직되어 강력한 단체가

되어 예방운동을 펼쳤다. 그렇지만 1939년 4월 28일 황송하게도 황후폐하로부터 결핵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한 영지(습旨)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내지에서는 재단법인 결핵예방협회가 설립되었고, 조선에도 그 지방본부를 설립하여 각 도에 지부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이 병의 박멸운동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 병의 예방과 박멸에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되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병 : 이 병은 조선에서는 특별히 거론해야 하는 질병으로, 환자는 1939년 말의 조사에 따르면 14,438명이고 그 중에서 관립·사립 요양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7,963명, 미수용 환자 6,475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미수용자 수는 주로 경찰관의 간단한 조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의학적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숫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총독부에서는 예방과 박멸에 관해 일찌감치 뜻을 두고 관립 나병요양기관으로서 1916년 전라남도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하고 나병환자의 치료를 시작한 이래 잇따라 소용설비의 확장과 증설을 하는 동시에, 사립 나병요양기관에 대해서 1923년도 이후 매년 국고에서 보조를 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치료시설의 정비와 충실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편으로 본 총독부에서 나병치료약을 제조하여 의료기관 및 미수용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치료와 구제의 길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수의 환자가 존재하고 있고 각지를 부랑·배회하여 병독을 퍼뜨리고 있는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위생보건과 및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건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대책으로서 본 총독부는 근본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치료 및 격리설비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재정의 제한으로 아직 실현할 수 없었다. 종종 민간에서 나병 예방 치료 사업이 급선무라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에 관한 단체를 조직할 계획이 제창되어 1932년 12월 27일 재단법인 조선나병예방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협회에서는 우선 첫 사업으로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년 동안 환자 3천 명 수용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과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이를 정부에 기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지는 종래의 관립 나병요양소인 도(道)자혜의원이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로 정하고, 소록도의 민유지 전부를 매입하여 종래의 관유지와 합쳐 전체 섬을 요양소 부지로 하기로 하였다. 1933년 4월에는 토지 매입을 끝내고 이어서 건축공사와 그 밖의 새로운 설비에 착수하였고, 1935년 9월 말에는 예정 계획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본 총독부에서는 그 기부를 받아들여 3천 명의 환자 수용을 실시하기 위해 대응책을 수립해 1934년 9월 본 총독부 나병요양소 관제(官制)를 공표함으로써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이전에는 도에 속해 있던 도 자혜의원을 확장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었다. 또한 1934년도에는 2천 명을 증원하여 수용하였고, 1935년도에는 1천 명을 수용함으로써 획기적인 거대 계획을 완성하였다. 그렇지만 그 뒤 나병환자의 상황을 보면, 부랑자·배회자가 상당수 증가하여 우려할 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2기 및 제3기 증가 수용계획을 수립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조선나병예방협회가 필요한 건축 설비를 기부한 덕분에 또 다시 1937년도에 1천 명, 1939년도에 1천 명을 각각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나병 예방에 필수 요건인 환자 수용기관은 크게 확장되는 기운에 도달했기 때문에 1935년 4월 조선나병예방령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환자의 강제수용, 소독, 예방방법과 그 밖의 예방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능한 한 치료시설의 정비와 충실을 도모하면서 이 병의 철저한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황태후 폐하께서 1930년 이후 종종

관립·사립 나병요양소 및 나병예방협회에 환자 위안 및 요양시설의 보조로 거액의 돈을 하사해 주신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더욱 더 시설의 만전을 기해 그 큰 뜻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이다.

조선의 나병 요양기관은 앞서 언급한 전라남도 소록도의 관립 나병요양소 외에 경상북도 대구부, 경상남도 부산부 및 전라남도 여수군 율촌면에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립 나병요양소가 있는데, 그 현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립 나병요양소

조선의 유일한 관립 나병요양소인 소록도 간생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에 있고, 1916년 2월 창설되어 종래에는 소록도 자혜의원이라 불리며 도(道)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1934년 9월 본 총독부 나병요양소 관제의 공표에 따라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나병요양소로서 독립적인 기관이 되면서 소록도 간생원으로 개칭하였다. 창설 당초에는 나병환자 수용 정원은 100명이었지만, 1923년도에 25명, 1925년도에 125명이 늘어났고, 1927년~1928년에 걸쳐 부지 및 건물 설비를 확장하여 1928년도에 200명, 1929년도에 300명을 신규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1931년 6월 조선의 희망사(希望社) 주최로 경성부 등지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서 모은 자금으로 환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 2동을 건축하겠다는 기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1932년부터 20명을 늘려 수용 정원은 770명이 되었다. 또한 조선나병예방협회의 3천 명 수용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 설비 기부 계획에 대응하여 1934년도에 새로이 2천 명을 중원하였고 1935년도에 1천 명을 중원하였다. 이로써 제1기 계획인 3천 명 중원 수용을 완성하였다. 1937년도에는 제2기 사업, 1938년과 1939년도에는 2개년 계속 사업으로서 제3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모두 조선나병예방협회의 건설 설비 기부 계획에 대응하여 2천 명을 더 중원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정원과 합쳐 수용 정원은 무려 5,770명의 거대한 나병요양소가 되었는데, 1940년 말 현재 6,137명을 수용하고 있다.

(2) 사립 나병요양소

대구, 부산, 여수에 사립 나병요양소가 있고 모두 외국인이 경영하고 있으며, 1940년 말 현재 수용 환자는 대구 애락원(愛樂園) 653명, 부산 상애원(相愛園) 172명, 여수 애양원(愛養園) 694명으로 계 1,519명이다. 이들 사립 나병요양소에 대해서는 1923년 이후 환자 수용 정원에 따라 국고에서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치료 사업 조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사립 나병병원은 본국 재단의 보조와 독지가의 기부 및 본 총독부의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경영하고 있고, 환자 처우에 대해서는 모두 자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경비의 관계상 자급자족에 중점을 둔 결과 중증환자를 피하고 주로 경증 환자를 입원시켜 농경과 양계 또는 토끼를 기르는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소록도 간생원에는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또한 사립 요양소는 대개 교통이 편리한 토지에 설치된 관계상 다수의 환자가 요양소 부근에 모여들어, 입원을 거절당한 환자는 그 부근에 나병 부락을 형성한 뒤 상조회를 만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환자에 대해서도 본 총독부에서 특효약 '대풍자유산(大風子油酸) 에틸' 에스테르와 알약 및 대풍자유 알약을 무료로 교부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병(地方病)

조선의 주된 지방병은 폐디스토마, 십이지장충, ‘말라리아’ 등으로 이들 병은 조선 각지에 침투하여 영양장애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선 제반 사항에 걸쳐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비용 등의 관계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폐디스토마에 대해서는 1922년 이후 주로 이 병이 가장 농후한 농촌을 골라 조사에 착수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923년 조사에서는 각 도를 통해 조사인원의 0.9%의 환자가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46%로 나타났다. 또 어떤 면은 무려 82.1%에 달했고 조사 결과에 예상 외로 다수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병 분포의 정도(567페이지)는 일반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게나 가재 등의 생식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 이 병의 감염경로를 보여주는 활동영화를 제작하여 각 도에 배부하는 것 외에 예방선전 강화회 등을 개최하여 민중들의 자각을 환기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1924년에는 부령(府令)을 발포하여 가재와 게의 섭취나 거래를 금지하고 엄격한 단속을 하였고, 한편으로 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예방지식의 계발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뒤 10년이 지나 가재나 게 종류의 생식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디스토마 환자는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재나 게 종류는 불로 익혀 먹으면 인체에 폐디스토마를 감염시킬 우려는 없고, 또한 농촌의 피폐로 인해 식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도 적지 않음을 고려해 1934년 8월 1일자로 해당 부령을 폐지하고 단속방법을 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실정에 맡기는 동시에 가재류를 익혀서 먹는 풍습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책을 취하고 있다.

말라리아, 십이지장충과 장내 기생충병도 널리 만연되어 있어서 각 도에서 각각 예방과 박멸책을 강구하고 있다.

제24장 약품, 매약(賣藥), 아편 및 마약류 단속

1. 약품 및 매약 단속

약품의 단속은 1912년 3월 약품 및 약품영업단속령(제령 제23호)과 동 단속령의 시행규칙(부령 제54호)을 발포하고, 나아가 1925년 3월 이를 일부 개정(부령 제14호)을 하여 도지사의 허가영업으로 하고 제조 및 수이입 매약 등의 검사는 경무총감부훈령(□□□□□□□□□□□□□□□□□□)을 표준으로 하였다. 아울러 내무성의 허가약품을 참고로 하여 매약의 품질 개선과 그 통일을 도모하고, 배급약품의 범위와 분량 등을 점차 확장하여 약품 및 매약영업자의 단속은 약품순시규칙(1913년 7월 부령 제74호)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 내 제조매약의 제조자는 자격의 한정 또는 특수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약제사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허가할 방침 아래 점차 제조매약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제51표참조).

2. 아편 단속

조선에는 본래 아편을 피우는 폐풍(弊風)이 있고, 특히 국경 지방에서 가장 심해서 아편중독에 빠지는 자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905년에 공포한 형법대전에 규정하여 아편을 피우는 기구 등을 수입제조 및 판매를 금하였다. 그 뒤에도 우리 통감부는 종종 한국정부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독려하는 동시에, 내지인 약종상에 대해서도 아편 판매의 단속을 시행하였다. 병합 이후 1912년 3월에 조선형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에도 형법을 적용하고 아편에 관한 제재를 엄중하게 실시하였다. 중독자에 대해서는 점금주의(漸禁主義)를 취하는 동시에, 치료 방법을 강구한 덕분에 점차 악습 감염자는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1914년 9월 총독부훈령으로 경무와 그 밖의 관헌에게 단속 방침을 훈달하고 절대 금지 방침을 취하는 동시에, 종전의 실험에 비추어 중독자를 소집하여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여 그 폐습의 일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점차 중독자 치료의 효과를 거두어 아편을 피우는 폐습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랜 인습은 쉽게 근절할 수 없고, 특히 그 원료인 아편은 대부분 지나 지방에서 밀수입 되었고, 조선 내에서도 평안북도 및 함경북도 등 국경 지방에 아편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양귀비를 밀재배하려는 자가 있다. 또한 세계대전 중 약품류의 폭등에 따라 재배자가 격증한 탓에 이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평화를 되찾은 뒤 약품의 가격도 하락하면서 재배자 및 범죄자도 감소하였다.

양귀비 재배의 단속에 관해서는 종래 각 도에서 각각 규정을 두고 자유 경작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규정이 제각각이고 아울러 아편의 제조 수수(授受) 등에도 근본적 단속을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919년 6월 조선아편단속령 및 동 단속령시행규칙을 발포하고 아편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 양귀비 재배를 금지하였다. 또 그 재배 구역을 한정하고 제조한 아편에는 일정한 배상금을 교부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정 제약자에게 불하하여 '모르핀'류를 제조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유 판매를 금지하는 등, 매우 세밀하고 엄밀한 규정을 두었다.

그 뒤 1924년도의 행정 정리를 한 결과 아편에 관한 전매제도가 일단 폐지되었지만, 단속에 더욱 더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 1926년 4월부터 경찰 단속을 주안으로 한 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선에는 다수의 마약류 중독자가 있고 '모르핀'류의 밀매가 이루어져 중독자 단속의 장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1928년도 이후 아편의 불하를 폐지하고 영리회사가 '모르핀'류의 제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1929년도부터 전매국에서 이를 제조하게 되었다.

3. 마약류 및 마약류 중독자 단속

아편 '모르핀' 등의 마취제는 1920년 12월 아편조약 및 국제연맹의 방침에 따라 단속규칙을 발포하고 수출입에는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고, 정당한 수요 외에 수출입을 금지하였다. 또 수출입 마취제는 주밀한 주의를 기울여 남용과 부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자가 있어서 1923년 일부를 개정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신분증명 또는 인증을 받은 자 외에는 일체 위와 같은 약품의 구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자가 아니면 소유자 또는 소지를 금지하였고, 의사가 아편 중독자 또는 '모르핀' 중독자를 치료했을 때는 환자와 사용약품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각종 복잡한 절차를 두어 부정한 매매와 사용을 한 때 중독자가 약품

취득 방법과 관련한 치료를 신청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그렇지만 매우 오래된 인습인 탓에 쉽사리 숫자가 줄지 않았고, 1926년 9월 말의 조사에 따르면 3,942명이었다. 게다가 이는 중독 정도가 심한 자들뿐이었고, 만약 경미한 자들을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몇 배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의 각 도에서는 일찍이 도지방비의 보조와 지방 유자들의 기부로 치료를 실시해 왔지만, 일단 중독에 빠지면 가산을 탕진하고 곳곳에서 절도를 저질러 인도적인 측면과 보안적인 측면에서 하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일제히 치료할 필요를 인정하고 1927년도 이후 중독자가 가장 많은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및 황해도에서 국고 보조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 크게 노력한 덕분에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에는 매우 많은 중독자들이 있어서 도저히 한 번에 이를 모두 치료할 수 없고, 또 일단 중독에 빠지면 반드시 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 밀매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히려 그들을 등록시켜 필요한 약품을 주어 시간을 두고 치료하면 이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1930년 3월 마약류 중독자 등록규정을 발포하고 중독자가 가장 많은 부(府)·면(面)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등록시키고, 필요한 약품을 주어 의사 지도하에 점차 감소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도(道)치료소를 확장하여 순차적으로 등록하는 중독자를 수용하고 치료하고, 또 수용 치료로 완치된 자에 대해서는 계속 일정한 수산소(授產所)에 수용시켜 일자리를 주어 적당한 노동을 하도록 하여 신체 회복을 도모하였다. 또한 정신 수양도 실시하여 중독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르핀’ ‘헤로인’의 제조를 관영(官營)으로 하는 동시에,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 절대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중독자의 근절을 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급속히 중독자를 근절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934년 9월부터 본 총독부 및 각 도에 마약중독예방협회를 설립하여 널리 관민의 이해와 원조를 독려하였다. 이처럼 관민이 협력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종래의 법령은 벌칙이 가벼워 충분히 마약 단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을 기획하고 1935년 4월에 조선마약단속령, 같은 해 8월에는 동 단속령시행규칙을 공포하여 9월부터 시행하였다(시행과 동시에 종래의 법령은 폐지).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에 매우 양호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중독자의 근절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제53표 참조).

제25장 가축위생기관

조선은 예부터 가축 사육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 위생시설은 매우 뒤떨어져 있었고, 최근까지도 발달하지 못했다. 때문에 과거에 종종 수역(獸疫)이 각지에서 유행한 탓에 농촌이 심하게 피폐하였다. 시정(施政) 이후에는 수의(獸醫)기술원을 배치하여 수역 예방, 식육위생 단속 및 축산장려 지도를 하도록 한 덕분에 가축 위생시설은 점차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수의 기술자들 대부분은 축산 및 위생에 관한 관공서 봉직자이고, 실제 개업 중인 수의사가 극히 적다는 점과 종래의 습관상 가축 사양자(飼養者)는 이른바 우의(牛醫)라 불리며 전업 또는 부업으로 간단한 진료에 종사하는 자에게 가축 진료를 부탁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지식과 경험에 부족한 우의들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낮은 수준의 진료로 인해 종종 가축에 예상치 못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심지어는 가축 전염병 전파 유

인이 되기도 해서 산업의 발달을 저해하여 위생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내지의 수의학교를 졸업한 수의 기술자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였고, 또 조선 내의 수의사 양성 기관도 설치되어 여기서 졸업하는 자도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가축 위생기관을 통제 할 필요가 생기면서 1937년 9월 1일 조선수의사규칙(부령 제132호) 및 가축의생(醫生)에 관한 건(부령 제133호)을 발표하고 193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조선의 가축 진료기관이 정비되었고, 이러한 단속에 의해 일반 가축의 진료는 물론이고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축자원의 증식 및 가축 위생시설의 보급과 발달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의사 : 조선수의사규칙에 따라 조선총독으로부터 수의사 면허를 받는 자는 내지의 수의사법 제1조의 자격이 있는 자 및 관공립 실업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인정받고 조선총독이 지정한 실업학교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자이다. 조선에서의 이들 수의사 양성기관으로 1931년에 평안북도 의주 공립농업학교 및 전라북도 이리 공립농림학교에 수의축산과가 신설되었다. 또한 1937년에 경기도 수원 고등농림학교에 수의축산과가 설치되었고, 1938년에는 함흥 공립농업학교, 경성(京城) 공립농업학교 및 경성(鏡城) 공립농업학교, 1940년에 사리원 공립농업학교에 각각 수의축산과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 현재 9개교에서 조선의 수의사를 양성하고 있다. 사립실업학교에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곳은 현재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조선 내의 수의사 배치는 여전히 희박한 상태이고 내지와 비슷한 수준에 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6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수의업자 : 수의사의 분포가 위와 같이 매우 희박한 조선의 실정과 독학으로 수의학을 공부하고 상당 기간 경험을 쌓은 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조선총독은, 그 이력과 기량을 심사한 뒤 업무의 지역 및 기한을 정해 수의업 면허를 주기로 하였다. 수의사 시험제도가 없는 조선에서는 이것이 독학자의 유일한 자격 취득 방법인 동시에 수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축의생 : 종래 조선에는 이른바 우의(牛醫)라 불리며 매우 수준이 낮은 가축 진료에 종사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러 폐해를 초래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1937년 조선수의사규칙의 발표 당시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크게 고심하였다. 즉 곧바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그들의 생업을 빼앗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축 진료기관의 희박은 현 실정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해서, 폐해가 없는 자는 7년의 기한을 두고 벽지에 한정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로 하고, 부령(府令) 가축의생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수의사규칙과 동시에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적절한 단속과 지도로 제반 폐해를 제거하는 동시에 상당한 기술 경험이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 당분간 가축 진료기관의 보조로 삼았다. 승인할 수 있는 가축의생 숫자는 종래의 우의 인원의 약 절반에 달하는 상황이다.

제26장 가축전염병예방

조선에는 옛날부터 각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여 산업·경제상 피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방시설을 강구하고 있었다. 1915년에 수역예방령(獸疫豫防令)을 제정·시행하고, 우역(牛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비저(鼻疽) 및 피저(皮疽)·유행성 아구창(鷦口瘡)·시호열자(豕虎列刺)·시리사역(豕羅斯疫) 및 광견병이라는 8종을 수역(獸疫)으로 간주하고, 소·말·양·산양·돼지 및 개 종류에 적용하였다. 나아가 1923년 2월 부령 제24호로 소의 전염성 늑막페렴에 대해 수역예방령 중 우역(牛疫)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예방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교통, 산업의 발달과 시세의 변천 및 기술의 진보에 따라 수역예방령에 상당한 변혁을 할 필요가 생기면서 1930년 7월 새로이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을 제정하여 우역·탄저·기종저·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비저·양두(羊痘)·돼지콜레라·돈역(豚疫)·본단독(豚丹毒)·광견병 및 가금콜레라 등 20종을 가축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소·말·□ 및 □ 포함·양·산양·돼지·개·닭과 오리에 적용하게 되었다. 즉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에서는 수역예방령의 명칭 중에 유행성 아구창을 구제역으로, 비저 및 피저를 비종(鼻腫)으로, 시라사역을 돈단독으로 고치고, 또 부령으로 수역예방령을 적용하고 있던 소의 전염성 늑막페렴을 우폐역(牛肺疫)으로 개칭하였다. 양두(羊痘), 돈역 및 가금콜레라와 함께 새로이 전염병에 넣는 동시에 예방령의 적용을 받는 가축으로 닭과 오리를 추가하였다.

또한 가축의 살처분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 확장, 살처분 혹은 예방조치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사한 가축과 병독오염 물건 처분에 대한 수당금 증가 및 그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종래에는 구제 방법이 없었던 검역 중인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수당금 지급 및 가축의 격리 또는 일정 구역 내의 가축 이동 차단으로 인해 자활이 불가능하게 된 자들에 대해 생활비를 지급하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전염병 검색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말·양·산양 또는 돼지가 질병으로 인해 폐사했을 경우에는 소유자와 보관자가 경찰관리 또는 가축방역위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고친 것으로, 이를 193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수역예방령을 폐지했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서 그 효과는 매우 컸다.

조선의 가축 전염병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우역·우폐역·구제역·기종저 및 광견병으로, 우역·우폐역·구제역은 인접한 만주 지방에 늘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종종 국경지방에 침입할 경우에는 크게 유행하면서 교통·산업·경제적인 면에서 큰 영향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1919년 7월 이래 지나, 만주, 시베리아에서 소·양·산양·돼지와 그 사체와 고기·뼈·모피류와 그 밖의 전염병 병독에 오염되거나 오염의 의심이 가는 물건을 수입을 금지하고, 단속을 엄중히 하여 병독의 침입을 저지하는 방책을 취하고 있다. 또 부산에 있는 조선총독부 수역혈청제조소는 원래 농림성 소관이었지만, 1918년에 본 총독부 소관으로 옮겨 각종 수역의 예액(豫液) 및 면역혈청 종류의 제조를 늘려 배급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경지방의 주요지역 18곳에 혈청저장고를 설치하여 우역의 예방액과 면역혈청을 상시 저장하고 신속히 배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저(鼻疽) 예방을 위해 1918년 이후 평안북도 강 건너편 지방에서 수입하는 말·당나귀·노새에 대해서는 신의주 외에 6곳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1927년부터는 함경남도의 강 건너편 지방도 경계구역으로 보고 평안북도에 3곳, 함경남도에 4곳의 검역장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근래 지방정세의 변천에 따라 함경북도의 강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마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서 병독 침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932년 11월 1일 이후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수입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검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검역장을 평안남도에 10곳, 함경남도에 3곳, 함경북도에 5곳, 계 18곳을 지정하여 검역을 시행하고 있다.

기종저(氣腫疽)와 광견병의 예방은 예방주사를 시행하고, 나아가 광견병은 집개 단속과 들개 포살을 시행하여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의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시설로서는 돈역 예방을 위해 1936년부터 돈역예방액의 주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종래 법정 가축 전염병에 넣지 않았던 가금페스트를 1937년 7월 조선총독부령 제91호로 가축전염병예방령 중 가금‘콜레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각각 예방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예방기관으로서는 1924년도까지는 평안북도에 5명, 함경북도에 3명, 그 밖의 도에는 각 1명의 전임 수의무(獸醫務) 촉탁을 배치하고 있었지만, 1925년도 이후 점차 기술원을 늘렸다. 나아가 1936년도에는 평안북도, 함경남도와 북도를 제외한 다른 10개 도에 종래에 배치한 전임 수의무 촉탁을 폐지하고 새로이 도기수(道技手) 10명을 증원하였고, 1937년에는 본 총독부 위생과와 평안북도에 기사 각 1명을 증원하여 오로지 가축 전염병 예방과 우유와 고기 위생 단속에 임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도기사 1명, 도기수 18명, 수의무 촉탁 18명 외에 각 도의 경비로 운영하는 위생기수 30명, 지방위생기수 25명과 그 밖의 산업기수, 지방산업기수 및 농회기술원 등 606명에게 경찰 수의무를 촉탁하고 있는데, 이들 직원들은 경찰관과 협력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우역(牛疫) : 이 병의 발생은 주로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편 만주국에서 침입하는 병독으로 인한 것이다. 만주 측에서는 끊임없이 이 병이 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병독의 확산을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다. 때문에 강 건너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위해 수시로 응급조치를 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고, 게다가 근래 국경지방의 교통과 상거래 등이 활발해지고, 특히 장기간의 결빙기에는 곳곳에서 강 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수역 침입방지는 매우 어렵다. 그 대책으로 시정(施政) 아래 국경 제일선에서 예방조치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방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1926년부터 국경에 우역 면역지대를 구성할 계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역 ‘백신’ 발견 아래 처음으로 널리 응용한 것으로, 실적 여하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해부터 새로이 8명(1932년도 1명 감소)의 도기수를 평안북도, 함경남도와 북도에 배치하여 주사 시행은 물론, 만주지방에서 밀수입하는 소의 단속, 죽은소 검안의 시행과 그 밖의 일반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결과 우역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우폐역(牛肺疫) : 이 병은 종래 조선에 발생한 적이 없었지만, 1922년 평안북도 희천군 희천면의 도살장에서 도살한 축우를 경찰관 입회하에 해체한 결과 이 병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평안남도에 전염되어 병든 소가 나왔기 때문에 1923년 2월 총독부령 제24호로 본 병에 대해 수역예방령 중에 우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통우(交通牛)의 검역, 발병지의 호구조사와 감염 우려가 있는 소의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 방역에 힘썼다. 그러나 같은 해 말 평안북도 다섯 개 군에 276마리, 평안남도 여섯 개 군에 121마리가 발생해서 이듬해 1924년 1월 평양에 폐역예방회담을 개최하고 예방 대책에 관해 의견을 모으고 실행에 노력한 덕분에 이 병의 유행도 같은 해 8월 이후 급격히 둔화되면서 1927년도에는 평안북도에 86마리, 1928년도에는 7마리, 1929년도에는 6마리가 발생했을 뿐, 그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았다.

한편 이 병은 근래 각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수역으로, 아직 근대과학의 은혜인 예방액, 혈청, 진단약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잠복기가 일정하지 않아 짧은 경우에는 1주일, 긴 경우에는 수개월 뒤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기의 증상이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발견은 어렵다. 아울러 조선에는 기술원이 적기 때문에 예방대책에 어려움이 많고, 1924년 7월 수역예방령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 종래의 평가액의 3분의 1의 지급률을 5분의 4로 증액하여 살처분을 용이하게 하고 병든 소의 은폐를 막고 방역의 철저를 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병은 종래 소의 전염성 늑막폐렴이라고 했는데, 조선가축전염병예방령 제정 당시 우폐역으로 개칭하고 동 예방령의 전염병에 넣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기종저(氣腫疽) : 기종저는 매년 거의 2천 마리 내외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이 병독은 각지에 퍼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축우는 필연적으로 폐사하기 때문에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예방 방법은 주로 예방액을 널리 적용하는 동시에 병독 잠재지역의 소독 청결법을 실시하면 대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종래 부산 수역혈청 제조소의 예방액 제조량이 부족한 탓에 기껏해야 발생 당시 부근의 작은 구역에 대한 응급조치에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29년부터 약 150만 병(제15표 참조)의 예방액을 제조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각 도의 지방에는 면역지구를 구성하고 다른 지방에도 보급을 도모한 결과, 이 병의 발생은 1929년 2,188마리였던 것이 매년 감소하여 1939년에는 약 6분의 1, 즉 395마리 내외로 격감하였다. 그렇지만 이 발생 수도 내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1938년부터 예방액 80만 병을 더 늘렸고 면역지구의 확충으로 이 병의 철저한 박멸을 도모하고 있다.(제54표 참조)

제27장 이출우(移出牛)검역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출우(移出牛)의 검역을 시행한 것은 1909년으로, 한국 정부는 수출우검역법을 발표하고 부산에 검역소를 설치했는데, 당시의 검역은 식용을 위해 내지 항만에 도착한 직후에 도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내지와 조선에서 각 9일간 계류검역, 즉 이중검역을 실시한 탓에 당사자의 불편과 불리함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915년 7월 새로이 이출우 검역규칙을 발표하고 부산과 마산항에서 이출하는 소에 한해 부산에서 20일간의 계류검역을 실시하고, 내지와의 이중검역을 폐지하였다. 이어서 1916년 10월 동 규칙을 개정하여 원산과 성진에서도 이출우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돈화항(敦賀港)으로 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래로 조선에서 내지로 이출하는 축우는 매년 증가하여 부산검역소에서 계류하는 소의 정체 숫자도 매우 많아서 점차 우사(牛舍)를 증축하였고, 이에 따른 제반 설비를 정비하는 동시에 소요인원을 증가하였다. 또한 매달 1천 마리 이상의 정체 소가 생기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목포에 이송하여 검역을 하지 않고 이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농상무성과 교섭하여 부산의 계류검역일 18일 이상을 12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1920년 3월 이런 취지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1921년 5월과 6월에 걸쳐 부산검역소에서 검역을 종료하고 이출한 축우 중에서

내지 도착 후 우역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 11월 농상무성의 교섭으로 같은 해 12월 15일부터 부산 계류검역일을 15일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그 뒤 매년 이출우가 증가하여 도저히 부산검역소만으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었고, 게다가 자유 이출의 위험을 고려하여 1925년 11월 1일부터 인천, 진남포, 원산, 성진에 검역소를 증설하고 검역기간을 12일 이상 20일 이하로 개정하였다. 또한 이 검역을 받은 축우가 아니면 이출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검역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이에 앞서 같은 해 8월 27일 원산에서 이출한 축우 120마리는 같은 달 30일 시모노세키(下關)에 입항한 직후 후쿠우라(福浦) 수류(獸類)검역소에 입소하여 소정의 검역을 마치고 나온 축우 중에서 10월 23일 이후 야마구치(山口), 후쿠오카(福岡), 히로시마(廣島) 등지에서 우폐역이 발생하였다. 때문에 농림성은 평안남도와 북도, 함경남도와 북도를 해당 병독의 잠재지역으로 간주하고 10월 4일 성령(省令) 제27호를 발포하여 위의 4도에서 오거나 경유한 축우의 이입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조선의 이출 무역에 대공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방안을 위해 농림성과 교섭을 벌이는 한편, 방역회의를 열어 선후책을 강구하고, 발생지방과 위험지역의 교통 차단, 4도 지역의 경계, 4도내 축우의 일제 검진과 그 밖의 모든 예방경계에 노력한 결과, 1926년 2월 5일에 이르러 이출 정지 구역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장진군으로 국한하였다. 평안남도, 함경남도와 북도의 소는 기차로 이송하기 전, 또는 이출우 검역소에서 우폐역 보체결합법(補體結合法)을 실시한 뒤 이상이 없는 한 이출하기로 하였고, 위의 소는 반드시 진남포, 원산, 성진의 이출우 검역소에서 각 15일간 및 내지에서 10일간 검역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4도에서 소를 이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3월 17일에 이르러 앞서 언급한 평안북도를 운산군 외 여섯 개 군으로 축소하였고, 같은 해 6월 25일에는 완전히 해금시키는 동시에 검역기간도 조선 북서 지방의 네 개 도의 소의 연장기간도 조선 남쪽 지방과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통과 검역소의 제한도 철폐되어 당분간 내지의 검역소에서 3일간 더 검역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일단은 검역을 복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1929년 7월에서 9월에 이르는 동안 아이치현(愛媛縣)을 비롯해 히로시마(廣島), 사이타마(埼玉), 도치기(栃木), 이바라기(茨城), 야마구치(山口)현 지방에서 이 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발생 70여 마리, 전염 우려가 있는 소의 도살 300여 마리에 달했다. 그 계통은 부산에서 온 조선우(牛)로 보고, 농림성은 같은 해 9월 28일 성령(省令)을 발포하여 종래의 내지 검역일수 3일을 다시 20일로 고쳤다. 따라서 이로 인해 업자들이 입게 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역일수 완화방안에 관해 농림성과 교섭과 절충을 한 결과, 같은 해 12월 24일에 이르러 조선 내의 검역기간 12일을 15일로 하고 일본의 검역기간 20일을 7일로 개정하였다. 또 조선 측에서는 기차 검역 예비 검역의 시행과 그 밖의 각종 예방시설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나 검역기간의 연장, 검역방법의 복잡함과 내지 농촌경제의 피폐 등으로 인해 1930년에는 이출 거래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되었고 1931년에는 서서히 만회하여 이출 수 43,218마리로, 1930년의 37,044마리와 비교하면 6,174마리 증가하였다.

그리고 1932년 6월 검역기간의 단축에 관해 또 다시 농림성과 교섭을 벌여 같은 해 7월부터 조선 측의 검역기간을 12일, 내지 측의 검역기간을 5일로 개정한 결과 이출 경제상 보탬이 되는 바가 적지 않았고, 또 같은 해 11월부터 식용을 위해 이출하는 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고 조선에서 5일, 내지에서 2일의 검역을 하는 것으로 단축하였다. 나아가 1936년 4월 1일부터 종래 검역 수수료로 1마리 당 2원, 식용 1원을 징수하고 있던 것을 전자는 1원, 후자는 50전으로 인하함으로써 생산자와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 했으나 일반 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이출이 많아지게 되었고, 1935년 이출한 소는 현저히 증가하여 68,421마리, 1936년에는 62,798마리에 달했다. 또 1938년 4월 검역기간의 단축에 관한 부령(府令) 제82호를 발포하여 종래의 12일 이상 20일을 7일 이상 20일로 개정하고 당분간은 9일로 정한 덕분에 결국 일본과 조선을 통한 검역기간은 3일간 단축되어 이출 소의 경제화와 검역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그 결과 1938년에는 소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74,526마리, 1939년에는 77,104마리의 소를 이출하였고, 1940년에는 80,049마리를 이출하였다. (제55표 참조)

다음으로 내지로의 행선지는 히로시마(廣島), 야마구치(山口), 가가와(香川), 후쿠이(福井), 효고(兵庫),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라(奈良) 순이고, 그 밖의 다른 부(府)·현(縣)에도 이출되고 있으며, 내지에서 조선우는 약 20여 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또한 출항치료는 부산, 인천, 진남포, 포항에서 도쿄, 가가와, 야마구치, 히로시마, 오사카 방면으로 주로 이출하고 있고, 성진에서는 후쿠이, 도쿄, 야마가타(山形), 시즈오카(靜岡) 방면으로 이출되고 있다.

1937년도에는 종래의 인천 외 네 곳의 항구의 이출우 검역소 외에 새로이 경상북도 포항에 검역소를 설치하여 그 지방의 축우 이출의 길을 열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제28장 고기와 우유의 위생

1. 도축장과 도축 단속

조선에서는 관습상 경전(慶典), 조의(弔儀)에는 수육이 필수적인 것이었고, 또 각 계급을 통틀어 수육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소와 돼지, 그 밖의 가축, 가금류의 사육이 왕성하였다. 따라서 도축 숫자도 많은데, 종래의 도축장 대부분은 개인이 경영하고 소규모였다. 또한 위생적 시설이 결여되어 있어서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도축장의 공설(公設)을 장려하고 개인이 경영하는 것은 위생조합이나 학교조합 등이 경영하도록 유도하였다. 1917년 10월 면제(面制) 시행 후에는 대부분 면이 경영하도록 하였고, 1919년에는 도축장 규칙을 발포하여 성문화된 규칙상 종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도축 상의 불편을 제거하는 동시에, 단속의 통일을 기하였다. 부(府) 소재지에 있는 공설 도축장은 구조와 설비 등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었지만, 최근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다소 협소함을 느끼고, 또 위생적 설비를 쇄신할 필요가 있어서 점차 신축을 하도록 하고 있다.

1940년 말 현재 조선의 도축장 수는 공설 1,413곳으로, 도살 수는 소 302,458마리, 돼지 334,834마리, 말 1,631마리, 기타 428마리로 합계 639,351마리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에 종사하는 책임 있는 기술원은 전임 경찰수의(獸醫) 41명, 도비로 지급하는 위생기수 및 지방위생기수 68명으로, 그 외에는 각 군에 근무하는 산업기수, 지방산업기수 및 농회기술원 641명이 수시로 도축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축은 경찰관이 본래의 업무를 하면서 이를 검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고, 매우 우려스러웠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담기술원 및 경찰수의 증원에 뜻을 두고, 아울러 경찰관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에 대한 기술적 지식의 함양에 노력하여 결함을 보완하고 있다. (제56표 참조)

2. 우유 및 산양유

원래 조선우(牛)는 평소 농경과 운반 목적으로 이용되고 최후에는 도살하여 식용으로 하는 이를테면 일과 식용을 겸한 소였고, 젖소로서는 우유의 양이 적고 사육 가치가 떨어진다. 또한 조선인으로 우유를 마시는 자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젖소의 수요는 단지 내지인 병약자 혹은 유아들의 영양음료로 사용될 뿐이었다. 그 뒤 내지에서 우수한 '홀스타인'종 젖소를 들여와 서서히 조선인들이 우유에 대한 이용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일반인 수요가 급증하여 젖소 수와 착유량도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우유 영업을 하는 자들 중에 경영 수준이 낮고, 혹은 보건위생상 결함이 있는 자가 상당히 많아서 위생 단속을 할 필요를 통감하게 되는 상태에 있었다. 때문에 본 총독부는 고민한 끝에 매년 젖소에 대해 임상진단 및 '투베르콜린'의 응용에 따른 결핵병 검사의 시행과 법규 통첩 등에 따른 이 업종의 발달 조성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결핵 발병률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경향에 있어서 한층 더 예방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생기면서 1939년 7월 27일 제령(制令) 제9호로 조선우결핵병예방령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나아가 1940년에 발포할 예정인 조선우유영업단속규칙과 더불어 점차 조선의 우유와 고기의 위생기구의 완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1940년 말 현재 우유 영업자는 131명, 젖소 수는 2,207마리, 1년간 착취량은 3,815,576리터이다.

우유에 대한 수요의 급증에 따라 산양 젖에 대한 이용가치도 점차 올라가고 있다. 1940년 영업자는 88명, 우유를 위한 산양 수는 1,709마리, 착취량은 246,416리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산양 젖에 대해서도 우유와 동일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따라 엄중한 단속을 하고 있다. (제56표 참조)

제29장 경찰공제조합

종래 경찰관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순사 간수료(看守料) 치료 급조료(給助料) 및 조제료(弔祭料) 급여령, 또는 국경경비 직원 및 유족 일시금 급여에 관한 칙령, 은급법 등에 의해 국가로부터 상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직무와 상관없이, 또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국가시설이 없고, 단지 경찰협회의 구제부에서 약간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동시에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경찰관은 직무상 언제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디고 결핍을 인내하면서 각종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언제 어떤 재난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과감히 직무 집행에 전념하고 치안의 중책을 맡아야 한다. 때문에 언제나 뒷일을 걱정하는 일 없이 그 직무에 충실히 봉공(奉公)의 적성(赤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러한 불의의 재앙을 대비하는 생활상의 여유가 없는 하급 경찰직원에 대해서는 국가적 시설로 이를 구제하는 일이 시급하다. 따라서 1929년 10월 31일 칙령 제317호로 조선경찰공제조합령을 발포하고, 이어서

11월 29일 부령 제102호로 규칙 및 훈령, 제58호로 단속규정을 발포하고 12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그 이후 11년간 조합의 기초는 점차 튼튼해지고 있었지만, 1941년 4월 1일 정부직원공제조합제도의 조선 시행에 따라 본 조합의 내용도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개정 전에는 본 조합은 조선총독부 내의 경부보, 순사 및 판임관(判任官)의 대우를 받는 소방 수뿐이었지만, 현재는 이들 조합 외에 새로이 조선의 경찰관 강습소, 경찰서 및 소방서에 소속된 판임관 이하 직원 전원을 가입시키게 되었고, 종전의 조합원을 갑종, 그 밖의 조합원 중 판임관 및 동 대우 자를 을종, 촉탁, 고용원, 용역원을 병종으로 하는 3종의 조합원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총독의 감독 하에 경무국장이 업무를 관리하고 도지사 및 경차관 강습소장 등이 업무를 분담하고 각 부하직원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조합의 구제금 급여 재원은 조합원이 매달 월급을 수령할 때 내는 적립금, 국고 및 도비(도비를 지급하는 직원인 조합원에 대한 것)에서 급여금 및 여기서 생기는 이자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소정의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합원 적립금 및 국고(도비도 마찬가지)로부터의 급여금 비율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합원 종류	조합원 적립금	국고(도비) 급여금
갑종 조합원	1000분의 26.8	1000분의 26.8
을종 조합원	1000분의 30.0	1000분의 12.0
병종 조합원	1000분의 16.0	1000분의 16.0

비고〉 모두 봉급 1,000원에 대한 비율이다.

그 밖에 조합원 내에 급약부(給藥部)를 설치해 벽지의 경찰관 주재소, 출장소에 구급약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1935년 금융부를 두고 조합의 일반회계에서 대부자금을 융통하여 같은 해 4월 1일부터 대부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그 종류와 범위, 사업성적은 다음과 같다.

1. 급여금(제60표 참조)

(1) 의료급여금

의료급여금은 갑종, 을종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이 의료를 받을 경우, 거기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의 경우에는 80%, 가족의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는 데 필요한 여비에 대해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제60표 참조)

(2) 사망급여금

사망급여금은 갑종, 을종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월급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조합원의 가족 즉 조합원의 배우자 및 조합원과 동일 호적 내에 있고 조합원에게 현재 부양하는 조부모, 부모 또는 그 자식이 사망한 경우에는 월급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한다.(제60표 참조)

(3) 폐질(廢疾)급여금

폐질급여금은 갑종, 을종 조합원이 폐질에 걸려서 퇴직한 경우에 월급 6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중병에 걸려 치유 전망이 없는 자, 눈 한쪽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한쪽 사지 이상을 잃고, 또는 이에 준하는 폐질에 걸려 평생 직무에 견딜 수 없는 자와 병독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결핵이나 우후결핵, 또는 나병에 걸린 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다. (제60표 참조)

(4) 이재(罹災)급여금

이재급여금은 갑종, 을종 조합원이 수해·해일·화재·산사태·지면침식·풍해, 또는 화약 등의 위험 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비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월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를 지급하는 것이다.(제60표 참조)

(5) 탈퇴급여금

탈퇴급여금은 갑종, 을종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했을 때, 조합원이었던 기간 중에 적립한 금 총액에 대해 계속 조합원이었던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합(步合)에 의한 금액을 지급 받는다.(제60표 참조)

- ① 계속 조합원이었던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에는 갑종 조합원에게는 10분의 4.5, 을종 조합원에게는 10분의 4.
- ② 계속 조합원이었던 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갑종, 을종 조합원 모두 10분의 6.
- ③ 계속 조합원이었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갑종 조합원에게는 10분의 7.5, 을종 조합원에게는 10년 미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분의 6.

(6) 요양비

요양비는 병종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이 의료를 받았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금과 동일한 것을 지급한다.

(7) 상병(傷病)수당금

상병수당금은 병종 조합원이 요양을 위해 계속 근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근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3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뒤 근무에 종사할 수 없었던 기간 6개월에 달할 때까지, 1일 급여액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입원한 조합원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8) 매장료(埋葬料)

매장료는 병종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조합과 동일한 집에 살고 있는 자 등, 매장을 담당하는 자에게 급료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단 30원에 달하지 않는 자는 30원으로 한다)을 지급한다.

(9) 분만비

분만비는 6개월 이상 계속 조합원이었던 병종 조합원이 분만한 경우에 20원을 지급한다.

(10) 출산수당금

출산수당금은 병종 조합원이 분만했을 때 분만하기 전 28일, 분만한 날부터 12일 이내에 근무에 종사

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급료 1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지급한다.

2. 사업 성적

1) 조합원 이동상황

이번 년도 말의 조합원 총수는 20,948명으로 전년도 현재 인원 20,306명에 비하면 642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올해 말 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2,695명이고 탈퇴한 인원은 2,053명이다. 이를 관직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경부보

이번 년도 말의 현재 인원은 877명으로 전년도 이월인원에 비하면 38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가입한 자 3명, 순사에서 승진한 자 220명, 경부 임관, 퇴직 등의 사유로 탈퇴한 자는 185명이다.

(2) 순사

이번 년도 말 현재 인원은 19,714명으로 전년도 이월인원 19,125명에 비하면 589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새로 가입한 자 2,602명, 탈퇴한 자 1,794명, 소방수에서 순사로 이직한 자, 경부보로 승진한 자 221명이다.

(3) 판임관의 대우를 받는 소방수

이번 년도 말 현재 인원 357명으로 전년도 이월인원 342명에 비하면 15명이 증가하였고, 새로 가입한 자 90명, 탈퇴한 자 74명이다. (제58표 참조)

2) 수입 및 지출

이번 년도 조합의 수입 총액은 497,351원 60전으로,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1,820,173원 35전을 더하면 합계 3,317,524원 99전이다. 그리고 이번 년도의 지출 총액은 구제금 340,568원 86전, 잡비 8,227원 72전, 특별회계 급약부 사업자금 4만 원, 합계 388,796원 58전으로, 이를 공제한 잔액 1,928,728원 41전을 1941년도로 이월하게 되었다. (제59표 참조)

3. 급약부(給藥部)

1933년 6월 조선경찰공제조합 규칙 제28조에 기초하여 조선에서 아직 의료기관 분포의 차이가 심해서 조합원에 대한 의료공제의 불균형적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에 급약부를 설치해 조합 자금에서 급약부 특별회계 급약 시설비로로 1933년 7월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1934년 2월 의료기관이 없는 벽지의 경찰관 주재소와 출장소 2,046곳에 대해 구급함을 배급하고, 1934년도에는 신설 주재소 16곳에 구급함 1상자를 배급하였다. 또 도 경찰부, 경찰서에 대해서는 감독 교양 자료소서 구급함 1상을 보내 합계 264상을 배포하였다. 1935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의료기관이 있는 주재소, 출장소는 물론이고 각 도의 경찰부, 경찰서에 대해 구급함 1상을 배급하고 1936년도에는 신설 주재소, 출장소 19곳에 각 1상을, 소설 및 수해로 인해 유실한 2곳에 각 1상을, 합계 21상을 배급하였고, 주재소의

폐지에 따른 반납 2상자가 있다. 그리고 1937년도에는 각 도의 순사 교습소에 13상자, 신설 주재소 6상자 유실에 대한 보급 3상자, 합계 22상자를 배급하였고, 주재소의 폐지 또는 유실로 인한 8상자가 줄었다. 1939년도에는 경찰 강습소 및 신설 주재소에 6상자의 유실에 대한 보급 1상자, 계 7상자를 배급하고, 주재소의 폐지에 따른 반납 3상자가 줄었다. 1940년도에는 신설 경찰서와 주재소에 6상자를 배급하고, 올해에는 신설 주재소에 8상자를 배급함으로써 이번 년도 말 현재 구급함 수는 3,127상자로, 이를 통해 약품기구 보급을 하였다. (제61표 참조)

4. 금융부

1) 시설의 개요

조선경찰공제조합 금융부에 조합규칙 제28조에 의거해 조합원이 자신 또는 가족의 질병, 사망, 재난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생활상의 궁핍을 당한 경우에 저리(低利)대부를 하여 이를 구제할 목적으로 대부자금을 조합자금 중에서 가져와 1935년 4월 1일부터 대부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대부금액은 해당 조합원 월급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급의 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부를 한다. 대부금의 이자는 조합원일 경우에는 대부금 100원에 대해 하루 1전 5리, 비조합원 직원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루 1전 5리로 하고, 대부금의 변제는 월부변제 방법으로 매달 월급을 수령할 때 당일까지의 이자와 함께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2) 비□(費□)의 개요

이번 년도의 대부금액은 278,124원, 그 밖의 건수 2,164건으로 이번 년도 말 현재 대부금액은 216,343원 92전, 대부 인원은 1,570명이다.

수입 총액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수입 12,895원 32전, 대체예금 이자 371원 20전, 계 13,266원 52전이다. 지출 총액은 조합자금의 이자 10,234원 52전, 대부금 송료 450원 50전, 사무비 1,170원, 잡비 1,397원, 계 13,352원 2전으로, 차액 14원 50전의 이익을 얻었다. (제62표 참조)

3) 결핵 요양시설

조합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1937년 5월 조합원의 결핵요양규정을 두고 결핵(폐 침윤, 폐렴 카타르를 포함) 및 후두결핵 환자 요양을 위해 각 도의 위생기술관, 도립의원 의관에 대해 조합의(醫), 또 요양시설이 있는 병원 또는 의원을 조합요양소로 촉탁하고 매년 1회 조합원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촉탁 요양소에 입원시키거나, 혹은 본적지나 그 외의 적당한 지역으로 옮겨 요양을 하도록 명하여 조기에, 또 근본적으로 요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별표와 같다. (제63표, 제64표 참조)

제30장 경찰협회 및 지부 후원회

경찰협회는 조선 전체의 경찰관 및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지력을 함양하고 무도를 장려하는 동시에 회원들 상호간의 공제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경찰 지식을 보급하여 경찰의 향상 쇄신에 보탬이 될 목적으로 1910년 이래 매달 간행해온 잡지 『경무汇报(警務彙報)』의 사업으로 적립한 자금 6,000원을 바탕으로 1921년 6월 15일 재단법인으로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것이다. 본부를 경성에, 지부를 각 도에 두고 정무총감을 총재로 추대하고 경무국장을 회장으로, 삿 도지사를 지부장으로 촉탁하였다. 본부에는 간사, 평의원, 위원을 두고 회무를 처리하고, 지부에는 부지부장, 간사, 평의원을, 각 경찰서에 위원을 배치하여 각자 맡은 사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도의 지부에는 1932년 이래 본부의 준칙에 따라 경찰협회의 각 도지부 후원회라는 재단법인을 창립하고 지방의 특수 사정을 바탕으로 각종 시설 및 사업을 하는 동시에, 지부를 후원,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금 : 본 회의 기본금은 앞서 언급한 6,000원을 기초로 하고 있고, 여기에 회원들의 거출금 74,100여 원 및 본 회의 사업을 찬조하는 독지가들로부터 지원받은 돈과 매년 세계(歲計)잉여금을 적립한 것이다. 1940년 말 현재 398,700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비 : 경비는 매달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자산에서 생기는 이자 및 각종 사업을 경영해서 생기는 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하고, 매년 전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작성하여 평의원회의 결의로 실행하고 있다.

사업 : 본 회의 창립 이래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본회 창립 이래 공제사업으로 종전 회원 및 그 동거가족의 사망, 질병, 미재 등의 경우, 구제금을 급여하고 있었지만 1939년 10월 칙령으로 조선경찰공제조합령이 발포되어 같은 해 12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이후 이 사업은 폐지되었다.

(1) 학술 무도의 장려

본부 및 지부에서 적당한 시기에 강습회·강연회·사격회 등을 실시하고, 특히 무도의 장려를 위해 서는 본부 촉탁으로서 고단자 사범 3명을 두고 일상적으로 회원들의 무도 연마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는 연중행사의 하나이다. 전조선무도대회는 경성에서 개최되고 각 도의 무도대회도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 조선의 사격대회는 1928년, 1933년에 두 번 개최된 이후 중단되었지만, 각 도에서는 지부의 사업으로서 매년 봄에 거행하고 있다.

(2) 잡지·도서의 간행

① 잡지

매달 1회 발행하는 잡지로는 『경무汇报(警務彙報)』와 『자동차운전의 벗(自動車運轉の友)』이 있다. 『경무汇报』는 오로지 회원의 품성 도야, 정신 수양, 집무의 기본이 되는 기사 등을 게재하는 이른바 경찰의 기관지로, 매달 약 22,000부를 발행한다. 『자동차운전의 벗』은 해당 업자들의 교양을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희망자들에게 널리 배포하고 있다. 발행부수는 매달 12,000부에 달한다. 그 이외에 매년

4회로 잡지 『도시와 건축』을 건축행정 관련의 지식 향상 및 법령의 요지를 철저히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2) 도서

경찰 직원의 일상 업무에 빼놓을 수 없는 도서류 중에서 1940년도에 발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찰법령취(警察法令聚)』(1920년 이후 계속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중·하 및 『경찰법령취병사대본(警察法令聚兵事臺本)』 상·중 및 『경찰법령취병사추록(警察法令聚兵事追錄)』

『경제경찰관계법령취대본(經濟警察關係法令聚臺本)』, 『경제경찰관계법령취추록(經濟警察關係法令聚追錄)』

『사법경찰법규집(司法警察法規集)』

『경찰관필휴조선어(警察官必携朝鮮語)』

『총포화약관계법규집(銃砲火藥關係法規集)』

『자동차관계법규집(自動車關係法規集)』

『자동차운전자시험 문제집(自動車運轉者試驗問題集)』

『경찰직원록(警察職員錄)』

(3) 공적·선행 및 장기 근속자의 표창

경찰 업무에 있어서 특히 공로가 현저하고 일반의 귀감이 되고 공로기장을 수여받은 자 및 회원들 중 일반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와 장기 근속자에게는 매년 천장절(天長節)⁷⁾에 표창장 및 상금을 수여하여 표창하고 있고, 1940년도의 포창 인원을 다음과 같다.

공적자·선행자 3명

장기 근속자 785명

(4) 순직 경찰 직원의 제사 및 조위(弔慰)

① 일한병합 아래 조선에서 순직한 경찰 직원의 영위(靈位)는 경성의 본부에 안치하고, 매년 1회 초혼제(招魂祭)를 거행하는 당일에는 유족 및 총독과 그 밖의 다수 관민들이 참렬하여 성대한 제전을 거행하고, 위령 및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1940년도에는 5월 19일 총독부 내의 옛 경복궁 근정전에서 제20회 순직 경찰 직원 306명(그 중에 같은 해 합사자 7명), 순직 경방 직원 42명(그 중에 같은 해 합사자 2명)의 초혼제 및 지나사변 전몰 경찰 직원 49명과 경방 직원 38명의 합동 위령제를 엄숙하게 집행하였다.

② 지나사변으로 인해 출정하여 순직한 회원의 유족들에게는 각각 조제금(弔祭金)을 증정하였고,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증정하였다.

(5) 장학 보조

회원의 근무지에 소학교(현재의 □□학교)가 설치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면서 통학시키고 있는 자, 또 4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통학시키고 있는 자, 2명 이상 별거해서 중등학교에 통학시키고

7) 4대 축일 가운데 하나로, 천황의 생일을 기념한 날이다.

있는 자에게는 장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1940년의 지급 총액은 9,752원 정도이다.

(6) 공동구매

① 피복류 조제(調製) : 배급복제에 따른 제복과 그 밖의 부속품 일체를 제조 배급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제복, 제모 등은 1923년 이후 공장을 특별히 만들어 회원들의 수요에 맞추어 편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사복(일본복 포함)류의 조제 및 월부(月賦) 중개 등도 하고 있다.

② 그 밖의 경찰 및 경찰 직원의 생활필수품, 가령 자전거·시계·모포·셔츠·양말·구두·권각반(卷脚綁)·포승줄과 그 밖의 공동구매 알선을 수시로 강화하고 있으며, 회원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1940년도 본부의 거래 금액은 114,000원 정도이다.

(7) 회원 및 가족의 위안은 본부와 각 도의 지부마다 적당한 시기에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 요양시설로서 평안북도 삽주, 황해도 삼천, 충청남도 온양 3곳에는 경찰 직원의 온천 요양소가 있고, 도에 따라서는 과수·화초류의 재배 등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조림 등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지부도 있다.

(8) 경찰 참고관(參考館)

황태자 전하의 탄생 기념으로 1936년 경성 광화문 거리에 설치, 1933년 6월 낙성과 동시에 일반에 공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참고관은 경찰 제반의 참고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 직원의 지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일반 민중들에게도 경찰 이해의 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1940년도 총 관람자는 약 54,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참고관 내에는 본 협회 본부의 사무실, 순직자 봉안소, 감당 및 집회 겸용의 일본식 방 등의 설비가 있다.

(9) 경찰 안내소

일반 민중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중들의 경찰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경찰과 민중의 일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1938년 7월 창설한 것으로, 현재 미쓰코시(三越) 경성지점과 경성 종로 거리의 화신백화점에 직원 각 2명을 배치하여 오로지 경찰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다.

(10) 기타, 경찰 직원의 주택 및 경찰관 주재소 등 가옥의 건설과 관리, 생명보험료 취급, 공동구매 등 각 도지부와 그 후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후략)

〈출전 :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朝鮮警察概要』, 1941년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第64卷, 379~602쪽〉

2. 사상범 보호관찰제도

1) 법령

(1)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제령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칙재를 얻어 이에 이를 공포한다.

1936년 12월 12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제령 16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사상범의 보호관찰에 관해서는 사상범보호관찰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을 제외하는 것 외 동법 중 보호관찰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심사회, 보호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 보호사, 비송사건수속법이라는 것은 조선민사령에 의해 정해진 비송사건수속법을 지칭함.

보호관찰 실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36년 12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참조)

1936년 법률 제29호

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 치안유지법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 집행유예 언도가 있을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인을 보호관찰에 맡길 수 있다. 본인이 형 집행을 끝내고 또는 가출옥을 허용 받은 경우 또한 동일하다.

제2조 보호관찰에서는 본인을 보호하고 더욱이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보호관찰은 본인을 보호관찰소의 보호사의 관찰에 맡기거나 또는 보호자에게 인도하거나 혹은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한다.

제4조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거주, 교우 또는 통신의 제한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보호관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제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할 때는 본인에 대해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 전 임시로 제3조의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제7조 제3조 또는 제4조의 처분은 그 집행 중 언제라도 이를 취소하고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전 조의 처분에 대해서도 또한 동일하다.

제8조 보호관찰소는 필요할 때는 보호사로 하여금 본인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관찰소 및 보호사는 그 직무를 행하는 것에 관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촉탁을 행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본인을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또는 적당한 자에게 위탁했을 시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해 이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부할 수 있다.

제11조 전조의 비용은 보호관찰소의 명령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을 부양할 의무 있는 자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할 수 있음. 이 명령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수속법 제2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 항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통상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음. 이 출소는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12조 소년으로서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 본 법은 육군 형법 제8조, 제9조 및 해군 형법 제8조, 제9조에 내세운 자에게는 이를 적용한다.

제14조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회의 조직 및 권한 또한 보호관찰의 실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부칙

본 법 시행의 기일은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본 법은 본 법 시행 전에 제1조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이를 적용한다.

〈출전 :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制令 第16號)」,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12월 12일〉

(2)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1936)

'집'은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를 재가하고 또한 이를 공포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1936년 12월 11일

내각총리대신 히로타 고키(広田秀次毅)

척무(拓務)대신 나가타 히데지로(永田秀次郎)

칙령 제432호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관제

제1조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는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고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조 보호관찰소에 일반적으로 다음 직원을 둔다.

소장 7명

보도관 전임 3명 주임(奏任)

보호사 전임 11명 판임(判任) (중 3명을 주임으로 할 수 있다)

서기

전임 15명 판임

통역생

제3조 소장은 보도관으로 이에 충족되고 조선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호관찰소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부서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소장이 사고 있을 시에는 상석의 보도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 보도관은 소장인 자를 제외한 그 외는 소장의 명을 받아 보호관찰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보호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조사 및 관찰 사무를 담당한다.

보호사의 직무는 사상범 보호관찰에 경험을 갖는 자 그 밖에 적당한 자에 대해 조선총독 이를 촉탁할 수 있다.

보호사의 직무를 촉탁 받은 자는 주임관의 대우로 행할 수 있다.

제6조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7조 통역생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번역 및 통역에 종사한다.

제8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위치 및 관찰 구역은 조선총독부 이를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36년 12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保護觀察所官制(勅令 第432號)」,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12월 15일〉

(3) 조선총독부보호관찰심사회관제(1936)

'집'은 조선총독부보호관찰심사회관제를 재가하고 여기에 이를 공포한다.

어명어새

1936년 12월 11일

내각총리대신 히로타 고키(広田弘毅)

척무(拓務)⁸⁾대신 나가타 히데지로(永田秀次郎)

칙령 제434호

조선총독부보호관찰심사회관제

제1조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심사회는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고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청구에 따라 조선사상법보호관찰령에서 따른 것을 정한 사상법보호관찰법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게 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 심사회는 각 보호관찰소에 이를 둔다.

제3조 심사회는 회장 1명 및 위원 6명으로 이를 조직한다.

심사회에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제4조 회장, 위원 및 예비위원은 조선총독부 사법부 내 고등관 및 학식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조선총독이 이를 명한다.

제5조 회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회장은 회무를 총리한다.

회장 사고 있을 시는 그 지명하는 위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위원 중 사고 있을 시 또는 결원 있을 시는 회장은 예비위원 중에서 대리를 명한다.

제8조 심사회는 회장 및 위원을 합쳐서 5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심사회 의사(議事)는 과반수에 따라 이를 결정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심사회에 서기를 둠. 조선총독부 이를 명한다.

서기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0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그 밖의 심사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 이를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36년 12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 12월 12일 관보)

〈출전 : 「朝鮮總督府保護觀察審查會官制(勅令 第434號)」,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12월 15일〉

8) 식민지 및 이민관계 사무를 관장한 구 일본내각의 한 성(省)으로서, 1942년 폐지.

(4)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시행규칙(1936)

부령

조선총독부령 제128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36년 12월 18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따른 보호관찰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상 전향을 촉진하고 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그 사상의 지도 및 생활 확립에 대해 적당한 처치를 행해야 한다.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온건타당을 취지로 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음. 단 그 취직 또는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제2조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서 정한 사상범보호관찰법(이하 사상범보호관찰법이라 칭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을 행해야 할 보호단체는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한다.

제2장 보호관찰에 대한 수속

제3조 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 관청은 그 사유를 본인의 현재지 또는 귀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해야 한다.

전 항의 통지에는 보호관찰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고 또한 범죄 사실의 요지 그 밖에 참고로 해야 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조 보호관찰소는 앞 조의 통지를 받았을 시, 그 밖에 보호관찰에 따라야 할 것을 인지했을 시는 신속하게 본인의 경력, 경우, 성행(性行), 심신 상황, 사상의 추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제5조 보호관찰소는 보호사에게 명해서 필요한 조사를 행하게 해야 한다.

제6조 보호관찰소는 사실의 취조를 보호자에게 명하고 또는 보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보호단체는 참고로 해야 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보호관찰소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공술 혹은 감정 또는 통역 혹은 번역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참고인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호관찰소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에 회부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될 시는 보호관찰심사회의 심의를 구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전항의 심의를 구해야 할 때는 그 취지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보호관찰심사회에 보호사 그 밖에 적당한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모을 수 있다.

제10조 보호관찰심사회의 심의는 이를 공행(公行) 할 수 없음. 단, 본인, 보호자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재석(在席)을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관찰심사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에 회부해야 할 지의 여부를 결의한다.

전 항의 결의에는 이유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에 회부해야 할 취지 결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사상법보호관찰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행해야 한다.

제13조 보호관찰소는 거주 제한 처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그 가족의 거주 및 생계 상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

제14조 다음 경우에는 보호관찰소는 그 취지를 본인 및 관계자 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1.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심사회의 심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때.
2. 보호관찰심사회가 보호관찰에 회부 하지 않는 취지 결의를 행했을 때.
3. 사상법보호관찰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행했을 때.
4. 사상법보호관찰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행했을 때.

제15조 전조의 경우 및 사상법보호관찰법 제8조의 규정에 처분을 행할 시는 보호관찰소는 그의 뜻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보호관찰을 계속할 경우에 새롭게 보호관찰에 회부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호관찰 처분의 집행

제17조 보호관찰소가 사상법보호관찰법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행할 시는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그 집행을 행해야 한다.

제18조 본인에 대해서는 처분의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장래의 경계를 위해 적당한 훈유(訓諭)를 행할 것.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보호자 및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

제19조 보호사의 관찰로 회부하는 처분을 행할 시는 보호사에 대해 특히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본인의 감독 지도를 행하게 해야 한다.

제20조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처분을 행할 시는 보호자에 대해 본인의 감독 지도에 관해 참고로 할 만한 사항을 지시하고 본인을 인도해야 한다.

제21조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그 밖에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행할 시는 위탁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해 본인의 처우에 내용 및 그 집행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하고 감독 지도 임무를 위촉해야 한다.

제22조 보호관찰소 처분에 대해서는 조서를 만들어 처분의 내용 및 그 집행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23조 보호관찰소가 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을 행할 시는 보호자 혹은 수탁자에 대해 성적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보호사로 하여금 성적을 시찰하여 적당한 지시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보호사는 보호관찰소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그 시찰한 결과 보고해야 한다.

1. 가정관계
2. 직업의 유무 및 생계상태
3. 건강상태
4. 교우관계, 통신상황 그 밖의 동정
5. 조건 준수 상황
6. 사상의 추이
7. 보호자 또는 수탁자의 감독 지도 상황
8. 그 밖에 참고로 해야 할 사항

제25조 보호사는 사상범보호관찰법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취소하거나 혹은 변경하고, 또는 보호관찰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보호관찰소에 보고해야 한다.

제26조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에 대한 보호관찰처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본장에서 정한 것 외에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본령은 1936년 12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본령 시행 전에 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관계 관청이 필요 있다고 사료하는 자에 대해 이를 행하는 것으로 충분한다.

〈출전 :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施行規則(府令第128號)」,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12월 18일〉

(5)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1936)

조선총독부령 제129호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별표와 같이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36년 12월 2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1936년 12월 18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별표〉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표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성보호관찰소	경성(京城)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舒川)군을 제외한다], 강원도 [통천(通川)군, 강릉(江陵)군, 양양(襄陽)군, 고성(高城)군, 울진(蔚珍)군 및 삼척(三陟)군을 제외한다]
함흥보호관찰소	함흥(咸興)	강원도의 내통천(內通川)군, 강릉군, 양양군, 고성군, 울진군 및 삼척군, 함경남도
청진보호관찰소	청진(淸津)	함경북도
평양보호관찰소	평양(平壤)	황해도, 평안남도
신의주보호관찰소	신의주(新義州)	평안북도
대구보호관찰소	대구(大邱)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보호관찰소	광주(光州)	충청남도 중 서천군, 전라북도, 전라남도

〈출전 : 「朝鮮總督府保護觀察所ノ名稱位置及管轄區域別表通知(朝鮮總督府令 第129號)」,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12월 18일〉

(6) 사상보호단체 지정(1937 · 1941)

[6-1]

고시

조선총독부 고시 제34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보호단체를 지정한다.

1937년 1월 25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재단법인 경성구호회(京城救護會)
 재단법인 개성대성회(開城大成會)
 재단법인 춘천동포회(春川同胞會)
 재단법인 공주관업원(公州慣業會)
 재단법인 대전자강회(大田自彊會)
 재단법인 충북유린회(忠北有隣會)
 재단법인 함흥박인회(咸興博仁會)
 재단법인 청진제성회(淸津濟成會)
 재단법인 평양유항회(平壤有恒會)

재단법인 해주제미회(海州濟美會)
재단법인 신의주자제회(新義州自制會)
재단법인 대구상성회(大邱常成會)
재단법인 부산포성회(釜山輔成會)
재단법인 광주유린회(光州有隣會)
재단법인 목포성미회(木浦成美會)
재단법인 전주유종회(全州有終會)
재단법인 군산성지회(群山誠之會)

〈출전 : 「保護團體對指定(朝鮮總督府告示 第34號)」,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1월 25일〉

[6-2]

조선총독부 고시 제1142호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보호단체를 지정한다.

1941년 7월 30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재단법인 경성대화숙기숙사(京城大和塾)
재단법인 함흥대화숙기숙사(咸興大和塾)
재단법인 청진대화숙기숙사(淸津大和塾)
재단법인 평양대화숙기숙사(平壤大和塾)
재단법인 신의주대화숙기숙사(新義州大和塾)
재단법인 대구대화숙기숙사(大邱大和塾)
재단법인 광주대화숙기숙사(光州大和塾)

〈출전 : 「保護團體對指定(朝鮮總督府告示 第1142號)」, 『朝鮮總督府官報』, 1936년 7월 30일〉

2) 해설 및 활동

(1) 이종모(李鍾模), 보호관찰령의 적용 범위 –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는가

1. 사상운동의 과거와 현재

제69의회에서 통과된 「사상범보호관찰법(思想犯保護觀察法)」은 일본 ‘내지(内地)¹⁹’에서는 1936년 11월

21일부터 실시되었고 조선에서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思想犯保護觀察令)」으로 역시 동년 12월 21일부터 일본보다 한 달 늦게 실시되었다. 회고하면 공산주의운동은 일본에서는 일찍이 1923년경에 발각된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일당의 공산당조직사건이 있은 뒤 1928년 3월 15일에 후쿠모토 카즈오(福本和夫), 사노 마나부(佐野學)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공산당이 대량으로 또한 전일본적으로 검거되었음에 따라 그 세력이 비밀리에서도 광범(廣汎)한 범위로 퍼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검찰당국은 그 뒤를 이어 후계(後繼) 잔당을 연속적 검거하여 이제는 일본 안에는 공산당의 근거는 남김없이 다 소탕해버린 양으로 당국 측에서도 말하였고 또 일반 민중도 공산주의운동은 거의 근절된 것 같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뒤 불과 수년에 소위 갱생일본공산당사건(更生日本共產黨事件)과 린치공산당사건이 그 철저한 탄압 가운데서 또 다시 발생하게 되어 다시금 검찰당국자의 신경을 한 층 더 날카롭게 되는 동시에 무시무시한 검거의 선풍(旋風)은 동에서 서로 혹은 남에서 북으로 닥치는 곳마다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만주사변이 한번 일어난 뒤 일본의 정세는 내적 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군국주의와 애국사상의 조류가 갑자기 팽배해졌다. 이에 따라서 재옥(在獄) 사상범인에 대한 전향의 장려와 기타 그 운동의 침체 등으로 근년에 이르러서는 왕년에 보던 그런 자취는 전연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사법성(司法省)이 조사한 숫자에 의하면 1928년 이래 1935년까지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의 수효는 6만 여명으로 그 가운데서 기소유예의 처분 혹은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는 형기만료 및 가출옥으로 방석(放釋)된 사람도 1만 여명 이상에 달하였다. 이 놀라운 숫자를 보아서 그 전성시대의 공산주의운동이 일본 천지를 얼마나 진감(震撼)¹⁰⁾도 하였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이제 조선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1925년에는 고려공산당사건(高麗共產黨事件)이 탄로되어 대량의 노농(勞農) 운동자가 검거되었고, 또 그 당시 검거된 뒤를 이어 다시 종합적으로 조직되었던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도 1928년에 역시 총검거되어 다수의 공산주의운동자가 투옥되었다. 그 이후에는 연차(連次)로 적색노동조합조직 준비 중에 검거된 것이 누차 있었으나 모두 부분적 혹은 지방적 사건에 그치고 전역적으로 통일조직된 '당'으로서 검거된 것은 없었다. 말하자면 조선 안에는 저 안광천(安光泉), 김준연(金俊淵) 등으로써 조직되었던 조선공산당이 검거된 뒤로는 공산당의 존재는 아주 몰영(沒影)되어 버렸다. 그리고 또한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의 대다수는 직장에 취직하여 있거나 혹은 □화하여 별다르게 검찰 당국을 수고롭게 하는 자 희소하다. 조선의 현세는 일본에 비하여 훨씬 경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 까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에 있어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의 수효는 1928년 이래 1935년까지에 1만 6천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혹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는 가출옥된 사람의 수효는 약 6천4백 명에 달하였다. 일본에서 1만 명, 조선에서 6천4백 명이나 되는 이 다수의 감옥 거쳐 나온 사상범이 있다는 것이 당국자로 하여금 두통거리가 되는 동시에 이들이 다시 그 운동에 투신하지 못하도록 방비코자 하는 목적으로 사상범보호관찰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낸 것인 듯 하다.

9) 식민지 본국인 일본을 내지(內地)라고 함. 이하 일본으로 고침.

10) 울리어 흔들림. 또는 울리어 흔듦.

2. 보호관찰법 실시의 목적

이제 사법성국자(司法省局者)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실시에 대한 석명(釋明)을 들어 보면 이러하다. “공산주의운동의 두색절멸(杜塞絕滅)¹¹⁾은 국운 진전의 요중(要仲)이다. 일본의 공산주의운동은 준엄한 검거의 여행(勵行)¹²⁾과 만주사변 아래의 국민정신의 양양 기타 내부적 외부적 제(諸) 원인으로 말미암아 2, 3년래 몰락 침쇠(沈衰)의 길을 밟고 있으나 현재의 제반 정세를 살펴볼 때는 그 운동의 장래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하여 반드시 낙관을 허할 수 없다.

1928년 이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자의 수는 실로 6만인을 넘어서 그 중에서 기소유예의 처분과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혹은 가출옥된자의 수도 1만인 이상에 달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현재의 심경은 극히 구구(區區)하며 완전히 전향한 자도 있으나 의연(毅然)¹³⁾히 불령사상을 포회(抱懷)한 자, 또는 그 태도가 극히 애매하여 전향 의사의 존부가 판명치 않는 자도 있다. 비전향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그냥 방치하여서는 그 환경 또는 사회정세에 좌우되어서 재범에 빠질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사상범인은 사회정세에 좌우되는 일이 심한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내외의 모든 정세와 종합하여 고찰할 때는 지금에 있어서 사상범인에 대한 만전의 방책을 수립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불령운동을 근절시키는 데에 깍긴(突緊)¹⁴⁾한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언하면 비전향자 및 준전향자 대해서는 사상 전향을 촉진하고 전향자에 대해서는 사상 전향의 확보할 방도를 강구하여 장래의 사회정세의 변화 여하에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적법하고 질서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할 필요를 통감한다. 그래서 이에 새로 보호관찰제도를 채용하여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보호관찰심사회를 두어서 사상범인이 다시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여 이들을 보호하기로 된 것이다.”

이상 사법 당국자의 언명한 바에 의하면 사상범을 보호 관찰하는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본인을 보호하여 다시 그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자는 것이다. (제2조) 환언하면 다만 소극적으로 본인의 사상행동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누차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이다.

3. 관찰법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나?

보호관찰법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게만 한한다. 치안유지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거나 혹은 재판소로부터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았거나 또는 가출옥되었거나 만기출옥된 자에게 적용하게 된다. 가령 기소유보의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형

11) 두색(杜塞) : 구멍이나 길목 따위를 막음.

12) 엄격하게 시행함. 힘써 행하기를 장려함.

13)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음을 뜻함.

14) 매우 중요하다.

의 집행면제를 받은 자에게는 보호관찰을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되었다. 그러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혹은 집행유예 언도를 받았거나 또는 가출옥이 되었거나 만기출옥한 자는 전부 보호관찰에 부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 심사회에서 보호관찰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의된 때는 전기(前記) 각자(各者)일지라도 보호관찰에 부치지 않게 된다.

4.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심사회

보호관찰을 행하는 기관으로서는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심사회가 있다.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을 행하는 독립의 관청인데 일본에는 도쿄(東京), 요코하마(橫濱), 미토(水戸), 마에바시(前橋), 시즈오카(靜岡), 나가노(長野), 니가타(新潟),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코베(神戸), 다카마쓰(高松), 나고야(名古屋), 가나자와(金澤), 히로시마(廣島), 오카야마(岡山), 후쿠오카(福岡), 구마모토(熊本), 센다이(仙臺), 아키타(秋田), 아오모리(青森), 삿포로(札幌), 하코다테(函館) 등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선에는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 등 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각 보호관찰소에는 보도관(輔導官), 보호사(保護司) 및 서기를 두고 소장이 이를 통독(統督)하게 되며 소장은 보도관으로써 충당케 한다. 보도관은 보호관찰사무의 통제를 하는데 말하자면 보호관찰의 중심기관이다. 보호사는 소장의 명을 받들어서 조사 및 관찰사무를 장악(掌馳)한다. 보호소는 일본에서 전임자(専任者)는 전부 33인이지마는 사상 범의 보호관찰에 경험을 가진 기타 적당한 자에 대하여 사법대신은 보호사의 직무를 촉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조선에는 7개소의 보호관찰소에 소장 7인, 보도관 전임 3인[주임(奏任)], 보호사 전임 1인(판임, 이 가운데서 3인을 주임으로 할 수 있다), 서기 통역생(通譯生) 전임 15인(판임)을 두었다. 그리고 서기는 상기의 지휘를 받아서 서무에 종사하며 통역생은 번역 및 통역에 종사한다.

5. 관찰 여부의 심의 결정

사상범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은 하였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를 하였거나 또는 만기출옥이나 가출옥을 허하였을 때에는 관계 관청은 이것을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게 된다. 그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에서는 곧 본인의 경력, 경우, 성행(性行), 심신의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본인의 심경 변화의 유무, 만약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동기 정도 및 사회 운동에 종사할 의사의 유무에 대하여 유의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성격, 자산, 가정의 양불량(良不良),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 관계 및 본인의 장래 생계 여망(餘望)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된다. 그 와 같이 조사한 결과 본인을 보호관찰에 부쳐야 되겠다고 사료하는 때는 보호관찰심사회의 심의를 청구하게 된다.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는 이 뜻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심사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않고 다만 본인 보호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재석을 허락할 수 있다. 보호관찰심의회는 심사한 결과로 보호관찰에 부칠 것이냐 아니냐를 결의하여 이유를 부쳐서 서면으로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에 부쳐야 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본인을 보호관찰에 부친다.

6. 보호관찰의 실행 방법

보호관찰은 본인을 보호관찰소의 보호사의 관찰에 부치거나 또는 본인의 보호자에게 인도(引渡)하거나 혹은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기타 적당한 자에 위탁하여 하게 한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처분의 의의를 설시(說示)¹⁵⁾하고 또한 장래를 경계하기 위한 적당한 훈유를 한다. 그리하여 보호관찰에 부친 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서 거주, 교우 또는 통신의 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의 준수를 명할 수도 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정하였으나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갱신할 수 있기도 되어있다.

보호관찰을 하는 때에는 온건타당을 주지로 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치 않고 또한 그 취직 또는 업무에 지장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관찰에 부친 자를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또는 적당한 자에 위탁한 때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보호관찰소의 명령으로 본인 또는 본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한 달 내에 재판소에 출소할 수 있다. (끝)

〈출전 : 李鍾模 「保護觀察令의 適用範圍」, 『朝光』 3권 2호, 1937년 2월.〉

(2) 이종모(李鍾模), 실시된 사상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思想犯保護觀察令)’은 작년 12월 12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16호로 공포되어 동월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필자는 그 제령 공포 직후에 잡지 『조광(朝光)』에 그 내용을 간략히 해설적으로 소개한 일이 있다. 그 뒤 보호관찰소도 설치되고 각 관계 관원도 결정되었으며 또한 요관찰자(要觀察者)의 조사도 대개 된 모양이므로 이제는 드디어 관찰을 실행할 비례(比例)에 이르렀다. 따라서 필자도 보호관찰소 당국이 실제로 운용해 나가려는 방침과 포부를 탐색하여 『조광』 잡지 독자 제언(諸彦)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또한 『조광』 편집 씨의 지령도 있으므로 이제 붓을 들게 된 것이다.

이하에 기재하는 것은 필자가 4월 28일 오후에 잠깐 틈을 타서 경성보호관찰소장 쓰츠미 요시아키(堤良明) 씨를 왕방하여 일문일답으로 들은 이야기이다. 씨(氏)는 수월 동안 병상에 누웠다가 수일 전부터 겨우 출근하고 있는 터이나 아직 완쾌하지 못한 모양이어서 괴로움을 참으면서 특별히 필자의 문의(問疑)에 응답하였다.

문 : 경성보호관찰소 관내 즉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군을 제외함), 강원도(통천군, 강릉군, 양양군, 고성군, 울진군, 삼척군을 제외함)에 있는 요관찰자의 수효는 얼마나 되는가.

답 : 1928년부터 계산하며 근 1천명에 달하나 최근 것만으로는 약 500명 가량 된다.

15) 알기 쉽게 설명하여 보임. 또는 그런 글.

문 : 그러면 근 1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보호관찰에 부칠 터인가.

답 : 1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도저히 한꺼번에 관찰하기는 어려운 터이므로 우선 최근 것 약 500명만 조사하여 그 가운데서 관찰 여부를 정할 터이다.

문 : 조사는 어떻게 하였는가.

답 : 보호사 및 촉탁보호사 30인이 면 지방에는 출장까지 하여 일일이 조사하였다.

문 : 보호관찰을 비전향자에게만 하게 될 것인가.

답 : 아니다. 전향자에게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문 : 그것은 어떤 경우인가.

답 : 공산주의를 아주 청산하여 버리고 사회인으로서의 상도(常道)에 돌아와 일본정신을 가지게 되고 생활의 안정을 얻은 사람은 관찰할 필요가 없고, 비록 공산주의는 버렸다 하더라도 어느 주의(主義)로 향할까 몰라서 혼매고 있는 사람이거나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동요 중에 있는 사람은 관찰을 하게 될 터이다.

문 : 그러면 관민합력으로 세운 사상선도단체인 소도회(昭道會)나 과거의 사상범이었던 사람들로서 조직하여 소위 일본국가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의 회원 같은 이들에게도 적용하겠다는 말인가.

답 : 물론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무직자이며 생활이 불안정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관찰을 해야 될 것이다.

문 : 관찰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답 : 흔히들 관찰서(觀察署) 순사들이 감시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할 줄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결코 그와 같은 불쾌한 감을 가지게 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어디까지든지 정신적으로 감화하도록 힘쓸 터이다. 직업의 알선도 해주며 모든 난처한 일에 상의도 해주고 무슨 조사할 일이 있거나 물어볼 일이 있는 때에는 봉함 편지로써 본인에게 통지하여 조금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할 터이다.

문 : 요즘 소문을 들으면 증왕(曾往)¹⁶⁾에 공산주의운동을 하였던 사람으로 적당한 처소에 취직하여 있는 사람들을 경찰 측에서 쫓아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또는 사실을 경영하려 하여도 불온인물이라 하여 배척한다 하니 이러고야 아무리 전향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들 될 도리가 있겠는가.

답 : 그럴리가 없을 터이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관찰령이 실시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보호관찰소장회의 때에 총독으로부터 훈시도 있었고 또 관찰소장들로부터 전 조선 각 관청, 은행, 회사 등에 많이 채용해 달라는 통지를 발송해 달라고 부탁까지 한 즉 취직하여 있는 사람들을 귀찮게 할 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모처럼 시작하는 우리 일과 배치되는 처리이므로 단연히 당국에 대하여 항의할 터이다.

문 : 병원이나 사회에나 교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답 : 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맡겨서 병을 낫게 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회사나 공장에 맡겨서 일을 견습시키게 하여 차차 기회 있는 대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나와서 갈

16) 이미 지나가 버린 그때.

데가 없는 사람은 구호단체에 맡겨서 직업을 알선해 주려 터이다. 노동자는 일자리를 구해주기 쉬우나 ‘인텔리’는 여간 어려운 바 아니다. 무엇보다도 직업을 가지게 해서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는 것이 전향을 시키는 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제 씨는 병구(病軀)이므로 필자는 이상의 정도로 문답을 끝내고 사퇴(辭退)하였다. 그리고 경성보호관찰소 직원을 참고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 보도관	쓰쓰미 요시아키(堤良明)
보도관	의전극기(依田克己)
동(同)	장기우삼(長崎祐三)
보호사	율전청조(栗田清造)
동	횡전오일(横田伍一)
동	이동혜(伊東惠)
주임서기	교길장(橋吉藏)
서기 겸 통역생	조근식(趙根植)
서기	암옹정의(岩熊正義)
심사회 회장	궁본 원(宮本元)
위원	복전심이랑(福田甚二郎)
동	궁기속임(宮崎速任)
동	쓰쓰미 요시아키(堤良明)
동	전전승(前田昇)
동	고안언(高安彦)
동	이승우(李升雨)
동 예비위원	산하수수(山下秀樹) 촌전좌문(村田左文) 옹송용종(鷹松龍種) 적미호길(赤尾虎吉)

〈출전 : 李鍾模 「實施된 思想保護觀察令」, 『朝光』 제3권 6호, 1937년 6월, 61~63쪽〉

(3) 최규창, 이번에 설립된 광주보호관찰소

최규창(崔圭昌)

1936년 12월 11일 조선사상범보호관찰회의 실시에 따라 전 조선 7개소(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에 보호관찰소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본회에 의한 보호관찰은 어떠한 사람에게 적용하느냐 하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와 재판소에서 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형무소에 수용한 자로서 가출옥자 및 만기출옥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이들 전부를 보호관찰에 부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않고 보호관찰심사회에서 그 필요의 유무를 결정 실행하므로 누구나 다 본회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보호관찰 방법은 2년을 기한으로 하여 혹은 보호사의 관찰□□ 혹은 □□자에게 인도하며 혹은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기타 적당한 자에게 위탁도 하며 이 기간 본인에 대하여 주거, 교우, 통신의 제한과 기타 적당한 조건의 준수를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2년이라는 기한도 보호관찰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수속을 밟아서 기간의 갱신도 또는 연장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소에는 보도관, 보호사, 서기, 통역생을 당치(當置)하고 있는데 보도관은 당 기관의 중심이요 대표이어서 보호사에게 보호관찰 요부(要否)의 조사를 명하며 또는 심사회에 대하여 심사를 요구하며 심사회의 일원으로 심의에 참가하며 또는 보호관찰 실행상 종종 감독을 하고 또는 본인이 위탁할 보호단체 등에 대하여 보급비의 결정 지급 등을 하는 것이다.

보호사는 보호관찰실행의 임무를 담당하여 일상 본인과 접촉하여 반려가 되어주며 사상의 추이에 유의하여 훈육 지도의 임무에 종사하는 일방(一方), 사상전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확립을 위하여 본인을 생업에 종사시키는 등 만반의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심사회는 본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의 요부 기간의 갱신 등을 결정하는 기관이어서 일종(一種)의 재판에 유사한 극히 중요한 기관인데 회장 1인, 위원 6인으로서 조직되고 그 구성원으로는 판사, 검사, 보호관찰소장, 형무소장, 기타 학식 경험 있는 자를 첨가하여 여기에 충당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4인을 두기로 되었다.

다음에 광주보호관찰소의 역원(役員)과 개황(概況)을 소개하자면

광주보호관찰소장 보도관	향천원(香川原)
보호관	부사원경수(富士原景樹)
서 기	어촌정장(御村正藏)
서기 겸 통역생	김상연(金尙演)

총탁보호사

전라남도 조선사회주사(朝鮮社會主事)	도변철부(渡邊鐵夫)
광주형무소 교해사(教海師)	서빙정정(西冰貞政)
목포형무소 교해사	입화용국(立花龍國)
전라남도 경부(警部)	좌등중태랑(佐藤重太郎)
전라북도 조선사회주사	좌등방미(佐藤芳彌)
전주형무소 교해사	안달유신(安達唯信)
전라북도 경부	미기홍태랑(尾崎興太郎)

광주보호관찰소 심사위원

광주지방법원장 회장	길전평치郎(吉田平治郎)
광주지방법원검사정 위원	재등영치(齋藤榮治)
전라남도 경찰부장 위원	산본의일郎(山本義一郎)
광주지방법원검사 겸 위원	향천 원(香川愿)
광주형무소장 위원	송평화부(松平和夫)
중추원참의(中樞院參議) 위원	현준호(玄俊鎬)
변호사 위원	판구희조(坂口喜助)
예비위원 전라남도 참여관(參與官)	이원보(李源甫)
예비위원 광주지방법원부장	상야장청(上野藏清)
예비위원 광주지방법원판사	곡구 무(谷口武)
예비위원 광주 부윤(府尹)	삼산무일(杉山茂一)

〈출전 : 崔圭昌, 「今般에 설립된 光州保護觀察所」, 『湖南評論』 제3권 8호, 1937년 8월, 9~11쪽〉

(4) 쓰츠미(堤良明), 보호관찰의 상대와 그 지도

경성보호관찰소장 쓰츠미 요시아키(堤良明)

서론

사상범보호관찰법은 제69 제국회의를 통과하여 1936년 5월 29일 법률 제29호로써 공포되어, ‘내지(内地)¹⁷⁾에서는 동년 11월 20일부터 이의 실시를 보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조선에서도 ‘내지’에 준하여 동년 12월 12일 제령 제16호로써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어 이후 부속 제 법령의 제정과 함께 동년 동월 21일부터 경성, 평양, 대구, 신의주, 광주, 함흥, 청진 7개소에 보호관찰소가 설치되어 우리 경성보호관찰소도 동일부터 경성재판소의 인접 지방고등법원 자리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군을 제외한다) 및 강원도 내의 통천군, 강릉군, 양양군, 고성군, 울진군, 삼척군을 제외한 전부를 관할하며, 해당 관할지 내에서의 사상범죄자 중 치안유지 위반에 의해 죄를 범한 자 중, 대상자로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형 집행유예 언도를 받은 자,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 및 형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관찰 제도가 목적으로 하는 사상범죄의 박멸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범한 사상범죄자를 보호선도하고, 거듭 그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며, 완전한 사상전향과 사회복귀를 확보하게 하고 있으며, 환언하면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비전향자, 준전향자에 대해서는 사상전향을 지도 촉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국민적 자각과 생활 안정을 얻게 하고, 그리고 사회정세의 여하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의 정도(正道)를 고수하게 함과 동시에, 전

17) 구 일본제국의 지역개념으로 홍카이도나 오키나와 등 변방을 제외한 일본 본토.

향자에 대해서는 전향을 확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를 위해 얼마간의 기여공헌을 하기 위해, 지도운영 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1928년 이후 1935년 말까지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 의해 검거된 자는 실로 16,000명을 돌파하였고, 그중 상기 대상자 수는 약 6,400명의 다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심정은 극히 구구하며, 그 중에는 완전히 전향한 자도 있지만, 혹은 전향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지조가 견고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 혹은 그 태도가 극히 애매해서 전향의사의 존부 판명을 하지 않는 자가 있기도 하고, 혹은 역시 여전히 불령사상(不逞思想)을 버리지 못하고 치열한 투쟁의식을 표명하는 자도 있어서, 비전향자가 재차 죄를 범할 위험이 물론 있지만, 그 밖의 자에게 있어서도 이대로 방치할 때는 그 환경 또는 사회정세에 좌우되어 재차 죄를 되풀이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임무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성보호관찰소 관내 대상자

경성보호관찰소 관내 대상자는 그들 주소가 항상 이동하므로 정확한 숫자를 들 수는 없습니다만, 대개 1936년 말로써 1,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기소유예자 471명, 형 집행유예자 318명, 가출옥자 48명, 만기석방자 380명이고, 이들 대상자를 연령상으로 볼 때는 사건관계 당시에 만 20세 이하인 자가 약 2할, 만 30세 이하인 자가 약 6할, 만 30세 이상인 자가 약 2할이 되어 있습니다('내지'에서도 사상범죄자의 평균연령은 대개 25~26세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연령상으로 말하면 그들의 대다수는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육 정도 여하를 보면,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은 자 약 6할, 중등학교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약 3할 그 나머지 약 1할이 무교육자입니다. 그것으로 이를 '내지'의 사상범죄자 교육 정도에 비교할 때는 훨씬 낮습니다만, 조선에 있어서의 교육 보급의 현상으로부터 관찰할 때는 상당히 지식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들의 생활 상태를 보면, 중류 이상의 생활을 행하는 자 약 4할로서, 그 외는 하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직업 상황 여하라고 하면, 유직자는 약 7할, 무직자는 약 3할입니다만, 이 유직자 중에는 자신의 집안의 직업, 예를 들면 실제는 놀고 있어도 집안의 직업이 농업이면 직업조사 시에는 역시 농업이라고 진술하는 자가 상당 다수가 되기 때문에, 실로 확고한 경제적 근거를 갖고 있는 자는 비교적 소수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상범죄자의 다수는 생활 불안정 속에 있다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사상 상태를 조사하면, 실로 전향한 자는 약 2할이 좀 안되고, 비전향자는 약 4할, 그 밖에는 현재 전향해 가고 있는 자는 소위 준전향자입니다. 단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¹⁸⁾'에 의해 국민정신이 고조된 결과, 전향을 표명하는 자 속출하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실로 전향한 자 다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갑자기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왜 사상운동에 관계하기에 이르렀는지의 동기원인을 조사하면, 물론 그들의 생활환경 및 개성 등이 상위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기원인도 또한 여러 가지 잡다합니다만, 대체로 지식계급 출신자와 노동계급 출신자와의 사이에는 극히 현저한 상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식계급의

18) 중일전쟁을 일컬음.

경우에는 처음에 공사주의자 등의 이론에 이끌려 점차 실천운동에 들어간 자가 다수인 것에 대해서, 노동자계급의 경우에는 생활체험으로부터 공산주의자의 선전 선동에 공명해서 운동에 흘러들어간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에 당보호관찰소에서 취급한 자 중에서 예 23가지를 들자면,

제1지식계급 출신자의 경우

①의 경우

그의 학생시절에는 마치 「마르크스」주의가 사회 일반의 관심의 목표가 되고, 「마르크스」주의의 결점 불합리 등에 대해 깊은 고찰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그 교묘한 선전만에 심취하여, 그 교제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도 또한 신문 잡지 속에서도 항상 현대사회의 모순 결점만이 폭로되어져, 그 해결방법으로서 「마르크스」주의가 고조된 결과, 그 시대의 청년으로서 공산주의에 공명하지 않는 자는 함께 이야기하기에 부족한 자라고 생각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를 공산주의에 치우치게 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하자면 시대사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의 경우

그는 어릴 때부터 무척 독서를 좋아하고, 그 독서 습관은 그가 성장함에 따라 그를 문학청년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은 마침 이상주의 인도주의적 소설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가 애독한 것도 또한 그 방면의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가 전문학교에 진학한 무렵에는 좌익운동 전성시대였고, 그 방면의 소설도 한창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는 순식간에 그 영향을 받아 장래 그는 「프롤레타리아」작가로서 입신출세할 결심을 하기에 이르러, 결국 그는 실천운동에까지 관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을 움직여서 공산주의로 향하게 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인도주의적 열정과, 거기서 나온 무산자에 대한 동정 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의 경우

그가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의 가정은 상당히 유복했지만, 그 후 아버지는 상업에 실패하여, 그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비의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더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그는, 결국 고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고학 중에 그는 부모 슬하에 있었던 때의 사회와 고학 중의 사회는 천양지차가 있는 것을 알고, 점차 사회문제에 흥미를 갖기에 이르러, 당시 전성이었던 공산주의에 공명하여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오로지 실천운동에 광분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의 경우는 그가 청년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사회의 불완전성만을 의식하여 그로 하여금 공산주의로 향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2노동계급 출신의 경우

①의 경우

그는 어렸을 때 이웃의 친구가 보통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질투하게 되어, 자신도 어떻게든가 해서 독학하여 훌륭한 인간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성장함에 따라 여러 기회를 잡아서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무렵 그의 목적은 독학하여 보통학교 과정을 끝마치고 경성에 나가 고학하여 상급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독학하여 이미 보통학교 정도의 학력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경성에 나왔습니다만, 경성에서는 그의 희망대로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그 날의 생계에까지 쫓기어 어느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공장은 그를 대우하는데 극히 냉혹

했기 때문에 그는 자연히 사회를 저주하는 기분이 되어 있었을 무렵, 어떤 친구로부터 공산주의의 얘기 를 듣게 되고, 또는 「팜플렛」을 건네받고 점차 공산주의에 공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경우 그는 생활의 실감과 친구의 권유에 의해 실천운동에 관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②의 경우

그는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아무런 교육도 없이 매일 생활에 쫓기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날 어느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농민조합에 가입하면 생활이 안락해지는 얘기를 듣고, 농민조합이란 어떠한 것인지도 몰랐지만, 농민조합에 가입하면 생활이 편해진다고 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써 이에 가입하여, 점차 공산주의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막연하지만 이론적 이해를 갖기에 이르러, 결국 가입을 돌보지 않고 실천운동에 종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경우는 생활의 궁핍과 친구의 권유가 그로 하여금 공산운동에 향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실례 등으로부터 관찰할 때는 지식계급자가 공산주의 운동에 관계하기에 이를 수 있는 동기 원인은 (1)시대사조의 영향 (2)사회문제로의 관심 (3)사회조직에 대한 모순 불합리 (4)사회과학 문헌의 연구 (5)좌익분자의 유도 감화 등을 열거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경우의 동기원인은 (1)생활환경에 의한 체험 (2)노동운동 농민운동 그 밖의 실제운동의 경험 (3)실업해고 (4)좌익운동자의 유도 감화 (5)좌익 선전 선동문서의 간독(看讀) 등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양자 사이에는 상당히 현저한 상이점이 있습니다만, 또한 양자를 일반적으로 동일 동기원인이라고 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 대상자 전반을 통해서 특이성을 열거한다면, 그들은 (1)은애(恩愛)에 익숙해지기 쉬운 점 (2)사대주의적 경향을 갖는 점 (3)의뢰성 의존성의 경향을 갖는 점 (4)공리적 경향을 갖는 점 (5)민족적 편견이 강한 점 등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경성보호관찰소 관내 대상자의 연령, 교육의 정도, 사상 상황, 사상운동에 관계하기에 이른 동기 원인 및 특이성 등을 서술했습니다만, 이로써 다른 각 보호관찰소 관내 대상자도 대체로 이와 동일 혹은 유사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생각해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호관찰소로서는 이들의 각 사태에 적응할 보호관찰 운영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우선,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입법정신을 진술하고 그리고 나서 운영자인 보호관찰소의 각오와 이에 대응할 보호자 및 비보호자 즉 대상자의 각오, 더 나아가서 본 법 실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일반의 협력과 원조에 대한 비견(鄙見)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정신

본 법은 인애(仁愛)의 대정신으로써 제정되어진 우리나라의 독특한 법률로서, 결코 강압법적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소위 엄부자모(嚴父慈母)의 사랑으로써 사상 범인을 보호선도하는 법률로서, 천지를 포옹하는 태양과 같은 따스한 구조의 손이자 상처받은 마음에 명랑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에서 의 그 관찰은 수단으로 삼고 그 목적은 보호에 있는 것이고, 방범 즉 재범 방지는 주안에 있지 않고, 환연하면 진정한 일본인이 하는 것이 제일 목표로서 그들로 하여금 재차 과격한 사상행동으로 역전시키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는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칫하면 본 법을 단순한 사회정책적인 법률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 같은 경우는 실로 본 법의 대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을 단순한 사회정책적이라고 볼 때는, 재범 방지 법률과 같은 사회 방위라든가 사회 자신이 갖는 결함을 시인하고 그 결함으로부터 생기는 사상범자(思想犯者)에 대한 일종의 속죄적 법률인 것처럼 해석하거나, 또는 단순한 자애법과 같이 해석하게 되어 우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본 법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로 본 법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빛나는 우리 국체에 대해 꺼림칙한 반역의 의사를 표명한 반역아에 대해서도, 더욱 성은이 깊은 바 이를 것난아기로서 보호하고, 전과의 상처를 달래어 그 생활고로부터 제도(濟度)하시는 ‘대아심(大御心)¹⁹⁾’의 일대자비에 의한 것이고, 크게는 ‘황도정신’ 작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친자(親子) 정신 그 자체의 발로이고 최고지순의 도의적 정신의 발로를 확대한 일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본 법이 사상범자의 전향을 촉진 강화하여 가정에 있어서는 효(孝), 사회에 들어가서는 화(和), 군국에 대해서는 충(忠)의 봉사적 행위를 실천케 하고, 국가의 유능한 재목이 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까닭도 또한 스스로 판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법 운영자로서 보호관찰소의 각오

본 법의 기본정신이 이상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우리들 본 법의 운영자인 보호관찰소의 각오도 또한 스스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본 법의 운영자인 자는 본 법의 정신에 감안하여 각별한 정신력과 열의로써 대상자를 유액(誘掖) 지도하고, 잘못해서 나쁜 길에 빠진 자를 참회의 정신으로써 과거의 궤격(詭激) 사상을 청산케 하고 바른 길로 복귀시키며, 실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보은 감사의 정신적 봉사적 태도로까지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본 법이 사회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본국민적 실천 도(實踐道)이고, 실로 또한 친자 정신인 이상, 보호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자유로이 방임해서 생활 생활 완성 일을 기대하지 말고, 진실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정으로 대상자가 보호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단연 법률 상의 보호를 가하여 장래의 대성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상자의 특이성에 대한 지도 방침으로서는,

- ① 은애에 익숙해지기 쉬운 성격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단지 은애만으로 그를 대하지 말고 상당한 위엄으로 그를 대하여 은위(恩威) 및 행해야 할지도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② 사대주의적 경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조선은 ‘내지’와 일체로서 또한 전 일본민족으로서 국제적 지위 특히 동양에서의 평화적 지위 확립에 대해 일대 사명을 갖도록 자각시키는 것, 또한 이를 위해 서는 조선민족이 ‘야마토민족(大和民族)’과 화협제휴(和協提携)할 것을 절대 필요로 하는 까닭을 자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③ 의뢰성 의존성의 경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헛되이 무제한적인 물질적 원조를 행하여 그의 태성을 조장시키는 것은 이를 피하고, 오히려 자력갱생의 관념을 배양하고,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정신을 촉진시킬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 ‘천황’의 마음.

④ 공리적 경향을 갖는 자에 대해서는 애타적 봉사적 정신의 함양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종래 일반적으로 사상법인 자가 가진 이기적 관념 봉사적 관념이 결여하는 까닭은 종교적 신념의 결여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점이 있으므로 종교적 신념 배양도 또한 그의 정신적 방면에서의 수양과 함께 공리적 성격을 타파하는데 있어서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⑤ 민족적 편견이 극히 강한 자에 대해서는, 이 민족적 감정을 제거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한일합방’의 일대 이상을 감안하여, 조선은 내지와 일체가 되어 동양 평화 확립을 위해 더불어 화협제휴하지 않으면 안 될 까닭을 설시(說示)함과 동시에 항상 그에 대해서는 우월적 태도로써 임하지 말고 온정으로 접하며, 혹은 좌담회에 혹은 강연회에 또는 신사참배 등으로 ‘국체명징(國體明徵)²⁰⁾ 및 일본정신의 고무에 힘쓸 뿐만 아니라, 더욱 그로 하여금 빨리 ‘내지’의 인정 풍속 등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를 익숙케 하여 신속히 그의 사상을 우리 국체 정신에 합치시켜 추호도 민족적 편견 등을 품게 하는 일 없도록 유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의 각오

본 법의 정신 및 운영자로서의 보호관찰소의 각오가 이상과 같이 된 이상, 대상자와 밀접하게 떨어져서는 안 될 관계에 있는 본인의 부모, 형제, 처자 그 밖에 유력한 연고자 소위 보호자의 관계에 서는 사람들도, 앞과 같은 지도정신으로써 본인의 생활 생활에 절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보호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형을 종료한 자제가 학교에 입학을 희망할 즈음에 학교에서는 쉽게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보호자의 감상으로서 자제는 과연 과거에는 법에 저촉된 나쁜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법률상의 제재는 복역에 의해 전부 소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문호를 닫고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고 오히려 학교 당국을 원망하는 듯한 언사를 행하는 사람조차 상당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경우는 보호자로서의 태도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자로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사회관을 포기하고, 본인의 생활 생활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보호관찰소를 신뢰하고 이미 학교 입학과 같은 경우도 보호관찰소로서는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호관찰소와 협력해서 본인의 생활 생활을 확충하고 일본 정신 실천화에 노력해야 할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피보호자)의 각오

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 즉 피보호자는 본 법이 이상과 같이 탄압법이 아니라는 것 또한 정책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사회 일반인은 병 또는 실업 등에 대해 스스로 그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범자는 이 위험 부담을 국가의 손에 의해서 구제되고 있는 바의 특전이 있는 것을 인식하여, 과거의 반역행위와 사상에 대해서는 이를 참회 정신으로써 청산하고, 법

20) ‘천황’ 중심주의의 국체를 밝히는 일.

이 부여한 바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고 감사의 생각으로 간생 생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완성의 경지에 달한 뒤에는 자진해서 보호관찰소의 활동에 참가하여 이전의 동지로 하여금 아직 사상적으로도 생활상으로도 저미(低迷)한 자가 있으면, 이에 간생 원조를 부여해서 함께 힘을 합쳐 완전한 '일본신민'으로서의 존재라고 인정받을 만한 태도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일반사회의 이해와 원조

사상범보호관찰법이 이상과 같은 사명과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이 운영의 임무에 해당하는 보호관찰소의 임무라는 것은 극히 중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호관찰소 직원은 묵묵히 사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직원 수가 극히 소수여서 이들 소수 직원으로서는 아무리 분투노력해도 위 사명과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일반사회의 이해와 원조를 기대하지 않으면 완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 일반은 아직 이 법률이 실시되고 또한 시일이 오래되지 않아 선전 등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은 관계로, 보호관찰소는 어떤 관청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범자의 직업 알선 등에 즈음해서는 여전히 인습을 버리지 못하고 전과자의 사항으로써 즉시 거절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실로 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상범자는 일단 전향함에 따라서 보통사람보다 그 성적이 양호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본 법이 실시된 취지 목적을 감안하여, 더욱 오늘날의 비상시국에 즈음해서 사상 국방의 견지 등 일반 민간 측·은행·회사·공장·개인경영자는 물론 전조선의 각 관청에서도, 혹은 사원으로서 점원으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이들 사상범자의 전향자를 채용할 것을 간절히 바람과 동시에 보호관찰소의 일상 운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장래의 발전책 등에 대해서도 불비한 점, 느낀 점이 있으면 부디 주의와 편달해 주셔서 더욱 더 보호관찰소로 하여금 그 기능을 완성시킬 수 있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출전 : 堤良明(京城保護觀察所長), 「保護觀察の對象と其の指導」, 『朝鮮』 제270호, 1937년 11월, 4~13쪽)

(5) 1937년 1월 제1회 보호관찰소장회의의 상황

법무국 법무과 형사계(法務局法務課刑事係)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시행과 동시에 임명된 쓰즈미(堤) 경성보호관찰소장 이하 7개소의 첫 회의는 지난 1월 15·16일 양일 아래 일정에 따라 총독부에서 개최되었다.

15일 오전 10시 미나미(南) 총독의 임석을 비롯하여, 야지마(八島) 농림, 미바시(三橋) 경무, 도미나가(富永) 학무 각 국장, 본부 각 과장, 사무관 참석, 오가와(小川) 고등법원장, 가사이(笠井) 고등법원 검사장 이하 각 복심법원 및 동 검사국 각 감독관, 경성지방법원장 및 동 검사정, 재성(在城) 각 형무소장, 경기도 경찰부장, 조선현병대사령관 대리, 조선군법무관 등 참여한 뒤 별항 소재(所載)와 같이 미나미 총독으로부터 훈시가 있었다. 다음에 마스나가(増永) 법무국장으로부터 주의사항의 진술이 있고 계속

해서 동 국장 통제 하에 아래 자문사항에 대해 쓰츠미소장 이하 각 소장으로부터 각각 열성적인 답신이 있었고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또한 16일은 마스나가 법무국장 통재 하에 오전 중에 별항 협의사항에 대해 열의 있는 협의가 행해지고 오후는 각 소장으로부터 각각 열심히 희망하는 바를 개진(開陳)하였다.

상기 각 참석자는 양일간 모두 시종 회의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열심히 방청하셨다. 또한 양일 모두 고등법원 아마자와(山澤) 차석검사, 동 무라타(村田) 검사, 나가사키(長崎) 보도관, 구리타(栗田) 보호사도 참석하여 방청하셨다.

1. 회의일정

월 일	요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월 15일 (제1일)	금	1. 총독훈시 2. 법무국장 주의 3. 자문사항
1월 16일 (제2일)	토	1. 자문사항 2. 관계국장 희망 3. 보호관찰소장 쓰츠미 의견제출 및 협의

2. 총독훈시

새해 벽두부터 이에 보호관찰소장 여러분을 회동하여 새롭게 소감을 말하고 또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얻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바입니다.

바야흐로 ‘황국’은 안 밖으로 극히 다사 다난하고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긴박해져 왔습니다. 특히 소련 내에 근거를 갖는 코민테른²¹⁾ 계통의 세계적 활약은 재작년 그 제7회대회가 소위 인민전선주의에 의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이윽고 프랑스, 스페인에서 서로 상□하여 현현(顯現)한 현재 스페인 내란과 유럽의 국제정치의 불안한 원인을 양성한 것이어서 국제전쟁에 앞서 목적국의 사회를 혼란과 황폐로 이끌려고 하는 음험한 사상기술의 해악(害惡)은 실로 저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문화 저급으로서 저항력이 박약한 방면에 대해서 침투가 계획되는 것이어서 동아에서는 이미 외몽(外蒙), 신강(新疆)이 그 희생이 되어 변경지대로부터 점차 지나(支那)의 중앙부에 이르려고 하는 위태(危殆)한 정세에 있는 것은 만주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 제국으로서 이상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바이어서 구립(舊臘)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일독방공협정(日獨防共協定)과 같은, 동서 서로 응하여 이 악(惡)사상에 대한 방벽을 기하려고 하는 취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만주사변 이후 거국일치(舉國一致), 서정일신(庶政一新)의 기운이 움직이는 바, 이미 공산주의의 사상운동은 낙조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소위 인민전선주의와 같은 미채적(迷彩的)

21) Communist International로 제3국제당, 혹은 제3인터내셔널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발기에 의해 1919년 3월에 창설되어 1943년 5월 15일에 해체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당의 국제적 조직체이다.

가면을 쓴 집요한 방침의 잔존인 것은 크게 경계를 요하는 점이고, 특히 조선에서는 그 특수사정과 민도를 감안하여 엄격히 이 동향을 사찰하고 다른 한편 국민정신의 작흥(作興)으로써 사상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사상운동은 그 주의 그 계통 여하를 불문하고 단호히 이 근절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해 12월 실시하게 된 사상범보호관찰제도는 이미 신종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혹은 형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는 형 집행을 끝내고 혹은 가출옥을 허용 받은 자에 대해 재차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가해 그 사상의 완성과 생활 확립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엄밀한 검거 적정한 재판 및 행형(行刑)과 더불어 사상범 죄의 절멸을 기하는 취의(趣意)임에 틀림없습니다.

종래 조선에서 그런 종류의 범죄에 의해 검거된 인원은 17,000여명을 넘어 그 중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의 대상이 될만한 인원은 실로 6,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만, 이들의 심정은 극히 □□로서 실로 전향한 자 없지는 않지만 환경 또는 사회정세의 변천 등에 따라 재차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범은 요즘 썰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소위 지금 또한 불퇴과격한 사상을 회포한 도배□내(徒輩□內) 각자에 선동의 혼적을 단절하기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집요하고 잠행(潛行)적이 되었고 더군다나 인방(隣邦) 중화민국을 옆에 두고 소비에트연방과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불령흉악한 사상유입을 하고, 한편 그런 종류의 사상범은 다분히 민족적 반감을 포장하는 관계상 극히 실행성이 풍부함으로써 아직 갑자기 낙관(樂觀)을 허용하지 못하는 정세에 있습니다.

이들 사상범은 모두 우리 국가 사회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잘못하여 국법을 어기기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를 지도유액하는데 즈음해서는 황도정신을 철저히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국체 및 사회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게 함과 동시에 동아에서의 ‘황국’의 지위 및 사명을 터득시키고, 더욱이 본인의 성행열력(性行閱歷) 그 밖의 사정을 참작 판단하여 실제로 적응할만한 보호를 가해 생활의 안정을 얻게하고 진정으로 충량한 ‘황국신민’된 정도(正道)를 밟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보호관찰의 실행에 관해서는 감화교양을 취지로 하고 또한 관계관청 그 밖에 일반 사회인사의 이해와 협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써 적어도 직무를 보호관찰소에 바치는 자는 거상인격(居常人格) 도야와 식견의 함양을 게을리 하지 않고 관용 또는 명랑한 태도를 가지고 피보호자인 본인보다는 물론 일반민중보다도 전폭의 신뢰를 얻는 의기(意氣)를 요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위탁된 권한 또한 상당히 광범하게 이르는 것이므로 만일의 과오가 없기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생각건대 본 제도는 전연 신규의 사업으로써 더구나 이 운영 적부(適否) 여하는 즉시 반도의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바 크다는 것을 각위는 부하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부하직원과 함께 운영의 중요성을 연구함으로써 유감없이 그 성과를 얻도록 힘써주실 것을 실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3. 법무국장 주의사항

- 1) 사상범보호관찰제도의 실시는 최근의 형사사조에 입각한 바여서 피보호자에 대한 구체적 지도목표에 대해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재범에 빠지는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이를 보도유액(輔導誘掖)하여 그 잘못

된 사상을 시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실로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확보시키고 또한 이와 같은 사상완성과 극히 긴밀한 관계를 갖는 생활 확립을 얻게 하여 더욱이 자진해서 충량한 신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바 있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애(仁愛)의 정신으로써 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이에 따라 본인으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의지를 잃게 하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2) 보호사 및 촉탁보호사는 피보호자에게 접촉해서 훈육지도의 임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자라서 보호관찰의 실천을 거행할지 안할지는 보호사의 활동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기울여 보호사 및 촉탁보호사로 하여금 항상 인격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정세의 추이와 인심의 추향(趨向)을 연구하게 하여 직무 수행에 즈음해서는 명랑으로써 실천도를 잊지 말고, 더구나 순정과 열의를 기울여 현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지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3) 본 제도의 운용은 극히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음과 동시에 사회 각 방면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함으로써 검찰, 재판, 행형(行刑) 및 경찰 등의 관계관청은 물론 더욱이 문교(文教) 제 기관, 사회복리시설, 그 밖의 일반 사회인사의 충분한 이해를 얻는 것에 힘쓰고 또한 이 연락(聯絡)을 밀접하게 함으로써 본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4) 사상범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단체는 본 제도의 운용상 중요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어서 그 기구 및 운영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보호관찰의 성격에 다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보호자를 위탁할만한 보호단체는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더욱이 사상범 보호사업 장려비에 관한 취급규정을 세워 사업경영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감독을 받게 하는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 취지를 명심하여 그 단체의 감독에 대해 만전의 고려를 기울임으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5) 사상범보호관찰법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행하는데 즈음해서는 본인을 보호관찰소의 보호사의 관찰에 맡길지 보호자에게 인도할지 또는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그 밖에 적당한 자에게 위탁할지의 세 방법 중 그 한 가지를 단독으로 취해야 할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첩적으로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활동경력, 사상침투의 정도, 그 밖의 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호자에게 인도할지 또는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행할 때는 당분간 원칙으로서 보호관찰소의 보호사의 관찰에 대한 처분을 중첩적으로 병용하는 방침을 취하시길 바라고 가처분의 경우도 또한 동일합니다.

6) 사상범보호관찰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제1조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 있을 시는 본인에 대해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 전 임시로 동법 제3조의 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가처분의 규정은 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그 적용범위를 협의(狹義)로 해석할 필요 없이 동조에 소위 필요 있을 시는 본인의 소재 □회 그 밖의 관찰처분에 관한 조사에 장애를 미칠만한 사정이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본인으로서 생활 안정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일정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등도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도 알맞을 것이다. 특히 본인 가출옥을 허가받거나 또는 형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본 조에 소위 필요 있을 시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상기 사유의 통지

또는 인지와 동시에 이를 가처분으로 응대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양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7) 피보호자의 위탁을 행할만한 보호단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보호자의 특수 관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상기 지정 이외의 보호단체라 할지라도 성적우량한 자에 대해서는 사상범보호관찰법 제3조에 소위 「그 밖에 적당한 자」로서 피보호자를 위탁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8) 조선에 있어서의 사법보호사업의 현상을 보면 일반범죄에 대한 보호단체는 불과 27단체에 불과하고 더구나 자산, 설비 등에 있어서 아직 불충분한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선도 및 사상범 보호 목적 하에 최근 겨우 경성에서의 소도회(昭道會), 충청남도에서의 상상선도위원회의 성립을 보았지만, 사상범 보호단체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은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점 보호단체의 창립 및 확충에 대해 장래 한층 더 고려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4. 자문사항

- 1) 보호단체의 필요여부 결정에 관한 기준여하
- 2) 본인의 사상지도의 구체적 방법여하
- 3) 본인의 생활안정의 구체적 방법여하
- 4) 본인을 보호단체 그 밖에 위탁할만한 경우에 관해 고려할만한 사항여하
- 5) 보호단체와 경찰관찰과의 관계 훈□여하
- 6) 촉탁보호사에 대한 지도훈련 방법여하
- 7) 위탁비 보급에 관해 고려할만한 점 여하

5. 협의 및 결정사항

(광주보호관찰소장 제출)

1) 어느 촉탁보호사의 관찰에 맡겨진 자를 다시 전임보호사로 하여금 관찰을 부가한다.(법 제3조)
결의

관찰할 수 있는 원칙으로써 촉탁보호사로 하여금 단독으로 관찰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상동)

2) 가처분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음 회 조사회의 심의를 구해야 한다. (법 제6조)
결의

반드시 다음 회 조사회의 심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동)

3) □□의무자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법 제11조)
결의

민사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상동)

4) 시행규칙 제18조의 훈유(訓諭)를 행할 시에는 본인을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출두시켜야 한다.
결의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출두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보호관찰소 일람표

소명 (所名)	소장명	관할구역소재지
경성	쓰츠미 요시아키(堤良明)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군을 제외한다), 강원도(통천군, 강릉군, 양양군, 고성군, 울릉군 및 삼척군을 제외한다)
합동	(겸)대정화좌길(大町和左吉)	강원도내 통천군, 강릉군, 양양군, 고성군, 울릉군 및 삼척군, 함경남도
청진	(겸)상양춘옹(相良春雄)	함경북도
평양	제등오랑(齋藤五郎)	황해도, 평안남도
신의주	(겸)광원선(光原先)	평안북도
대구	사사카(佐々木) 목구(木久)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	겸가가와(香川)□	충청남도 내 서천군,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성부 서소문초(西小門町) 38 함흥부 스미요시초(住吉町) 75(법원내) 청진부 야마토초(大和町) 22 평양부 미나미초(南町) 11(법 원내) 신의주 도키와초(常磐町) 3정 목6-2(법원내) 대구부 동구초(東□町) 248-4 287 광주부 메이지초(明治町) 3정 목1(법원내)

7. 보호관찰소장 회의자문사항 답신요강

제1. 보호관찰의 요부(要部) 결정에 관한 기준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에 맡기지 않는 자

전향을 표명하고 수년간 혹은 반항구적으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생활에 안정을 얻은 자

보호관찰에 맡기는 자

- (1) 전향을 표명하고 사상에 있어서는 안정되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한 자.
- (2) 전향을 표명하고 또한 본인의 가정유복으로 생활에 곤궁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상동요 중으로 교사(教唆) 혹은 유혹에 이용당할만한 우려가 있는 자.
- (3) 겉으로 전향을 표명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상에 있어서도 또한 생활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자
- (4) 비전향자

함흥보호관찰서장

비전향자는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다.

비전향자도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전향자 중

- (1)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자

(2) 사상적 동요의 위험성 있는 자도 또한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청진보호관찰서장

본인에게 장래적 범죄행위를 예상하게 하는 징후 소위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에 맡겨질 필요 있다.

(1) 우선 본인에게 가해진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본인은 보호관찰에 따를 필요가 있다.

- ① 형의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기간 내.
- ②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가출옥 기간 내.

(2) 소년 또는 이에 준할만한 자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가 당연히 있다.

(3) 일반 기소유예자, 만기출옥자, 형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자 및 가출옥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의 가출옥자 중 비전향자 또는 준전향자는 필연적으로 보호관찰에 맡겨야 한다. 완전전향자에 대해서는 실업, 교우관계, 가정사정 또는 사회적 상세(狀勢) 여하에 따라서는 그 생활을 확립시키고 그 전향을 한층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보호단체에 맡길 필요가 마땅히 있을 것이다. 때로는 보호관찰에 맡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동 관찰에 맡길 필요가 없을 경우도 상기의 필요할 때는 물론 유리할 때라고 할지라도 보호관찰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한다.

평양보호관찰소장

대상자 중 사상의 완성을 얻고 또한 그 생활환경을 확보한 자는 일단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다고 대체로 정했다. 이 예시하는 것 다음과 같다.

- (1) 비전향자
- (2) 사상 및 생활 모두 불안정한 자.
- (3) 생활이 안정되어 사상동요하는 자.
- (4) 사상동요하지 않아도 생활이 불안정한 자.
- (5) 사상 및 생활 모두 안정되어도 환경이 나쁜 자, 또는 집행유예, 가출옥의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의주보호관찰소장

- (1) 비전향자는 이를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 (2) 전향자 중 전향 후 이미 상당 시일을 경과하여 일정한 주거, 직업을 갖고 현재 안정된 사회인으로서 활동 중인 자 및 확실하게 그런 전망이 있는 자는 이를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가 없어도 하기 전에 열거한 자는 일단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 (3) 전향이유□□로서 사상동요의 가능성 있는 자.
- (4) 생활상의 안정을 결여한 자.
- (5) 미성년자, 학생, 생도(生徒).
- (6) 부인 및 미혼자.
- (7) 소비에트러시아 또는 중화민국에서 공산주의적 교육훈련을 받았던 자.

(8) 치안유지법 위반 누범(累犯)자

대구보호관찰소장

(1) 보호관찰 필요 있는 자

- ① 사상 안정해도 생활 불안정한 자.
- ② 생활 안정해도 사상 동요하는 자.
- ③ 사상, 생활 모두 불안정한 자.
- ④ 비전향자

(2) 그 필요 없는 자

사상, 생활 모두 안정된 자.

광주보호관찰소장

(1)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에 맡겨져야 하는 자

- ① 사상학립하지 않은 자.
- ② 가출옥 기간 중의 자.
- ③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자.
- ④ 최근 일년 내에 있어서의 만기출옥자(□□하는 자)
- ⑤ 적당한 보호자 없고 생활안정하지 못한 자.

(2) 가급적으로 보호관찰에 맡겨져야 하는 자

- ① 사상 동요의 우려가 있는 자.
- ② 생활안정하지 못한 자.
- ③ 기소유예자.
- ④ 모든 만기출옥자(장래에 있어서).
- ⑤ 퇴학자로서 복교를 요하는 자.
- ⑥ ‘내지’로부터 귀래하여 도식(徒食)하는 자.

(3)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상기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이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 ① 환경관계
- ② 신상관계
- ③ 사상관계
- ④ 경제관계
- ⑤ 보호자관계
- ⑥ 범죄관계

등의 제 사정으로 종합 판단하여,

첫째로 사상운동을 □성하기에 이른 제 원인을 해소했는지의 여부

둘째로 전향의 동기 및 그 상태가 건실한지의 여부
셋째로 전향의 영속성 있는지의 여부
넷째로 생활에 괴롭고 또는 육친과 융화하지 못한 결과 자포자기애에 빠질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등을 변별하고 더욱이 이를 귀일하여 결국 사상동요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관찰에 맡겨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한다.

제2. 본인의 사상지도의 구체적 방향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가능한 한 이론적인 사상지도방침을 피하고 인격적 훈도(薰陶)에 의해 우리 국체의 정신을 체득하게 한다.

합동보호관찰소장

피보호자로 하여금 보호관찰소의 직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게 하고, 직원의 인격적 감화에 기대해야 할 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조선에서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사상지도의 근저를 □□하는 방책 상 하기 두 항목에 대해 신념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1. '천황폐하'의 국민이라는 신념을 품게할 것.
2. 중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제국의 세계에서의 사명을 자각시킬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사상지도의 요체(要諦)는 본인의 국민적 자각을 촉구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일본정신으로 환원, 복귀시키는데 있다. 조선인 사상범은 전반적으로 민족의식이 잠재하여 공산주의혁명에 의해 조선의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특이성을 갖는 자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일합방의 근본의지를 명백히 하고 '내선'민족은 그 근원에 있어서 동일종족에 속한다는 것을 깨우쳐 동아의 현세, 세계의 □로 등에 입각하여 그들의 귀추하는 바를 알게 하고, 내선이 서로 제휴해서 일본 '천황폐하'의 인정(仁政) 하에 동화(同化)의 번영과 인류 영원의 행복을 향수할 거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사상 선도에 염원한 나머지 함부로 본인과 이론투쟁을 하여 이론에 의해 본인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는 극력 이를 피하고, 관찰소의 직원인 자는 대가족 정신으로써 또한 부모와 같은 인격과 열성신뢰에 의한 소위 인간미로써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지도에 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다음에 전향, 비전향자 어느 경우에도 적용할만한 사상지도의 구체적인 여섯 개의 방법을 예시 한다.

- (1) 다방면에 관한 우량서를 읽게 하고 혹은 매월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수양, 처세상의 지식을 부여함에 힘쓸 것.
- (2) 사상전향자의 감상 및 참회록 등으로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읽게 할 것.
- (3) 국민적 축제일인 사대절(四大節)²²⁾과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근처의 학교신사 등의 식전에 출석하게 하고, 보호관찰소 소재지 부근에 있는 본인에 대해서는 이런 축제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호관찰소에 출두시켜 정신강화를 듣게 하도록 할 것.

- (4) 종교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양 민족이 갖는 가족제도의 미점(美點)을 인식시켜 육친의 애정 가족애를 환기시킬 것
- (5) 본인의 가정 친족 지기(知己)와 연락하여 본인의 환경을 정리하여 주도록 할 것.
- (6) 지방에 있는 사상지도기관과 연락협조를 도모하여 보호관찰의 결실을 올릴 것. 다음에 부녀자가 보호관찰에 맡겨졌을 때의 경우에는 오로지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양보호관찰소장

본인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뢰와 직원의 인격에 의한 감화를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다음에 원칙으로서는 종래의 신조를 청산시키게 한 후 이에 대신해서 생생의 힘으로 할만한 새로운 신념을 부여할 것.

- 1) 상기 근본방침에 입각하여 서양류의 평면적인 사물의 견해에 대해 동양류의 입체적인 사물의 견해를 가르치고 평등 즉 차별, 차별 즉 평등의 도리를 터득시킬 것.
- 2) 유물사상에 대해 유심사상이 있고 더욱이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세상이 있음을 가르칠 것.
- 3) 더욱이 이론을 초월한 하나의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킴에 따라 우리 국체를 명인시키고, 충효의 대의(大義) “오직 신만이 열게 한다”는 도의를 알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애국심, 가정애 등을 자각시킬 것.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사상 선도의 근본정신은 모름지기 일본인으로서의 자각 즉 국체의 명징(明徵)의 철저와 근로정신의 환기의 두 점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대정신에 준하여 어디까지나 사상을 선도한다는 정열과 인류애로써 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믿는다. 그 구체적인 방책 다음과 같다.

- (1) 고도의 비전향자는 보호관찰소 전속 기숙사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일정 기간 보호사와 침식을 함께 하게 하고, 서서히 그 사상적 반성을 기다릴 것.
- (2) 항상 시국국제정세에 관한 지식을 주입하고 우리 제국의 확고부동의 국제적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일본인인 자각을 촉진할 것.
- (3) 국체명징 및 반공산주의에 관한 저서, 잡지류 등을 비치하여 가능한 한 열람시킬 것.
- (4) 육친의 사랑, 가정의 사랑에 혜택 받도록 가능한 한 기회를 만들 것.
- (5) 사상선도, 국체명징에 관한 명사의 강연회 또는 종교가의 강연회의 개최될 때는 가능한 한 이를 방청하게 할 것.
- (6) 신사참배를 장려하고 또한 항상 국기에 대한 감사, 감격의 생각을 갖게 할 것.
- (7) 음악미술에 관한 감상의 안목을 기르고, 황폐한 정신을 온화하게 하며, 또 ‘피크닉’ ‘하이킹’ 같은 것을 장려하여 대자연에 접하게 해서 명랑한 기분을 항상 보유하도록 노력할 것.
- (8) 농민학교 또는 직업학교 같은 농촌진흥운동의 중견지도인물 양성기관과 연락을 유지하여, 일정

22) 사방배(四方拜),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 명치절(明治節)로 1927년에 제정되었다.

기간 이에 입소하게 하여 ‘일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

대구보호관찰소장

- 1) 보호관찰소 직원의 인격사상의 감화.
- 2) 각 본인의 심경, 주위의 상세(狀勢)에 따라 귀가, 복교, 결혼, 취업 알선장려.
- 3) 직원 및 피보호자의 좌담회 개최, 유익한 서적, 논문 대여, 회람‘내선’ 명사의 강연, 모범농촌의 상태 및 충군애국(忠君愛國) 영화, □□무도 또는 운동의 장려, 취미 주입.

광주보호관찰소장

본인의 사상지도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보호관찰에 대한 신뢰와 직원의 인격에 따른 무언의 감화로써 구체적 지도방법으로서는

- 제1. 수양회, 좌담회, 강연회, 연구회의 개최
 - 제2. 서적지도
 - 제3. 기관지 발행
 - 제4. 지도서적의 편찬
- 등을 필요로 한다.

제3. 본인의 생활안정의 구체적 방법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 1) 일반민중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가 보호하는 전향자에 대해서는 위구심을 제거할 선전방법을 강구할 것.
 - 2) 보호관찰소가 보호하는 사상범인을 관공서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할 것.
 - 3) 본인의 성능에 적응할 직업을 부여할 것
 - 4) 본인의 가정생활을 행하는데 적당할 때는 이를 원호(援護)형성하게 할 것.
 - 5) 본인이 노동자로서 미경험자 또는 미숙련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해하는 공장주 또는 노무감독과 협조해서 반항구성 직업의 견습직공으로 채용되도록 힘쓸 것.
 - 6) 형무소 재소중의 사상범에 대해서는 해당 형무소는 소할보호관찰소에 대해서는 석방예정 전 1개월 정도까지 보호관찰소에 통지하도록 해주었으면 할 것.
- 또한 가출옥을 받을만한 전망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형무소는 가출옥 전 가급적 빨리 가출옥 신청을 행할 취지로 통지하도록 해주었으면 할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 1) 일반사회인에 대하여 전향자를 사용하는 것도 불안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전향자의 취직에 편리를 기하게 할 것.
- 2) 보호관찰소에 있어서의 완전전향자에 대해서는 취직을 위해 전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

었으면 할 것.

- 3) 관찰소와 목공장 주인, 인사관계장 등과의 사이에 평소 자주 연락을 취하고 전향자의 취업 등에 관해 양해를 얻도록 힘쓸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생활안정은 사상법인 보호선도의 긴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완전전향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써 비전향자 또는 준전향자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전에 완전하게 사상을 전향하게 하는 것에만 주의가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근본정신으로 하고 각각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항상 본인의 성능(性能)과 사회적 양심에 적응할 직업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힘쓰고, 일반인이 사상법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위구심을 제거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직업소개에 즈음해서는 설사 전향자라고 할지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청, 제 회사 등의 사무적 직업의 알선은 꽤 사려하더라도, 가능한 한 공장, 광산, 노동 등에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사료한다. 또 본인의 인격역량 이상으로 상궤(常軌)을 벗어나 스스로 봉사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듯한 경우는 범인으로 하여금 보호에 익숙해지게 하고 혹은 사상법인 선전도 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료한다.

평양보호관찰소장

일반사회를 □발하여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보호관찰소가 보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구, 불안의 마음을 해소하고 보호관찰소의 처지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을 근본령으로 삼는다.

또한 본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한 후에는 은혜에 익숙해져서 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하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하지 않도록, 또한 일반의 □□, □□에 입각한 반발을 유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하는 바다.

- 1) 종래 일정한 직업을 갖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방면과 연락협조하고, 혹은 보호단체에서 하는 생업자금의 대여에 의해 구업(舊業)에 복귀하게 한다.
- 2) 무직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그 개성, 능력, □□, 신체의 적부(適否) 등에 따라 대상점, 은행, 회사, 공장, 그 밖의 관공서, □체, 지주청부사(地主請負師) 등과 연락협조하여 견습, 소작인 혹은 도제(徒弟)로서 고용 또는 취업을 얻게 하고, 이에 관해 일정의 기간을 한정해 보급비의 이용을 인□됨에 있어서는 편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한다.
- 3) 수산장(授產場)의 설치 또는 이것의 이용
기존의 수산장이 있을 경우는 그 당무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이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보호관찰 전용의 수산장을 긴요사로서 신설방법을 요망한다.
- 4) 본인이 부녀인 경우는 가정생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최량의 방책으로 인정한다.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조선 하층농민, 자유노동자, 소시민군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가는 사회정책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다. 일반대중의 대부분이 생활의 안정을 결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특히 생활안정을 향유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민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허용이 되는 바도 사상범인의 특별성을 감안하여 극력 이 생활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사회정책의 철저와 병행하여 이와 연락해서 사상범인의 생활안정책도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 다음과 같다.

- 1) 일반사회에 대해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충분철저하게 할 것.
- 2) 항상 사업관청, 사업주, 공장주, 직업소개소, 상공회의소 등과 격의 없이 상담을 갖고, 보호관찰소에서 보호하는 자 반드시 채용, 취직하도록 할 것.
- 3) 항상 실업의 기회 많은 자유노동자 또는 미숙노동자는 이를 가능한 한 항구적 숙련노동자로서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숙련공인 소질이 있는 자는 사업주와 연락을 유지하여 견습공으로서 채용받아야 할 것.
- 4) 농촌출신자는 가능한 한 출신향토에 귀농케 할 방침을 취할 것.
- 5) 소매상인, 직공 등의 소위 소시민출신자에게는 상당의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 6) 지식계급출신자로서 어떻게 생활을 안정시키는가는 가장 곤란한 문제로 결국 본인의 출신학교당국, 전 고용회사 각 관청과 협조 연락하여 복직의 알선을 행하고 상기 2기재의 방법에 따라 신규 채용에 노력하는 이외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 7) 일정한 생활안정의 전망이 보인 독신자에게는 적당한 배우자를 알선하여, 가정의 건설에 의해서 점점 더 생활안정에 노력하게 할 것.
- 8) 학생, 생도는 학교당국과 협조하여 복교에 노력할 것.

대구보호관찰소장

- 1) 전향을 증명하여 취직, 귀가, 복교를 알선한다.
- 2) 전향자를 허용하는 한 각 관청 및 보호단체에 취직시킨다.
- 3) 이해 있는 개인상점, 공장에 고용하기 위해서 직업소개소와 연락 협조한다.
- 4) 형무소 소재의 보호회의 명칭을 다르게 한 사상범인만으로 수용하는 보호관찰소를 만들어 형무소로부터 위탁한 자를 수용하여 농업 및 수공업을 익히게 한다.

광주보호관찰소장

생활의 안정은 사상전향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이 점 특히 유의할 것을 요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 다음과 같다.

- 1) 근무처의 □□
- 2) 직업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의 재교육
- 3) 농장 개설
- 4) 생산자금의 대여

제4. 본인을 보호단체 그 밖에 위탁할만한 경우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항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 1) 본인의 경력, 경우, 성격 등을 보호단체에 통지하고, 본인의 교우 통신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격에 적응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할 것.
- 2) 병원에 위탁할 경우에는 주치의로부터 본인의 병상을 보호사 혹은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게 할 것.
- 3) 사원, 교회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장래 전망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교사 그 밖의 선교사로 삼고, 또는 그 밖의 보좌하게 하기 위해 사원 또는 교회의 직원에까지 채용되도록 힘쓸 것
- 4) 복교 또는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입학 후의 행상(行狀) 근면의 정도 및 성적 등을 보호사 또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게 하고 또 본인이 전에 겸거당한 것을 다른 학생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 1) 비전향자와 전향자를 함께 수용하지 말 것.
 - 2) 본인, 가족 등에 대해 보호의 취지를 잘 이해시키고 강제적 구속 등의 관념을 품게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수탁자에 대해서도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 이해시키고 전과자에 대한 모멸적 태도로 나가지 않도록 힘쓸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신속하게 총독부당국에 다수의 보호단체을 지정받아 이에 조성금을 교부하고 이런 종류의 사업의 확대강화를 도모함에 진력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비전향자 또는 준전향자에 대해서는 사상범 보호관찰법 제4조를 활용하는 경우 비교적 많아야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것은 관찰의 필요상으로 해도 보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향자를 위탁할만한 보호단체는 전향자를 위탁하는 보호단체와는 이를 구별하여 양자를 접촉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다음에 전향자는 가능한 한 부형 하에 귀주(歸住)하게 하고 보호관찰을 행하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삼아야 해도 특수 사정이 있을 때는 보호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평양보호관찰소장

- 1) 각 본인에게 보호관찰상 적응될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
- 2) 직업지도를 갑자기 하지 말 것.
- 3) 본인에게 굴욕적 감화를 주거나, 또는 의뢰심을 야기시켜서 독립자영의 기개를 잃게 하지 않도록 할 것.
-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과 그 가족의 소원함이 발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각 구(舊)동지의 '공작'을 경계할 것.
- 5) 보호관찰소는 항상 수탁자와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교양을 계율리 하지 말 것.

- 6) 수탁자의 보호에만 의뢰하지 말고 임시보호사를 파견하고 혹은 본인을 보호관찰소 그 밖의 장소에 소집하고 지도 또는 수양의 기회를 부여할 것.

신의주보호관찰소장

- 1) 보호단체에 위탁해야 할 경우

지정보호단체에 특히 사상부와 같은 일 부문을 만들어 사상범인에 대해 별개취급을 행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고도의 비전향자는 일반 피보호자와 격리하는 것을 득책으로 행해야 한다.

- 2) 사원, 교회, 병원 등에 위탁할 경우

외국인 경영 또는 주로 외국인 자본에 의해 경영되는 곳에 대해서 가능한 한 위탁을 피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조선의 대사원의 현상 및 조선인이 일반 사원에 대한 가지는 모멸적 관념을 감안하여 조선인 사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전개발(心田開發) 사원(寺院) 정화운동이 더욱 철저할 때까지 이를 피하도록 한다.

사상범인 중에는 의술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많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도립병원이 각 지방에 상당히 보급되었고 그 설비도 충비하였으며 직원도 학교경험 있는 인격자를 망라하고 있다. 이에 병원을 크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한다.

- 3) 보호사는 수탁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항상 특히 관찰제도의 취지를 철저하게 하여, 단지 부득이한 신병을 맡고 있다고 하는 관념을 버리게 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정도(正道)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정열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장

- 1) 사상범을 보통범과 잡기(雜居)하게 하는 것은 폐해가 있으므로 각 형무소 소속의 보호회를 보충, 완비하여 별개의 사상범만을 수용할만한 보호소를 설치할 것.
- 2) 수탁자는 국체관념명징으로서 온정 있고 조선에 이해가 있어서 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의 마수를 배제할 능력 있는 자.
- 3) 비전향자, 준전향자를 동일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

광주보호관찰소장

- 1) 수탁설비의 유무

설비가 불충분한 곳에 수탁할 경우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보호단체에서는 보통범과 서로 다른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수탁자의 열의의 의무

수탁자는 실로 보호관찰의 취지를 양해하고 만난(萬難)을 배척하며 이를 맡을 열의 있는 자가 아니면 그 효과를 기하기 어렵다.

- 3) 본인의 의사참작

본인에게 있어서 위탁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탁 장소에 대해 특별한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를 참작할 것을 요한다.

4) 위탁을 해야 할 보호단체는 다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제5. 보호관찰과 경찰시찰과의 관계 조사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상호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경찰시찰을 원만하게 하여 전향자의 사회적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게 할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본법의 정신을 특고계(特高係) 경찰관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경찰관회동 또는 동관(同官) 강습회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본법의 설명을 행하고 이 이해에 힘쓸 것.

도 고등계 외 본법 대상자의 다인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가능한 한 촉탁보호사를 촉탁받도록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청진보호관찰소장

경찰시찰은 결코 범인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범인을 무감독 무시찰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이 될만한 것으로써 이에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제도가 만들어져 경찰감시의 가혹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공수방임(拱手放任)의 무책임으로 □하지 않는다. 그 중간을 추구해서 실로 범인의 교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면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경찰시찰을 완화하고, 경찰시찰은 간접시찰의 방법에 의하게 하고, 본인의 생생에 방해가 되는 듯한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사 또는 수탁을 받은 보호단체 그 밖의 자는 경찰관서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해서 그 양해 하에 스스로 본인의 보호관찰을 맡는 일에 힘쓰고, 그동안 본인의 보호선도에 완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철저적인 보호관찰에 의해서는 법의 은혜에 버릇없이 굽어, 그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적 시찰로써 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도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전연 보호관찰의 일정 범위 외에 방치하는 것은 사상보호관찰령의 목적에 따르지 않는 바다.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인도하기 위해 도리로써 할 때는 그 신념을 요□하는데 □한 것이 있어야 함으로써, 이 보호관찰의 수행에 즈음해서는 경찰과의 밀접한 연락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사료한다. 그리고 이 실행에 앞서서 본법제정의 취지를 일반경찰관 특히 고등계 경찰관 등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 이해시킬 필요 있다.

평양보호관찰소장

경찰관에 대해서 본제도의 묘용(妙用)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그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뢰 하에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용하는 시찰을 행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보호관찰소와 부즉불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도록 협조시킬 것.

관내 순시자는 조사출장 그 밖의 기회를 이용하여 좌담식으로 경찰관을 교양함으로써 원활한 조정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각 경찰서장 내지는 고등주임을 촉탁보호사로 채용할 것.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전향자를 언제까지나 요시찰인으로 삼아 노골적인 간섭을 행할 때는 오히려 그들의 반발심을 야기하여 악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많음으로써 가능한 한 사상전향자에 대해서는 경찰시찰을 해제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부 당국과 간담을 행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비전향자로서 어떤 사정으로 보호자의 소재지 밖에 있어 평상시 시찰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찰시찰을 행하는 것은 부득이한 바임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라 믿는다.

단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찰시찰은 노골적으로 이를 행하여 일반민중에게 공포심을 품게 해서 피처분자의 취직의 방해가 되는 듯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과 간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구보호경찰소장

- 1)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제일차로 보호관찰소의 관찰에 위탁하기 위해 경찰시찰은 간접 보충적이어야 한다. 단 비전향자 및 준전향자 중 과격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경찰 각 입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엄중한 감시를 계을리 하지 않고 그 책려할 여지 있어서는 안 된다.
- 2) 경찰직원 특히 특고과원(特高課員)에게 보호관찰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보호관찰소 직원도 경찰시찰의 이해에 힘쓴다.
- 3) 전임보육사는 촉탁보육사인 경찰직원과 협력하고 특고과원 그 밖에 각 경찰서 주재소의 직원과 업무상의 연락협조에 힘쓴다.

광주보호경찰소장

경찰서장을 전부 촉탁보호관찰사로 삼을 것.

경찰관 전반에 본법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그 호의적인 협력을 구할 것.

경찰관에 대해서 본법을 이해시킬 방책으로서는,

- 1) 검사의 경찰관 교양훈련 시 본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법 배려를 기울일 것.
- 2) 경찰관강습소 및 순사교습소에서도 본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법 배려를 기울일 것.
- 3) 각 보호단체에서 군(郡)을 단위로 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경찰서장을 지군장(支郡長), 주재소 수석을 보도원이라고 함으로써 보호상의 실무를 기울이게 할 것.

제6. 촉탁보호사에 대한 지도훈련 방법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각 보호관찰소 관내에 있어서의 촉탁보호사를 때때로 회합하게 하고 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사상비판, 관찰방법, 가정방문, 직업수여, 그 밖의 집무에 관한 지도훈련을 행할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어느 지역을 구획하여 각 지역에서 때때로 촉탁보호사의 협의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고, 평소 보호관

찰에 관한 잡지, 팜플렛 등은 관비로 촉탁보호사에게 배부하고 또한 전임보호사로 하여금 때때로 촉탁 보호사의 주택 또는 사무소 등을 순회하게 하여 현장에 대해 지도 훈련시킬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 1) 연 수회 촉탁보호사를 경찰서에 소집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우선 보호사의 사상지도, 인격수양, 실무훈련을 행하게 할 것.
- 2) 전임보호사로 하여금 출장 시 촉탁보호사에게 가능한 한 면접하게 하여 그 지도훈련을 행하게 하고, 때로는 전임보호사와 동행시켜 전임보호사의 보호관찰 실무의 실제를 견학시킬 것.
- 3) 적당한 팜플렛을 출판하여 이를 배부하고 또는 유익한 서적 등을 열독(閱讀)시키도록 할 것.
- 4) 공판정에서의 사상법의 신문 정황, 형무소의 정황을 시찰하게 함에 따라서 보호사로 하여금 사상 범에게 접촉할 기회를 많게 하여 이런 범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시킬 것.

평양보호관찰소장

- 1) 우선 본 제도의 전반을 터득시킬 필요가 있고 각 □에 면접하고 또는 보호관찰소에 회동하여 이를 지도 훈련한다.
- 2) 조사 또는 보호관찰의 실행에 관해서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사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시, 주의를 주고, 보고서 그 밖에 의거해서 그 결과에 대해 비판, 지도하여 점차 향상시킨다.
- 3) 임시보호관찰소에 소집하여 좌담, 연구, 강습 등을 행한다.
- 4) 본 부(府)에서도 적의(適宜) 강습을 위한 회동을 개최해주길 바란다.
- 5) 보도관 및 전임보호사는 항상 촉탁보호사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데 힘쓰고 이를 장려한다.

신의주보호관찰소장

- 1) 촉탁보호사의 임명이 있고 차제에 즉시 보도관 및 전임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회동을 개최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취지의 철저에 힘쓰고 관찰소의 방침, 방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촉탁보호사와의 사이에 격의 없이 연락 협조를 유지할 것.
- 2) 때때로 좌담회와 같은 명목으로써 회합을 개최할 것.
또한 기관잡지 ‘팜플렛’을 배포할 것.
- 3) 법령, 예규(例規), 통첩에 □□하기 위해 사(寫)를 즉시 송부할 것.
- 4) 처음에는 전임보호사의 조사 및 처분 집행, 구체적 실행상황을 실시, 견학시킨다.
- 5) 촉탁보호사 중 민간유력자 그 밖에 검찰, 재판, 행형(行刑)의 실상에 어두운 자는 이 윤용상태를 견학시키고, 보호사업에 대한 실천을 깊이 하게 할 것.

대구보호관찰소장

- 1) 본소에 월 수회 소집하여 보호관찰 관계의 제 법령의 해석설명, 사상법전향 그 회록강독, 사상판 검사 및 학자의 강연, 종교가전임보호사 및 형무소 교도사의 교화의 경험담, 감화.
- 2) 경성에서 강습회 개최.

- 3) 동경소집회에 계획 중의 촉탁보호사 훈련에 파견참가.
- 4) '내지' 선진도시의 보호사업 및 보호관찰소의 활동상황 시찰.

광주보호관찰소장

- 1) 보도관 또는 보호사에게 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구두 또는 문서로써 본법의 정신을 설명하고 또한 관계법규의 해석을 행함으로써 실무사의 훈련을 할 것.
- 2) 각 보호관찰소에서 때때로 연구회, 협의회를 개최할 것.
- 3) 각 복심 법원 관내에 있어서의 동법 보호사업 연구회에 입회하게 하여 일반 사법보호에 관한 지견(知見)을 넓힐 것.

제7. 수탁비 보급에 관해 고려해야 할 점 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위탁비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급할 것.

합동보호관찰소장

위탁비는 단가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분부에서 결정하고 각 방면 관계와의 사이에 교섭하고 미리 양해를 얻었으면 할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위탁비 보급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인정받도록 함.

평양보호관찰소장

- 1) 위탁비의 보호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관용할 만한 것이라도 피보급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하는 바 없게 하도록 할 것.
- 2) 수탁자가 개인 또는 사적 경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이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보급할 것.
- 3) 위탁비는 이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면 한다.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없음

대구보호관찰소장

- 1) 수탁비를 일상으로 하는 영리적 보호단체를 감별하여 배척할 것.
- 2) 위탁비에 상당하는 급여를 행하고 있는 그 내용의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3) 위탁비 보급의 필요가 있거나 또는 그 정도 기한을 때때로 조사한 뒤 타당한 처리를 행해야 한다.

광주보호관찰소장

일률적으로 1일 30전을 보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한다.

〈출전 : 「1937년 1월 제1회 保護觀察所長會議の狀況」, 『思想彙報』 제10호, 1937년 3월, 59쪽〉

(6) 부동의 황도정신 하에 사상을 정화 통일, 보호관찰소장회의 미나미 총독의 훈시 (기사)

전조선보호관찰소장회의(全朝鮮保護觀察所長會議)는 5일 오전 9시 반부터 총독부 제1회의실 미나미 총독, 오노(大野) 정무총감 임석, 미야모토(宮本) 법무국장 통□ 하에 개최되었는데 □□ □□기립 하에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후 다음과 같이 미나미 총독의 훈시가 있었다.

훈시(訓示) 전문

이에 각위(各位)를 회동하여 친히 소회를 술하고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얻었음을 흔행(欣幸)으로 한다.

1. 시국 하 국민의 각오

어제 성전 2년 남짓한 기간(其間) 폭려(暴戾)²³⁾한 장(張) 정권²⁴⁾ 응징의 황군은 이역(異域)에 있어 잘 범유(凡有) 곤란 결핍에 감내, 도처에서 용전분투 거의 전 지나를 석권하고 그 요충(要衝)을 공략하여 세계 전사상(戰史上) 미중유의 혁혁한 전과를 거두는 동시에 복잡 미묘한 국제관계에 대처하여 의연히 성전의 목표인 동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여 그 대업은 곧바로 본격적 거보를 나아가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는 원원(元元)히 어능위(御稜威)²⁵⁾의 소연(所然)²⁶⁾이나 또 황군 장병의 열렬 충천하는 진충복구(盡忠報國)의 적성(赤誠)과 총후(銃後) 국민의 황도정신에 기반한 위대한 정신적 단결력에 인한 것으로서 그 실로 갑격 불감(不堪)하는 바이다. 그러나 극동에 대하여 어디까지 야망을 뻗치려고 하는 제3국의 우리 흥아(興亞)의 대업을 저해하려고 책모(策謀)하는 최근 구주전란(歐洲戰亂) 발발에 불구하고 의연 그 봉망(鋒鎗)²⁷⁾을 거두지 않고 그들의 집요한 극동 정책의 동향은 도저히 예단 불허할 뿐만 아니라 구주전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드디어 복잡 혼란을 극(極)하여 그 귀추도 또한 역도(逆道)하기 어

23) 인도에서 벗어나게 모질고 사나움.

24) 장개석(蔣介石) 국민정부를 뜻함.

25) 매우 존엄한 위세.

26) 소이연(所以然) : 그리된 까닭.

27) 칼날, 칼끝, 서슬.

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 처하여 우리 제국은 엄숙히 자주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제 정세의 변전 (變轉) 추이를 감시하면서 우리 성업의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책동을 배제하기에 일의매진(一意邁進)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총후의 국민은 더욱 일억일심(一億一心), 다시 견인지구(堅引持久)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국가 총력의 최고 발휘에 전력을 경주(傾注)함으로써 성업을 달성하기를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위로는 고매한 성력에 봉부(奉副)²⁸⁾, 아래로는 황군 장사의 충성 노고에 응하는 동시에 수많은 순국의 영령을 위로하는 소이이다.

2. 시국하 사회정세에 대한 보도관의 각오 (생략)

3. 사상범보호관찰의 근본방침

사상범보호관찰제도는 그 실시 후 근근 반세(半歲)로서 지나사변에 조우(遭遇)²⁹⁾ 총후 반도 민중에 사상의 정화통일, 일치단결의 강화철저에 대하여 부하(負荷) 가중(加重)하였으나 본 사변은 본 제도를 위하여 실로 천여(天與)의 호기(好機)라는 것을 각위는 잘 인식하여 그 중책에 임하고 부동의 황도정신과 불굴의 노력으로써 그 사명 수행에 매진하기 위하여 제도 창시 이래 아직 3년이 못 되는데 보호관찰 대상자의 대다수로 하여금 시국에 대한 인식을 철저케 하는 동시에 황도정신의 체득 양양,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신 파악에 정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과거의 사상적 과오에 감(鑑)하여 국가사회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자각케 하여 수많은 애국적 총후 활동에 황국신민인 적성을 피력케 하게 되어 총후 거국일치의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바 실로 큰 것이 있음은 방가(邦家)를 위하여 동경(同慶) 불감(不堪)하는 동시에 각위의 노고가 크게 많은 바다.

그러나 자세히 반도 보호관찰의 실적을 보건대 대상자의 황도정신의 체득 양양, 내선일체의 정신 파악에 대하여는 아직 현상(現狀)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다. 보호관찰 구극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모두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자기를 완성케 하는 데 있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하여는 다시 각위의 각별한 연구와 노력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고로 보호관찰의 직(職)에 있는 자는 먼저 스스로 그 체득한 황도정신을 양양하여 이를 일상생활의 실천에 시현하고 항상 치열한 애국의 열정으로써 일에 응하여 그들에 접하는 데는 자기의 정신 인격에 의하여 이를 감화 선도하는 각오로써 하고 솔직, 또 철저적으로 그들의 흥오(胸奧)의 금선(琴線)에 닿을 필요가 있다. 이미 황도정신이란 숭고 심원한지도 정신에 의존함으로써 백의 논의도 하나의 실천만 같지 못하다. 각위는 특히 이 점에 대하여 심사숙려를 거듭하여 대상자의 제휴 유도에 다시 일층의 실적을 거두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4. 사상보국연맹의 지도감독

작년 7월 보호관찰대상자인 사상전향자 등이 서로 상의하여 자발적으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을 결성하고 보호관찰소로써 집단적 지도에 부응하여 왔는데 본 연맹은 그

28) 받들어 맞이함.

29) 우연히 서로 만남.

결성 후 겨우 한 해 남짓에 이제 7개의 지부와 55개의 분회를 설치하여 2천 유여의 연맹원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사상국방전선에 활약하여 범유 반국가적 사상의 파쇄(破碎)절멸(絕滅)에 노력, 특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방색(防塞)를 더욱 공고케 하여 내선일체의 강화철저, 애국적 총후 활동의 강화, 국책 수행에의 봉사, 국어의 보급, 후진 전향자의 유액(誘掖)³⁰⁾ 선도 등에 일로매진하여 그 적성을 실천에 시현하여 왔음은 필경 각위의 지도에 의함에 인한 것으로서 방가(邦家)를 위하여 실로 동경 불감이다. 이제 국내 일반 민중을 들어 각하의 급무인 황도정신의 체득, 내선일체의 완성에 정진하고 있는 이때에 본 연맹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그 활동 여하에 의해서는 일반 민중의 사상적 전초(前哨)로서 이를 계발하고 나아가 국민적 단결 강화의 한 지주일 수 있다. 각위는 특히 이 점에 유의, 본 연맹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데 대하여 지도 편달 감독의 만전을 기할 것이다.

1939년 10월 5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출전 : 「不動의 皇道精神下에 思想을 淨化統一 保護觀察所長會議 南總督의 訓示」,
『東亞日報』, 1939년 10월 6일〉

(7) 신의주보호관찰소 관내상황

신의주보호관찰소장

I. 일반 사상운동 상황

당소 관내는 평안북도 전원으로서 사상운동은 대략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의 요시찰인(要視察人)³¹⁾은 민족주의자 약 600명에 비해 공산주의자 약 200명이 있고 민족주의 운동이 치열한 것에 비해 공산주의운동의 약세는 어쩌면 당 관내의 특이성이라고도 칭해야 할 것이다.

1. 민족주의운동

당 관내 출신자는 이조시대 중앙정부에서 배척되어 관도(官途)에 중용(重用)되는 자가 거의 없고 중앙 정부의 가렴주구(苛斂誅求)³²⁾에 시달려 온 것이 오랫동안에 걸쳐 정부에 대한 민심의 원망과 탄식은 이윽고 권력에 대한 편견을 양성해왔다.

30) 이끌어 도와줌.

31) 사상이나 보안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이나 경찰이 관리해야 할 사람.

32)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한편 구미제국은 기독교 보급의 방편으로써 학교, 병원 등의 문화시설을 행하여 교묘하게 인심을 얻은 결과 구미 의존사상이 뿌리 깊어졌다.

이런 중에 한일한방이 되자 오랫동안 배양된 반발적 감정과 구미 의존사상은 우리 제국정부의 시설 까지 시의(猜疑) 모욕의 감정으로써 다루고 그 결과 맹신적 독립운동으로 현현(顯現)되어졌다.

데라우치(寺内) 총독 암살음모사건, 만세소요사건, 영변공자교사건(寧邊孔子教事件), 선천동우회사건(宣川同友會事件) 등과 같다.

그리고 관내 민족운동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에 의해 나누어지는데 문화적 민족운동과 폭력적 민족운동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적 민족운동

문화적 민족운동이라고 칭하는 것은 관하 선천(宣川)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도에 의한 독립운동으로서 그들은 상당한 교양과 재력을 갖는 자로서 구미 선교사의 감화하에 구미 의존사상이 뿌리 깊고 배일사상이 농후하다.

그 운동방법이라는 것은 반도인의 지육(知育), 덕육(德育), 체육을 향상하고 실력을 함양해 두어 만약의 경우 제국이 국제적 위기에 처할 때에는 일거에 조선의 독립을 단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그 방법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느긋해도 끈기 있고 집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사변 직전, 전술한 동우회사건이 겸거되자마자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충동과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그런 중에 지나 사건이 발발하여 제국의 엄연 부동한 결의와 ‘황군’의 현실적 약진 진격 및 당국의 철저적 계발(啓發) 선전, 단속, 보호에 몹시 자각 반성하여 공순의 성의를 표명하는 자 속출하고 종래 감히 뒤돌아보지도 않던 신사참배 등의 행사에도 번연히 성의를 피력하고 또한 기독교부인회원으로서 애국부인회에 가입하는 자 증가하고 더욱이 일부 유지(有志) 등의 발기 하에 국가 비상시에 즐음하여 모든 진행 내지 왜곡된 사상행동을 청산하고 간생의 선천(宣川)의 진정한 모습을 들어서 ‘황국’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 운동의 중점으로서 1937년 11월 군용기 선천호 한 대를 헌납하기에 이르러 우리 연맹원 12명은 이에 금 1,230엔을 현금했다.

당국은 이런 패거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상 선도에 주력을 기울이고 잘못된 기독교사상 구미 의존사상의 청산을 행하게 하고 일본정신의 파악, 양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궁성요배(宮城遙拜)는 물론 애국운동을 확대 또는 영구화해 가고 있는 현재 걱정할 필요 없다.

2) 폭력적 민족운동

폭력적 민족운동이란 압록강안(岸)을 중심으로 대안(對岸) 만주국에 본거지를 갖는 여러 종류 독립단원에 의한 운동이다. 그들은 거의 무지 빈농의 일행으로 자신이 생활 편의상 혹은 강제로 독립단에 가입하기를 명령받은 대로, 강도, 방화, 살인 등 총유(總有) 테러행위에 나간 것이다.

그렇지만 국경 경비 경계가 한층 엄밀함과 함께 만주에 있는 각 기관의 연락으로부터 지금은 이런 패거리의 흔적이 끊어진 감도 있지만, 지금 또한 대안 만주국 내에는 1,400명의 공산 토비(土匪)³³⁾를

33) 토착민으로 무장하여, 집단으로 약탈, 폭행을 일삼는 도적.

비롯하여 항일반만(抗日反滿) 분자 등이 있어서 이번 사변을 계기로 세력 만회 및 선내(鮮內) 혁명 공작 등의 음모를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촌각의 안일도 허용하지 않는다.

당소(當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무지 빈농의 무리로서 확실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고 생활방편을 위해 독립운동에 가입한 밑바닥 인물로써 우선 생활 전도에 힘을 쏟는 한편 대안으로의 진출을 경계 방지해가고 있는 현재, 이 또한 걱정할 필요 없다.

2. 공산주의 운동

만주국 건설 이전은 당 지(地)는 국제 통로에 해당하는 관계상 공산주의자의 입로입지(入露入支)를 위해 당 관내를 왕래하는 일이 빈번해짐으로써 이들과 연락 하에 공산주의운동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도 만주국 건설이 되고나서부터 공산주의운동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없다. 단지 관내 제일의 문화도시인 신의주 부내에 있어서의 공립동중학교(公立東中學校)의 일부 생도나 ‘내지’ 유학생의 시사에 의해 좌익운동의 확대를 기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조기에 뿐이다.

지금 관내라고 할 것 없이 전선(全鮮)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운동은 학생회에 의해 행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재교육 교수과목의 내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 한 학교 당국과 연락을 취하여 사상 정화에 힘쓰고 있다.

II. 대상자 상황

1. 전향 상황

보호관찰제도는 실시 당초의 형사 정책적 재범방지 및 피보호자로 하여금 재차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상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을 강구하는 것에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처분제도 실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변의 발발을 보기에 이르러 사회 일반의 애국열이 솟아나 감격성 있는 그들은 종래의 반국가적 사상을 포기하고, 소위 소극적 전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상 전선의 제일선에 서서 인적자원 동원에 응하여 정신적(挺身的) 보고를 행하려고 하는 자 있고, 더구나 이번 ‘성전’의 목적이 ‘코민테른’의 동양침략을 배척하고 동아신공동단의 건설에 있으므로 그들이야말로 이 제일선의 전사로서 활동하는데 최적임이 되는 것을 인식하여 사회의 관심도 또한 그들 위에 쏟아져, 화려하게 시국의 흐름을 잘 탄 듯한 느낌이 든다. 관내 328명의 대상자가 있었고, 그 중 대륙에 진출한 자는 86명으로 관내에 현존하는 자는 242명이다.

그 242명 중,

전향한 자 67명

준 전향자 101명

비전향자 3명

전향 상황 불명한 자 71명

이다.

후술하는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 결성 전까지 전향자라고 인정된 자는 47명 밖에 없었고, 연맹이 결성되어 전향자 67명이 되어 20명이 증가했다.

전향자 중에 전선으로의 종군, 제국을 위해 적국으로의 간첩으로 출원한 자, 내선일체사상 국방의 베림들³⁴⁾이 되겠다고 출원하는 자 상당히 있었다.

준 전향자라고 인정해야 할 자는 반국가사상은 포기해도 애국운동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 전향자로 취급하고 있어도, 지도 여하에 따라서는 장래 전향자가 될 전망 있는 자가 많다.

비전향자는 모두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운동에 진출하는 것은 이를 행하지도 못하고, '마르크시즘'을 청산하지 못한 자로서 모두 정신 이상자에 가까운 자다.

당소는 애국적 활동을 적극화하고 단체적 지도와 개인적 지도를 병행하여 전향을 촉진 확보하게 하며,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대승적(大乘的) 사랑의 정신으로써 관찰에 무게를 두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2. 생활 상황

관내에 현존하는 대상자 242명 중,

가옥이 있으며 생활 안정된 자	68명
가옥이 없어도 취직으로 생활 안정된 자	55명
취직하고 있어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자	45명
실직하여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자	3명
생활 상황이 불명한 자	71명

으로서 대체적으로 생활은 안정되어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 그것은 당 관내 대상자는 인텔리 출신이 적고 대부분이 농민노동자 출신으로 육체적 노동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많고, 또한 한편으로 관내에는 광산업, 그 밖의 공업이 번성하여 노동력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한편 관공서 방면에서도 본 제도를 이해하고, 군청에 서기, 고용원 합계 4명, 면장 1인 면서기, 고용원 합계 5명, 소학교원 1명, 검사국 임시고용원 1명, 금융조합 고용원 2명이 채용되어 있다. 이것은 먼저 법무국장 각하가 발하신 취직에 관한 통첩의 효과에 입각한 것이 다대하여 우리들은 한결같이 감사하고 있는 바이다. 당소는 취직의 알선에 즈음해서 대상자에 대해 노동의 신성한 소이를 설명하고 실력 이상의 우량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훈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취직하지 못하는 자는 연맹 경영의 목공소에 수용하여 생활 보장을 하고 있다.

그들이 항상 자신의 실력을 과대시하여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다.

3. 대륙진출 상황

대륙으로의 진출이야말로 우리 제국의 국책으로서, 대륙진출로의 희망이야말로 반도인의 장래에 광명을 부여하고 사상계에도 또한 명랑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34) 토목 공사에서 기초를 만들거나 수세(水勢)를 약화시키기 위해 물 속에 던져놓는 돌.